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2. 12. 24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노인의전화

연구책임자 : 최 성 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김 미 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 혜 경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양 철 호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성 국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이 수 한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장 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목 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II. 이론적 배경	7
III. 연구방법	
1. 전화조사	25
2. 일반면접조사	29
3. 심층면접조사	33
IV. 연구결과	
1. 전화조사	39
2. 일반면접조사	104
3. 심층면접조사	131
V. 결론 및 제언	181
● 부록	
■ 노인학대조사 관련 설문지	205
■ 면접조사지침서	225
■ 노인학대 관련 자료목록	232
■ 노인학대 관련 웹사이트	241
■ 노인학대 상담센터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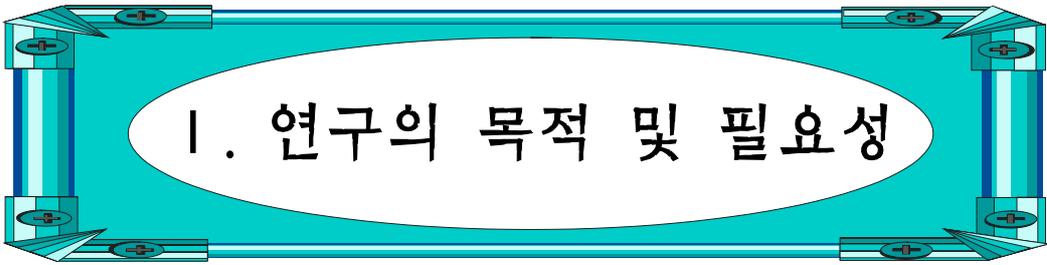
# 표 목 차

<표 III-1> 전화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 . . .	28
<표 III-2> 조사장소 . . . . .	30
<표 III-3> 일반면접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 . . .	32
<표 III-4> 피학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 . . .	36
<표 IV-1> 전화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 . . .	41
<표 IV-2> 우리사회의 노인공경에 대한 평가 . . . . .	43
<표 IV-3> 노인들은 집안 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 . . . .	45
<표 IV-4>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안은 화목하다 . . . . .	46
<표 IV-5>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 . . . .	48
<표 IV-6>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 . . . .	49
<표 IV-7> 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 . . . . .	50
<표 IV-8> 노인들은 젊은 세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 . . . .	51
<표 IV-9> 사람은 나이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 . . . .	52
<표 IV-10> 노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이다 . . . . .	54
<표 IV-11> 우리나라 노인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 . . . .	55
<표 IV-12> 노인학대 상황에 대한 인식 . . . . .	57
<표 IV-13> 노인학대시 필요한 조치 . . . . .	58
<표 IV-14> 아픈 노인에게 약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 . . . .	59
<표 IV-15>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 . . . .	60
<표 IV-16> 노인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 . . . . .	61
<표 IV-17> 노인 방임시 필요한 것 . . . . .	62
<표 IV-18>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 . . . .	62
<표 IV-19>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 . . .	63
<표 IV-20>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화낸다 . . . . .	64
<표 IV-21> 노인 정서적 학대시 필요한 것 . . . . .	65
<표 IV-22>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 . . .	66
<표 IV-23>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 . . .	67
<표 IV-24> 노인을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한다 . . . . .	68
<표 IV-25> 언어적 학대시 필요한 것 . . . . .	69
<표 IV-26>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 . . . .	70

<표 IV-27>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71
<표 IV-28>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72
<표 IV-29>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74
<표 IV-30>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노인소득을 가로챈다	75
<표 IV-31>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 등의 명의를 변경한다	75
<표 IV-32> 노인 재정적 학대시 필요한 것	76
<표 IV-33> 노인(노부모)과 동거여부	77
<표 IV-34> 소득수준에 따른 노부모와 동거여부	78
<표 IV-35> 노인과 동거여부에 따른 학대인식	79
<표 IV-36> 미래 노부모와 동거의향 - 현재 동거중인 경우	81
<표 IV-37> 앞으로 노인(노부모)과 동거할 이유	82
<표 IV-38> 앞으로 노인(노부모)과 동거안할 이유	83
<표 IV-39> 노인(노부모)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이유	85
<표 IV-40> 미래 노부모와 동거의향 -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86
<표 IV-41> 노인과 동거의향(종합)	86
<표 IV-42> 노인과 동거의향	87
<표 IV-43> 미래 자녀와 동거의향	88
<표 IV-44> 미래 자녀와 동거의향②	89
<표 IV-45>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여부	92
<표 IV-46> 주변에서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할 의향	93
<표 IV-47> 가정에서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할 의향	94
<표 IV-48> 현재 우리 나라 노인학대의 심각성	95
<표 IV-49> 노인학대의 원인	97
<표 IV-50> 주로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	98
<표 IV-51> 노인학대 주 해결자	99
<표 IV-52> 노인학대 주해결자에 대한 인식	100
<표 IV-5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7
<표 IV-54> 성별에 따른 기능적 독립정도	120
<표 IV-55> 연령에 따른 기능적 독립정도	121
<표 IV-56>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경험 유무	124
<표 IV-57> 학대의 분산분포도	126

<표 IV-58>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대 빈도별 노인학대 경험 유무	128
<표 IV-59> 피학대노인의 일반적 특성	135
<표 IV-60> 피학대자의 기능적 독립정도	137
<표 IV-61> 시설인 경우 들어온 경로	138
<표 IV-62> 전체 5가지 유형별 학대 비율	140
<표 IV-63> 학대의 분산분포도	141
<표 IV-64> 방임학대	143
<표 IV-65> 정서적학대	144
<표 IV-66> 언어적학대	145
<표 IV-67> 신체적학대	147
<표 IV-68> 경제적학대	148
<표 IV-69> 유형별 학대경험	149
<표 IV-70> 학대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대응행동	153
<표 IV-71> 방임학대시 대응행동	155
<표 IV-72> 정서적학대시 대응행동	157
<표 IV-73> 언어적학대시 대응행동	158
<표 IV-74> 신체적학대시 대응행동	159
<표 IV-75> 경제적학대시 대응행동	160
<표 IV-76> 학대유형별 “그냥 참았다”의 이유	162
<표 IV-77> 유형별에 따라 의논대상자(현재)	163
<표 IV-78> 학대를 당했을 때 의논하고 싶은 대상	164
<표 IV-79> 유형별 학대당한 이유	166
<표 IV-80> 유형별로 본 학대가해자	167
<표 IV-81> 유형별로 본 가해자와의 동거여부	169
<표 IV-82> 심층면접 응답자의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여부	170
<표 IV-83> 가정폭력방지법 인지 여부	171
<표 IV-84> 학대 재발시 신고여부	172
<표 IV-85> 학대 재발시 신고여부②	172
<표 IV-86> 학대 재발시 신고하지 않는 이유	173
<표 IV-87> 학대로 인해 병원에 간 경험	174
<표 IV-88> 학대받았을 때의 기분	176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의 노령화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는 노인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외국의 경우 기존의 시책이나 지식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많은 과제가 제시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사회적·문화적·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엉켜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학대문제는 일면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여겨지나 이는 우리문화가 중시하여 온 “효”이데올로기와 가족의 가치가 변화하는 가운데 두드러진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로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없는데다가 복지수준 또한 빈약하여 만약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서구사회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개인의 삶의 질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학대의 실태와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 조사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1999, 조애저, 김승권, 김유경) 이후 노인학대에 관한 대규모의 조사연구는 없었으며 2000년 이후 학위논문 혹은 학술지 등에서 다루어진 노인학대의 내용도 제한된 지역 및 장소에서의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복합적이고 장기·지속적인 노인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다면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1차 목적이 있으며, 도시와 농촌, 전국 규모의 노인학대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노인학대 개입방안을 모델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이 노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노인학대 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어떠한지, 노인과 동거여부에 따라 학대를 인식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는지, 노인학대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본 결과를 통해 대중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이나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둘째, 전국에 분포된 노인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한 노인들을 만나 면접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학대를 경험했거나 현재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피학대 노인의 일반적 상태와 함께 노인학대의 실태는 어떠한지, 학대받는 노인들은 학대당할 때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는지, 학대의 원인 및 주가해자는 누구인지, 학대의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결과를 사회화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노인학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고, 이와 더불어 노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태조사의 기초를 제공하며,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학대의 개념 정의

노인학대 사례에 관한 보고가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한 것은 20여년 전이지만, 지금까지 문제의 범주와 확산정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는 학대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고도 서로 다르게 정의하여 왔기 때문에 각자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었기 때문(김미혜·이선희, 1998)이며,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가 일부 국지적·지역적 조사에 그쳐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즉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학자들간에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실제로 노인학대에 관한 많은 조사를 보면 학자에 따라서 좁게는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방임이나 부적절한 처우, 심리적 학대, 넓게는 자기 학대, 자기방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이해영, 1996).

기존연구에서 언급된 노인학대의 유형을 보면 Rosenblatt(1997), Lachs & Pillemer(1995), Blakery & Morris(1992), 김미혜·이선이(1998), 이영숙(1997) 등 많은 연구자들이 신체적학대, 심리적·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학대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서혜경(1995)의 연구에서는 성적학대를, Rosenblatt(1997)의 연구에서는 권리침해를 더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내연구에서는 언어적 학대를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한동희, 1996 ; 이해영, 1996 등).

##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학대의 유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학대에 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의 개념 및 유형분류를 토대로 논란의 여지가 비교적 적은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학대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신체적 학대

① 정의 : 폭력행위를 수반한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처, 손상, 질병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뺨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행동을 말한다.

② 예 : 밀기, 꼬집기, 할퀴기, 때리기, 머리채 잡아 당기기, 손바닥으로 치기, 돌이나 벽돌로 때리기, 흉기 등의 무기로 위협하거나 찌르기, 총으로 쏘기, 성적 강요, 성폭행, 감금 등

### 2) 언어적 학대

① 정의 : 언어적으로 괴롭히거나 호되게 꾸짖거나 처벌이나 박탈의 위협을 가하는 것, 모욕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예 : 욕설, 모욕, 헐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 3) 정서적 학대

① 정의 : 가족 내에서의 무시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또는 심리적 고립에 빠져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상태가 되게 하는 것,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심하게 자존심을 건드려 노인이 집을 나가고 싶게 하거나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 :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 4) 경제적 학대

① 정의 : 노인의 돈이나 재산을 동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 : 계속적인 돈의 요구, 노인의 재산 포기 강요, 부동산 착취, 통장이나 인감 등의 허락 없는 사용, 금품착취, 의도적인 집이나 기물 파손, 방화 등

③ 경제적 학대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금전 등을 불법·부적절하게 사용하려는 의도로 행위가 진행 중인 것도 포함된다.

## 5) 방임학대

① 정의 :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의도적이거나 결과적으로 노인부양의 의무를 거절하거나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 : 노인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밥을 주지 않음, 씻겨주지 않음, 방을 치워주지 않음, 자녀들이 서로 모시려고 하지 않거나 함께 살던 노인을 나가라고 하고 내쫓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 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음 등.

## 3. 노인학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1970년대에 주로 폭행과 관련되어 진행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최근에 가정 폭력방지법의 입법화가 추진되면서 노인학대에 대해 매스컴이나 학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누가 노인을 모실 것인가?’,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있다’ 등 매스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기획프로그램들은 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송현애·전길양, 1998).

그러나 노인학대의 은폐성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에는 노인학대에 대한 용어조차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선행연구나 조사도 매스컴 등을 통해 알려진 학대 사례 분석, 노인학대의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노인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힘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복지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노인학대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사를 통해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1) 기존문헌연구 검토**

노인학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주로 한 연구로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학대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살피고 있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노인학대 개입전략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한국에서의 노인학대 연구의 필요성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김한곤 & Blakely, 1994., 이해영, 1996., 김태현 & 한은주, 1997).

두 번째, 간접자료를 이용하여 노인학대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박준기(1998)는 일간지에 신문기사로 보도된 노인학대사례를 조사하여 노인학대의 유형과 내용, 발생원인과 결과 등을 조사하였고, 서윤(1998)의 경우 신문에 보도된 존속범죄를 중심으로 노인학대의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담당자들 또한 노인학대 연구의 주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재가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실태조사(서윤, 2000)나 전국의 복지기관 노인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측정도구에 대하여 질문조사한 연구(김미혜 & 이선희, 1998)는 노인학대라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다각적 접근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세번째 연구경향은 노인 혹은 노인수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직접적인 노인학대연구를 들 수 있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연구(한동희, 1996, 서윤, 2000),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실태와 지지망에 관한 연구(김현수, 1997, 김미경, 1998, 조애저 외, 1999),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전길량 & 송현애, 1997, 1998, 이선이, 1998, 이성희 & 한은주, 1998)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2)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

노인학대의 실태와 유형은 주로 미국 국립노인학대센터의 연구를 참고하고 있다. 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학대를 주로 포함하고 있으며 성적학대와 자기방임까지 분류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국립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 NCEA)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학대 및 방임의 16% 피해사례만이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에 보고되어 학대관련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추정했다. 미국에서는 방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1996년에 신고되고 학대로 확인된 자기홀대를 제외한 70,942건의 노인학대 가운데 48.7%가 방임이었으며 35.4%가 정서적, 심리적학대 사례였고 재정적 착취가 30.2%, 25.6%가 신체적학대였다(NCEA, 1998, 문애리, 2002). 특히 이 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여성피해자들이 정서적, 심리적학대의 76.3%, 신체적학대의 71.4%, 재정적 착취의 63%, 방임의 60%에 달한다. 또한 학대피해와 연령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방임피해자의 51.8%가 80세 이상, 40%가 70대이며, 8.2%만이 60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으로만 볼 때, 80세 이상 노인들은 정서적학대 피해자의 41.3%, 신체적학대의 43.7%, 재정적학대의 48.0%에 이르고 있어, 노인학대 중에서도 여성, 고령노인에 대한 학대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국과는 다른 한국사회에서 노인학대는 사회적 개인의 존엄성과 효·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묻힌 사각지대이다. 학대와 관련된 제도화된 신고 및 개입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 또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노인학대실태조사는 수치상 매우 낮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중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0.3%, 언어·심리적학대

7.7%, 경제적학대 2.1%, 방임학대 2.1%, 기타 1.0% 등으로 나타났다.

축소 반영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눈여겨 볼 사실은 언어·심리적 학대가 다른 어떤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언어·심리적 학대가 그만큼 누적되고 심각한 학대의 유형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언어·심리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나 다른 학대의 유형에 비해 타인에게 노출시키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 학대로만 인식되어온 것 비하여 언어, 정서적 학대의 내용과 실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대로 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많은 노인분들이 언어·심리적, 정서적 학대경험을 호소함으로써 오히려 학대를 당했으나 학대로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는 이중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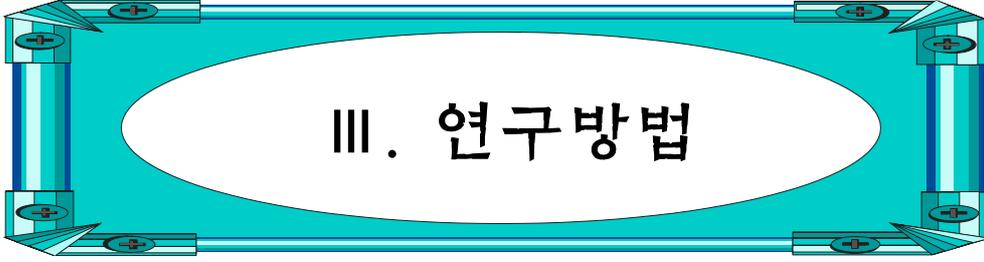
1) 우리나라 노인학대연구에서는 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재정적, 언어·심리적학대, 방임 등으로 나누고 있고, 자기홀대(self neglect)는 넣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다. 자기홀대의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 지원 부족 등이 원인으로 미국의 경우는 자기홀대도 노인학대의 범주로 넣는 추세이다.

또한 언어·심리적학대는 심리적·정서적학대, 혹은 정신적학대 등과 함께 개념상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것 또한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는데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학대를 '괴로움, 정서적 고통 혹은 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노인을 아이처럼 취급하거나 노인을 가족, 친구 혹은 정기적인 활동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냉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지 내용으로는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는 항목이 정서적 학대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향을 지른다',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노인을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한다'는 언어적학대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한곤(1998)의 연구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노인학대를 방임, 언어적학대의 순으로 지적하면서 신체적 학대는 다른 학대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국희(2002)는 노인학대의 일반적 유형은 신체적 학대보다는 정서적 심리적 학대로 파악하고, 따라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식의 개입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처벌 격리 보호와 같은 대응책은 문제를 더욱 은폐시킬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부양자 부담감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차원보다는 성격 결함이나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의 결함으로 돌릴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보호 격리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노인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조한 우국희(2001)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와는 달리 신체적 학대가 일반적이지 않다. 대부분이 정서적·언어적 학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노인학대의 경우 많은 비율이 의도적이기 보다는 부양자의 과부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인한, 혹은 노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부적절하게 비고의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를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지망을 강화, 학대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개입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연호(2002)는 한국의 선행연구 중 가장 많은 성과가 있는 부분을 학대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라 평가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학대위험요인을 노인의 개인적 요인, 가해자의 개인적 특질, 가족 관련 요인, 사

회, 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에 따른 의존성 증가, 경제적 의존 등이 열거되었으며, 가해자의 개인적 특질로는 폭력, 약물의존 등이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관련요인으로는 의사소통 및 행동 통제를 포함, 가부장적 가족구조내에서의 가족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부양 스트레스와 전통적인 역할기대(맏아들, 맏며느리, 시누이, 율개 등)에 따른 갈등이 노인학대로 확대될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를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지적된 학대위험요인으로는 의존성, 부양스트레스, 및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이 부각되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의 목적과 의의

본 조사는 우리 나라의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는데 1차 목적이 있으며, 도시와 농촌, 전국 규모의 노인학대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노인학대 개입방안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1)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적 인식 사이의 차이를 밝힌다.

2) 노인학대 연구 및 실천적 대안 마련에 구체적·보편적 토대를 제공한다.

3) 피학대노인의 실태를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면접을 거쳐 노인학대 경험자를 심층면접대상자로 발굴하였다. 이로써 반복·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된 면접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4) 1대 1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구체적인 유형과 대응행동, 학대의 영향 등 노인학대의 실태파악에 진일보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5) 일반화할 수 없는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에 관한 다단계, 다면적 접근을 통한 이번 조사의 결과는 앞으로 후속연구와 정책개발에 체계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2. 조사방법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화조사, 일반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가 설계되었으며, 각 조사 시 조사설계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3. 연구문제

### 1) 전화조사

- (1) 전국민(전연령층)의 노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어떠한가?
- (2) 본 연구에서 채택된 다섯 가지 학대 유형, 열다섯 가지 학대 상황에 대하여 학대라고 인식하는가? 하고 있다면 심한 학대라고 생각하는가?
- (3) 관련 변인 중 특히 현재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미래 동거의향에 따라 학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책으로서 가정폭력방지법을 알고 있는가?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2) 일반면접조사

(1) 학대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가?

(2) 학대를 당했다면 어떤 학대상황을 경험했는가?

### **3) 심층면접조사**

(1) 노인학대의 실태는 어떠한가?

(2) 학대받는 노인들은 학대당할 때 어떤 대응행동을 하는가?

(3) 피학대자 노인들이 인식하는 학대의 원인은 무엇인가?

(4) 피학대노인들은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망을 알고 있는가?

(5) 학대를 당한 결과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4. 연구의 제한점**

전화조사는 표본추출을 통해 성별, 연령별, 권역별, 도·농간 쿼터를 할당하여 표본집단을 구성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면접조사는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를 찾기

위하여 공원, 무료급식소, 미인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심층면접조사도 일반면접조사를 통해 학대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학대를 당하고 있는 노인에게 대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 조사로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 전화조사

## 1. 조사설계

- 1) 조사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2) 조사방법 : 전화조사(telephone survey)
- 3)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남녀
- 4) 표본수 : 1,000명
- 5) 표본추출방법

(1) 표집설계 :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쿼터를 할당한 다음 지역별로 전화국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각 해당전화국내에서 RDD(Random Digit Dialing)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선정하였다.

(2) 쿼터배정 : 표집설계에 의해 추출된 대상 가구를 조사하되, 각 지역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구성비율에 따라 쿼터를 적용하였다. 거대도시

인 서울, 부산과 광역시 단위의 지역을 제외한 경기, 충남, 경북 등의 도 단위 지역에서는 시부와 군부를 세분하여 쿼터를 배정하였다.

6) 표본오차의 최대 허용 한계 :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3.2\%$

7) 조사기간 : 2002. 9. 12 - 2002. 9. 26

8) 자료처리 및 분석 : SPSSWIN(10.07)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및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2. 조사내용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학대유형을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로 나누고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국내외 학대도구들을 검토하여 각 유형별로 대표적이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각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학대상황을 설명한 3가지 예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을 일반인들은 노인학대로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 또 학대로 여긴다면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각 학대가 일어났을 때의 적절한 대처방안, 주 가해자, 학대원인, 신고, 가정폭력방지법, 현재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심각성 등 노인학대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개입여

부에 관한 일반인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한국사회의 노인공경도를 평가하게 하였으며 주어진 8개의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예문에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stereotype)을 알아보았다.

둘째,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의 학대 유형(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에 따른 15가지 학대상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학대상황이라고 인식하는지, 인식한다면 심한 학대라고 생각하는지 등 학대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현재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미래 동거의향에 따라 학대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미래에 노부모와 같이 살고 싶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이들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보았다.

넷째, 노인학대의 해결 방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대의 발생 원인과 추가해자, 주해결자, 학대를 당한 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유형별로 물었고,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책으로서 가정폭력방지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개입태도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 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III-1> 전화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성별	남자	500	50.0	권역별 지역	수도권	471	47.1	
	여자	500	50.0		영남권	278	27.8	
나이	10대	99	9.9		호남권	116	11.6	
	20대	212	21.2		강원권	33	3.3	
	30대	241	24.1		충청권	102	10.2	
	40대	207	20.7		시도별 지역	서울	216	21.6
	50대	122	12.2			부산	79	7.9
	60대	96	9.6			인천	54	5.4
	70대	23	2.3			대구	53	5.3
교육 수준	초졸이하	122	12.3			광주	29	2.9
	중졸이하	129	13.0	대전		30	3.0	
	고졸이하	369	37.2	울산		22	2.2	
	대학이상	371	37.4	경기도		201	20.1	
동거 가족	1대	122	12.2	강원도		33	3.3	
	2대	687	68.7	충북		32	3.2	
	3대	110	11.0	충남	40	4.0		
	기타	81	8.1	경북	58	5.8		
규모별 지역	대도시	483	48.3	경남	66	6.6		
	시부	412	41.2	전북	43	4.3		
	군부	105	10.5	전남	44	4.4		
전 체		1000	100.0	전 체		1000	100.0	

\* 무응답 제외

# 일반면접조사

## 1. 조사설계

1) 조사지역 : 전국을 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의 4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각각 5:5가 되도록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 일 대 일 면접조사(interview)

3) 조사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4) 표본수 : 1,349명(학대사례 노인을 150명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권역별 노인인구수에 따라 쿼터를 할당한 다음 권역별로 학대받은 노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및 가정에서 조사하였다. 조사시 방문한 시설 및 비율은 표 III-2와 같이 되도록 하였다.

<표 III-2> 조사장소

구 분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대학) 포함)	20~25
경로당	25~30
공원 (무료급식소* 포함)	10~15
수용시설** (양로원, 요양원, 미인가시설, 여성보호센터 포함)	15~20
기타(재가노인)*** 독거노인, 수급권자, 노인의전화 상담사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상담사례, 까리따스상담사례, 노인학대 관련 석박사 학원논문의 사례, 가정봉사원과견대상노인 등	10~30
계	100

- ◆ 위의 quota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형편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
- ◆ 도시:농촌은 약 5:5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형편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

\* 무료급식소는 복지관에도 있기는 하나 (서울, 경기쪽은) 복지관에서의 무료급식이 수급권대상노인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고, 일반노인들에게는 1식에 1,500~2,500원의 비용을 받고 있으므로 공원 등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 수용시설에서 조사를 할 경우, 무료양로원과 무료요양원중에서 무료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약 20%의 인원을 실비인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20%의 인원을 만나 조사를 한다. 또한 미인가시설의 노인 중 상당수가 학대사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보호센터에 입소해있는 노인들도 상당수가 학대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 기타노인은 대부분이 집에 있는 노인이므로 “재가노인”이라고도 명시하였다. 독거노인, 수급권자 노인, 그동안 상담받으면서 밝혀진 학대노인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되, 성별, 연령 등을 어느 정도는 비율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한다.

6) 표본오차의 최대 허용 한계 : 비확률적표집방법인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였으므로 계산할 수 없었고, 비표본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원, 무료급식소, 노인복지관, 경로당, 독거노인, 시설 생활노인 등 최대한 광범위한 장소에서 노인들을 만나 면접하는 노력을 하였다.

7) 조사기간 : 2002. 9. 28 - 2002. 10. 31

8) 자료처리 및 분석 : SPSSWIN(10.07)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및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2. 조사내용

이 조사는 학대받은 노인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유형에서와 같은 15개의 학대상황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학대를 당했던 경험 정도를 조사하였고, 또한 노인의 일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동거가족,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및 지병유무,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및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등을 조사하였다.

### 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III-3> 일반면접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성별	남자	555	41.1	거주지	수도권시부	439	32.5	
	여자	794	58.9		수도권군부	25	1.9	
나이	65-74세	576	42.7		충청강원시부	158	11.7	
	75-84세	612	45.4		충청강원군부	94	7.0	
	85세 이상	161	11.9		영남시부	312	23.1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63	78.8		영남군부	133	9.9	
	중졸이하	128	9.5		호남시부	102	7.6	
	고졸이하	91	6.7		호남군부	86	6.4	
	대학이상	67	5.0		거주 형태	집	1096	81.2
						인가시설	161	11.9
			비인가시설	92		6.8		
전 체		1349	100.0	전 체		1349	100.0	

# 심층면접조사

## 1. 조사설계

1) 조사방법 : 일 대 일 면접조사(interview)

2) 조사대상 : 일반면접에서 조사한 1,349명 중에서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

3) 학대받은 노인을 찾아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대유형을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로 나누고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국내외 학대도구들을 검토하여 각 유형별로 대표적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각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 3가지를 정하였다.

모두 15개의 학대유형 중 1~2가지의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므로 노인학대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개 이상의 경험이 있는 노인을 학대받은 노인으로 정하였다.

4) 표본수 : 172명

5) 표본오차의 최대 허용 한계 : 비확률적표집방법인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였으므로 계산할 수 없었고, 비표본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원, 무료급식소, 노인복지관, 경로당, 독거노인, 시설 생활노인 등 최대한 광범위한 장소에서 노인들을 만나 면접하는 노력을 하였다.

6) 조사기간 : 2002. 9. 28 - 2002. 10. 31

7) 자료처리 및 분석 : SPSSWIN(10.07)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및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2. 조사내용

일반면접조사에서 학대받은 노인을 찾아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화 조사와 일반면접조사에서 사용한 15개의 학대상황 중 1~2가지의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므로 노인학대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개 이상의 경험이 있는 노인을 학대받은 노인으로 정하였다.

본 조사는 노인학대가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노인학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사내용은

첫째, 노인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중 어떤 유형의 학대를 많이 경험했는지, 한 노인이 대체로 몇가지 유형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피학대노인들의 대응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학대를 당할 때 어떤 대응행동을 보였는지, 즉 그냥 참았는지, 자리를 피했는지, 주위에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했는지, 같이 싸웠는지 등을 물어보았고, 그런 때에 주로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구와 의논하고 싶은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학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주가해자는 누구인지, 가해자와 함께 살고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 학대를 당하게 될 경우 신고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섯째, 학대를 당한 결과 그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대로 인해 병원에 간 경험이 있는지, 학대 당했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는

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 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III-4> 피학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성별	남자	60	34.9	거주지 I	수도권시부	81	47.1
	여자	112	65.1		수도권군부	4	2.3
나이	65-74세	74	43.0		충청강원시부	11	6.4
	75-84세	75	43.6		충청강원군부	13	7.6
	85세 이상	23	13.4		영남시부	31	18.0
교육 수준	초졸이하	137	79.6		영남군부	6	3.5
	중졸이하	12	7.0		호남시부	16	9.3
	고졸이하	15	8.7		호남군부	10	5.8
	대학이상	8	4.7		거주지 II	도시	139
			농촌			33	19.2
전 체		172	100.0	전 체		172	100.0



## IV. 연구결과



# 전화조사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전화조사는 노인에 대한 전국민의 일반적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1) 연구방법

전화조사는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단순무작위 표본추출(Simple Random Sampling)방법과 지역별로 전화국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각 해당전화국 내에서 RDD(Random Digit Dialing)방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을 성별, 연령별, 권역별, 도·농간 쿼터를 할당하여 표본 집단을 구성하였다.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였으며, 조사된 자료는 SPSSWIN(10.07)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하였으며, 표본오차의 최대 허용 한계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3.2\%$ 였다.

### 2) 연구문제

전국민 대상 전화조사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1) 전국민(전연령층)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어떠한지, 노인 공경도 및 노인·노화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본 연구에서 채택된 다섯 가지 학대유형, 열다섯 가지 학대 상황에 대하여 학대라고 인식하는지, 인식한다면 심한 학대라고 생각하는지 등 학대의 민감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3) 관련 변인 중 특히 현재 노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학대 인식의 차이 및 노부모 혹은 자녀와의 미래 동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4) 노인학대의 해결 방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원망 인식 정도와 개입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전체 1000명으로 남자 500명, 여자 500명이었으며, 연령은 30대가 24.1%, 20대가 21.2%, 40대가 20.7%였다.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이 37.4%, 고졸 이하가 37.2%였고, 동거가족은 2세대가 68.7%로 가장 많았고, 규모별 지역으로는 대도시가 48.3%, 시부가

41.2%, 군부가 10.5%였다(표 IV-1).

<표 IV-1> 전화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성별	남자	500	50.0	권역별 지역	수도권	471	47.1	
	여자	500	50.0		영남권	278	27.8	
나이	10대	99	9.9		호남권	116	11.6	
	20대	212	21.2		강원권	33	3.3	
	30대	241	24.1		충청권	102	10.2	
	40대	207	20.7		시도별 지역	서울	216	21.6
	50대	122	12.2			부산	79	7.9
	60대	96	9.6			인천	54	5.4
	70대	23	2.3	대구		53	5.3	
교육 수준*	초졸이하	122	12.3	광주		29	2.9	
	중졸이하	129	13.0	대전		30	3.0	
	고졸이하	369	37.2	울산		22	2.2	
	대학이상	371	37.4	경기도		201	20.1	
동거 가족	1대	122	12.2	강원도		33	3.3	
	2대	687	68.7	충북		32	3.2	
	3대	110	11.0	충남		40	4.0	
	기타	81	8.1	경북		58	5.8	
규모별 지역	대도시	483	48.3	경남		66	6.6	
	시부	412	41.2	전북	43	4.3		
	군부	105	10.5	전남	44	4.4		
전 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 무응답 제외

### 3. 연구문제분석

#### 1)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 (1) 노인공경도

요즈음 우리사회는 노인공경에 대하여 어떠한지를 물어 본 결과 전체적으로 “공경하지 않는 편이다”가 47.6%, “공경하는 편이다”가 38.2%로 응답자의 반 정도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공경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효사상인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항은 응답자가 노인을 공경하느냐 아니냐를 묻은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묻은 것으로 전체 사회의 태도평가와 응답자 본인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관련변인과 교차분석하여 살펴보면 “공경하는 편이다”가 남자에서 34.9%, 여자에서 41.5%로, 연령별로는 20대가 41.4%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경우가 33.0%로 “살고 있지 않다”(39.0%)에 비해 낮았다(표 IV-2). 노인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높기 때문이라고도 여겨진다.

노인과의 다양한 접촉, 노화에 대한 이해, 노인체험 등은 전체 국민들

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 관계형성에 좋은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 우리사회의 노인공경에 대한 평가

		합계		요즈음 우리 사회의 노인공경에 대한 평가					
		%	응답자 수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	공경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공경하는 편이다	매우 공경하고 있다	모르겠다
				%	%	%	%	%	%
성별	남자	100.0	500	4.9	49.7	8.8	34.9	0.8	0.9
	여자	100.0	500	3.5	45.4	6.6	41.5	1.2	1.8
나이	10대	100.0	99	4.0	55.4	6.5	33.0	1.0	0.0
	20대	100.0	212	2.9	45.6	9.1	41.4	0.0	1.0
	30대	100.0	241	2.3	49.3	6.4	40.6	0.8	0.5
	40대	100.0	207	4.9	47.1	8.8	37.8	0.5	0.9
	50대	100.0	122	6.3	50.8	7.7	31.1	0.8	3.3
	60대	100.0	96	6.1	41.4	6.3	38.9	4.2	3.1
	70대	100.0	23	13.0	26.1	8.7	43.5	4.3	4.3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1.9	54.5	7.7	33.0	0.7	2.2
	살고 있지 않다	100.0	862	4.6	46.5	7.7	39.0	1.0	1.2
전체		100.0	1000	4.2	47.6	7.7	38.2	1.0	1.3

## (2) 노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

노인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높기 때문이라고도 여겨진다.

노인과의 다양한 접촉, 노화에 대한 이해, 노인체험 등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 관계 형성에 좋은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주어진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그렇다”와 “아니다”로 측정되었으며 긍정적 문항에서의 긍정적 응답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부정적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부정적 인식으로 분석되었다. 이 질문에서 노인이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일반적 범례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정 개인보다는 노인·노화·노년화 등과 연관된 일반적 인식 혹은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항목에 대한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겨질 수 있다.

#### ① 노인들은 집안 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노인들은 집안 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라는 질문에서 “그렇다”가 83.4%, “아니다”가 12.8%, “모르겠다”가 3.8%였다. 아직까지는 노인이 집안에서 도움이 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노인과 살고 있지 않은 경우, 핵가족의 경우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와 3대 동거가족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인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결과는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표 IV-3).

<표 IV-3> 노인들은 집안 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합계		노인들은 집안 일에 여러가지 도움을 준다		
		%	응답자 수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	%	%
교육수준	초졸이하	100.0	122	74.4	15.2	10.4
	중졸이하	100.0	129	80.5	18.1	1.4
	고졸이하	100.0	369	81.9	13.6	4.5
	대학이상	100.0	371	89.4	9.6	1.0
동거 가족	1대	100.0	122	85.0	10.2	4.8
	2대	100.0	687	85.0	11.6	3.4
	3대	100.0	110	73.4	22.9	3.6
	기타	100.0	81	81.1	12.7	6.2
전체		100.0	1000	83.4	12.8	3.8

## ②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안은 화목하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안은 화목하다」라는 질문에서 “그렇다”가 64.9%, “아니다”가 26.9%, “모르겠다”가 8.1%였다. 상당수는 노인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도 암시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에 비해 “아니다”라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주 부담자가 여성이라는 점, 아직까지도 가사노동의 대부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가정 내에서 노인을 모시는 것에 여성들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인과 살고 있는 경우, 3세대 동거가족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은 집안 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과는 상반된 것으로 노인들의 기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세대간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표 IV-4).

<표 IV-4>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안은 화목하다

		합계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안은 화목하다		
		%	응답자 수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	%	%
성별	남자	100.0	500	73.8	20.2	5.9
	여자	100.0	500	56.0	33.6	10.4
소득 수준	어려움 없다	100.0	390	67.1	27.4	5.6
	약간 어렵다	100.0	420	63.9	28.1	8.1
	많이 어렵다	100.0	121	63.2	23.5	13.3
	그저 그렇다	100.0	56	61.3	26.3	12.4
	모르겠다	100.0	14	65.8	11.8	22.4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79.4	14.1	6.5
	살고 있지 않다	100.0	862	62.6	29.0	8.4
동거 가족	1대	100.0	122	63.7	28.9	7.4
	2대	100.0	687	63.8	27.8	8.5
	3대	100.0	110	75.1	18.6	6.4
	기타	100.0	81	62.8	28.6	8.6
전체		100.0	1000	64.9	26.9	8.1

### ③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라는 질문에서 “그렇다”가 30.6%, “아니다”가 64.8%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인

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지 않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은 노화와 노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연결되어 이는 한편으로는 연령차별주의(Ageism)의 결과이자 그러한 차별을 고착시키는 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화·노령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50, 60, 70대의 응답자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 노인, 혹은 노인 당사자로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보다는 ‘노인이 되어도 살만 하네’라는 본인의 실질적인 경험에 기초한 응답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교육수준과 긍정적인 인식과는 반비례를 보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 대학이상 학력의 경우 해당 응답자의 73%가 “아니다” 라고 응답,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학력만을 고려해 볼 때, 기대수준과 현실적인 조건사이의 괴리가 오히려 즐거운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집단이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집단에 비해 더욱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라 보여지는 차이와 함께 이 결과는 직접 노인의 생활을 접할 기회가 없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간 교류가 활발할수록, 노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될수록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표 IV-5).

<표 IV-5>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합계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	응답자 수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	%	%
나이	10대	100.0	99	26.5	72.5	1.0
	20대	100.0	212	23.2	74.5	2.3
	30대	100.0	241	22.0	73.8	4.2
	40대	100.0	207	32.0	62.8	5.3
	50대	100.0	122	42.4	51.3	6.3
	60대	100.0	96	49.5	40.9	9.5
	70대	100.0	23	52.2	39.1	8.7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122	49.0	43.9	7.1
	중졸이하	100.0	129	40.0	55.7	4.2
	고졸이하	100.0	369	28.3	67.6	4.1
	대학이상	100.0	371	23.4	73.0	3.6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43.2	55.3	1.5
	살고 있지 않다	100.0	862	28.6	66.3	5.1
전체		100.0	1000	30.6	64.8	4.6

④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57.6%, “아니다”가 38.3%로 응답자의 반 이상이 ‘노인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고 응답함으로써 노후의 삶은 매우 폐쇄적이며 단절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연령별, 혹은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노인과 미래라는 단어를 쉽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표 IV-6).

<표 IV-6>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합계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	응답자 수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	%	%
성별	남자	100.0	500	56.3	40.3	3.4
	여자	100.0	500	59.0	36.2	4.8
나이	10대	100.0	99	51.1	47.9	1.0
	20대	100.0	212	64.2	35.8	0.0
	30대	100.0	241	50.0	45.8	4.2
	40대	100.0	207	62.6	30.9	6.6
	50대	100.0	122	53.6	41.0	5.4
	60대	100.0	96	61.4	30.5	8.1
	70대	100.0	23	65.2	26.1	8.7
전체		100.0	1000	57.6	38.3	4.1

⑤ 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

「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라는 질문에 서 “그렇다”가 62.9%, “아니다”가 33.9%로 일반인들은 노인들이 매우 고집 세고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40, 50대가 그렇지 않은 연령대에 비해 훨씬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생활 속에서 노인과 직접 부딪힐 기회가 많은 집단(여성과 중년의 가장)이 노인들과의 의견충돌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라 여겨진다. 이는 노인과의 동거여부, 동거가족에 따른 집

단간 차이에서도 증명된다. 노인과 같이 살고 있는 집단(68%)이 그렇지 않은 집단(62%)에 비해 조금 더 부정적이며, 3세대 동거가족의 경우 (70%)가 1세대(61%), 2세대(62%) 동거가족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다(표 IV-7).

<표 IV-7> 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

		합계		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	응답자 수	%	%	%
성별	남자	100.0	500	57.6	39.3	3.1
	여자	100.0	500	68.2	28.4	3.4
나이	10대	100.0	99	50.4	48.6	1.0
	20대	100.0	212	59.2	39.9	0.9
	30대	100.0	241	60.6	35.3	4.1
	40대	100.0	207	74.2	23.9	1.9
	50대	100.0	122	70.7	22.5	6.8
	60대	100.0	96	57.8	36.4	5.7
	70대	100.0	23	52.2	39.1	8.7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67.5	28.4	4.1
	살고 있지않다	100.0	862	62.2	34.7	3.1
동거가족	1대	100.0	122	60.5	33.4	6.1
	2대	100.0	687	62.3	34.7	3.0
	3대	100.0	110	69.6	27.3	3.1
	기타	100.0	81	62.7	36.0	1.2
전체		100.0	1000	62.9	33.9	3.2

⑥ 노인들은 젊은 세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노인들은 젊은 세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라는 질문에서 “그렇다”가 65.8%, “아니다”가 30.0%, “모르겠다”가 4.2%였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세대차이를 반증하는 한 지표로도 여겨지며 노인들의 다른 세대에 대한 실제 태도와 관계없이 노인들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노인들은 젊은 세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데 59.9%만 동의, 초졸 이하의 경우 71.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과 세대차이와의 상관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으나, 다른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수와의 통계적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표 IV-8).

<표 IV-8> 노인들은 젊은 세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합계		노인들은 젊은 세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	응답자 수	%	%	%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122	71.2	20.1	8.8
	중졸이하	100.0	129	71.1	26.4	2.6
	고졸이하	100.0	369	68.6	27.8	3.6
	대학이상	100.0	371	59.9	37.2	2.8
전체		100.0	1000	65.8	30.0	4.2

⑦ 사람은 나이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질문에서 “그렇다”가 62.9%, “아니다”가 35.4%로 열명 중 여섯명이상이 노인을 무능력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사람은 나이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합계		사람은 나이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	응답자 수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	%	%
성별	남자	100.0	500	59.0	39.1	1.9
	여자	100.0	500	66.8	31.8	1.4
나이	10대	100.0	99	57.1	42.9	0.0
	20대	100.0	212	46.5	53.0	0.5
	30대	100.0	241	57.8	39.6	2.6
	40대	100.0	207	68.8	29.8	1.4
	50대	100.0	122	76.8	19.4	3.8
	60대	100.0	96	82.0	16.2	1.8
	70대	100.0	23	87.0	13.0	0.0
교육수준	초졸이하	100.0	122	84.1	12.8	3.0
	중졸이하	100.0	129	76.0	22.4	1.5
	고졸이하	100.0	369	64.4	34.8	0.8
	대학이상	100.0	371	50.5	48.5	1.0
소득수준	어려움 없다	100.0	390	57.7	41.3	1.0
	약간 어렵다	100.0	420	66.3	32.6	1.1
	많이 어렵다	100.0	121	69.8	28.6	1.5
	그저 그렇다	100.0	56	60.8	37.4	1.8
	모르겠다	100.0	14	55.2	7.7	37.1
전체		100.0	1000	62.9	35.4	1.7

이들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그렇다”의 비율을 보면 성별에서 남자가 59.0%로 여자 66.8%보다 적었고, 나이별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많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초졸 이하가 84.1%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견해가 감소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많이 어렵다”가 69.8%로 가장 많았다. 노년을 무기력하게 인식하는 데에는 단지 일반 노년 혹은 노인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응답자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처지에 따른 자원동원력을 염두에 둔 평가라고도 여겨진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인 경우 늘어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능력과 함께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더욱 악화되어 갈 것이라는 인식이 이 응답에 내포되어 있다고도 하겠다(표 IV-9).

### ⑧ 노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이다

「노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이다」라는 질문에서 “그렇다”가 62.5%, “아니다”가 34.3%로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50대 응답자의 81.1%가 노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라고 대답하여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여러 항목에서도 보여지듯이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인식에서 특히 50대는 일관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노년도 아닌, 그러나 노년을 눈앞에 둔 시점으로 노년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는 시기라 여겨진다. 실제 노년을 경험하게 되면, 노인이 되면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막연한 편견에서 곧 닥칠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공포로 전환되는 이 시기의 특성은 노령화에 대한 조기교육과 은퇴, 죽음 등 노년의 과정에 대한 예비교육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표 IV-10).

<표 IV-10> 노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이다

		합계		노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이다		
		%	응답자 수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	%	%
나이	10대	100.0	99	62.3	36.7	1.0
	20대	100.0	212	56.5	43.5	0.0
	30대	100.0	241	48.0	45.8	6.2
	40대	100.0	207	66.7	30.6	2.7
	50대	100.0	122	81.1	15.6	3.3
	60대	100.0	96	78.9	17.2	3.9
	70대	100.0	23	65.2	21.7	13.0
전체		100.0	1000	62.5	34.3	3.2

### (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편이다」가 43.0%. 「매우 부족 하다」가 42.0%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표 IV-11).

<표 IV-11> 우리나라 노인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합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					
		%	응답자 수	매우 잘되어 있다	잘 되어있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	모르 겠다
성별	남자	100.0	500	0.8	3.7	8.5	44.0	41.9	1.3
	여자	100.0	500	0.8	7.0	4.6	42.1	42.2	3.4
나이	10대	100.0	99	0.0	6.2	11.7	52.3	29.7	0.0
	20대	100.0	212	0.9	1.4	5.2	44.0	47.9	0.6
	30대	100.0	241	1.2	3.8	7.3	36.7	50.0	1.0
	40대	100.0	207	0.0	5.0	4.6	46.4	43.0	1.0
	50대	100.0	122	0.0	3.3	4.1	45.7	42.1	4.9
	60대	100.0	96	2.1	16.3	8.4	40.7	22.4	10.2
	70대	100.0	23	4.3	21.7	8.7	26.1	30.4	8.7
전체		100.0	1000	0.8	50.3	6.5	43.0	42.0	2.3

## 2) 노인학대 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

### (1)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학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표 IV-12에 제시하였다.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의 상황들 중에서 신체적학대를 많은 응답자가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언어적학대, 방임학대, 경제적학대 순서대로 학대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서적 학대상황은 가장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노인학대를 학대로 인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 즉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와 같이 치명적 결과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반

면에 가족특정상 혹은 노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상황 즉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유형의 학대에서도 상황에 따라 학대라고 인식되기도 하고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정서적 학대유형에서 제시된 3가지 상황 중에서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응답자의 29.2%,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는 36.2% 정도가 “심한 학대”라고 인식한 반면에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는 59.2%로 과반수 이상이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같은 학대유형의 상황에서도 노인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이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의 노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담으로 인한 사건이나 사고가 여러 차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다른 상황보다도 이런 상황을 학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 및 아동영역에서 학대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학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대라는 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학대로 인한 치명적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 노인학대의 경우는 대상자의 특성상 노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학대라고 인식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 짐작된다. 일반 국민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노인의 인권이나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학대로 인한 결과가 뚜렷한 사실

적 상황만을 학대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조사의 질문 문항이 노인학대의 전형적 상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의식은 학대보다는 노인부양 시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인정해 버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노인학대 상황에 대한 인식

항 목		심한 학대	심하지 않은 학대	학대 아님	모르겠다
방 임	1.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72.6	12.2	14.7	0.4
	2. 아픈 노인에게 약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84.7	9.1	6.0	0.2
	3. 노인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	66.4	18.6	14.6	0.4
정 서 적	4.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29.2	19.5	51.0	0.3
	5.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36.2	18.4	45.3	0.2
	6.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59.2	21.8	18.8	0.2
언 어 적	7.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향을 지른다	90.1	5.6	4.2	0.1
	8.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70.3	13.5	16.0	0.2
	9. 노인을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한다	79.8	8.6	11.2	0.4
신 체 적	10.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82.5	8.0	9.4	0.1
	11.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96.4	1.9	1.6	0.1
	12.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98.3	0.8	0.8	0.1
경 계 적	13.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64.9	11.8	22.7	0.6
	14.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노인소득을 가로챈다	83.2	7.2	9.5	0.1
	15.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땅, 전세금)등의 명의를 변경한다	77.7	8.9	13.1	0.2

## (2) 노인학대 시 필요한 조치

노인학대 시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응답으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다

고 여겨지는 신체적학대에서는 응답자의 57.5%, 경제적학대에서는 47.8%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방임학대 시에는 응답자의 58.6%가 「쉼터」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정서적학대와 언어적학대는 쉼터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일반국민은 노인학대를 신고를 통해 법적 개입보다는 쉼터, 상담 등의 개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라기보다는 가족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표 IV-13).

<표 IV-13> 노인학대시 필요한 조치

	노인학대 시 필요한 것 (%)				
	쉼터	상담	신고	경제적 도움	모르겠다
방임학대	58.6	25.2	12.5	0.3	3.4
정서적학대	48.0	42.5	6.5	0.1	2.9
언어적학대	43.6	35.9	17.1	0.1	3.3
신체적학대	26.2	14.5	57.5	0.1	1.7
경제적학대	16.5	33.3	47.8	2.4	-

### (3) 학대유형별 인식 및 필요한 조치

#### ① 방임학대

방임학대에 제시된 3가지 상황에서 「아픈 노인에게 약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를 응답자의 84.7%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6.0%가 “학대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에서 초졸 이하가 79.8%, 대학이상은 87.1%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한 학

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거가족에서는 1세대가 83.1%, 3세대가 92.0%로 동거세대가 많을수록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어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살 경우에 오히려 심한 학대에 대해 민감함을 알 수 있다 (표 IV-14).

<표 IV-14> 아픈 노인에게 약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합계		아픈 노인에게 약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 겠다
				%	%	%	%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122	79.8	9.8	9.6	0.8
	중졸이하	100.0	129	88.1	3.9	8.0	0.0
	고졸이하	100.0	369	82.3	10.5	6.9	0.3
	대학이상	100.0	371	87.1	9.5	3.4	0.0
동거 가족	1대	100.0	122	83.1	8.2	8.6	0.0
	2대	100.0	687	83.4	9.8	6.6	0.3
	3대	100.0	110	92.0	6.2	1.8	0.0
	기타	100.0	81	87.8	8.8	3.4	0.0
전체		100.0	1000	84.7	9.1	6.0	0.2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는 응답자의 72.6%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14.7%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자가 76.8%, 여자가 68.5%로 남자가 여자보다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70대가 43.5%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응답자가 “학대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노인과의 동거여부에서 살고 있다가 79.26%, 살고 있지 않다가 71.6%로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거가족에서는 1세대가 67.6%, 3세대가 79.8%로 동거세대가 많을수록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어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나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살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학대에 대해 덜 민감함을 알 수 있다(표 IV-15).

<표 IV-15>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합계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둔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성별	남자	100.0	500	76.8	11.9	10.8	0.4
	여자	100.0	500	68.5	12.5	18.7	0.4
나이	10대	100.0	99	66.2	12.0	21.7	0.0
	20대	100.0	212	70.5	15.3	14.2	0.0
	30대	100.0	241	72.9	14.5	12.2	0.4
	40대	100.0	207	80.7	9.2	9.6	0.5
	50대	100.0	122	71.4	10.3	18.2	0.0
	60대	100.0	96	76.6	6.4	14.9	2.1
	70대	100.0	23	34.8	21.7	43.5	0.0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79.2	10.8	9.3	0.7
	살고 있지 않다	100.0	862	71.6	12.4	15.6	0.3
동거 가족	1대	100.0	122	67.6	9.2	21.6	1.6
	2대	100.0	687	72.5	13.5	13.7	0.3
	3대	100.0	110	79.8	10.4	9.8	0.0
	기타	100.0	81	72.0	8.3	19.8	0.0
전체		100.0	1000	72.6	12.2	14.7	0.4

「노인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는 응답자의 66.4%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14.6%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80.5%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응답자가 “심한 학대”라고 답변하였고,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가 78.5%, 대학 이상이 62.9%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6).

<표 IV-16> 노인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

		합계		노인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나이	10대	100.0	99	59.7	23.3	17.0	0.0
	20대	100.0	212	55.3	25.1	19.6	0.0
	30대	100.0	241	65.1	20.9	14.0	0.0
	40대	100.0	207	69.3	18.8	11.4	0.5
	50대	100.0	122	80.4	7.6	11.2	0.8
	60대	100.0	96	80.5	6.6	11.8	1.0
	70대	100.0	23	52.2	21.7	21.7	4.3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122	78.5	7.9	11.1	2.4
	중졸이하	100.0	129	69.5	13.1	17.4	0.0
	고졸이하	100.0	369	64.9	21.2	13.6	0.3
	대학이상	100.0	371	62.9	21.9	15.2	0.0
전체		100.0	1000	66.4	18.6	14.6	0.4

노인방임 시 필요한 조치를 보면 「쉼터」가 응답자의 58.6%, 「상담」이 25.2%, 「신고」가 12.5%였다. 연령별로는 70대에서 「신고」가 4.3%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게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리고 50대가 7.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실제로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50대와 부양

을 받고 있는 70대가 신고보다는 쉽거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학대상황을 학대보다는 가족내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7).

<표 IV-17> 노인 방임 시 필요한 것

		합계		노인 방임 시 필요한 것				
		%	응답자 수	쉽터	상담	신고	경제적 도움	모르겠다
				%	%	%	%	%
나이	10대	100.0	99	54.1	25.2	18.7	0.0	2.0
	20대	100.0	212	60.5	23.2	13.6	0.9	1.8
	30대	100.0	241	65.3	20.7	13.3	0.0	0.7
	40대	100.0	207	57.6	26.8	11.0	0.0	4.7
	50대	100.0	122	56.2	27.5	7.9	0.8	7.6
	60대	100.0	96	47.5	33.3	12.5	0.7	6.0
	70대	100.0	23	56.5	30.4	4.3	0.0	8.7
전체		100.0	1000	58.6	25.2	12.5	0.3	3.4

## ②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로 제시된 3가지 상황에서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는 응답자의 59.2%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8.8%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8>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59.2	21.8	18.8	0.2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응답자의 29.2%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51.0%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31.4%, 여자가 26.9%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46.3%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응답자가 “심한 학대”라고 답변하였고,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가 44.8%, 대학 이상이 23.7%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IV-19).

<표 IV-19>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합계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성별	남자	100.0	500	31.4	20.5	47.7	0.4
	여자	100.0	500	26.9	18.5	54.4	0.2
나이	10대	100.0	99	21.1	20.0	57.9	1.0
	20대	100.0	212	21.4	21.8	56.8	0.0
	30대	100.0	241	23.1	17.5	59.3	0.0
	40대	100.0	207	31.8	24.0	43.1	1.1
	50대	100.0	122	43.1	14.0	42.9	0.0
	60대	100.0	96	46.3	16.5	37.2	0.0
	70대	100.0	23	30.4	17.4	52.2	0.0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122	44.8	20.0	35.2	0.0
	중졸이하	100.0	129	32.1	22.9	45.0	0.0
	고졸이하	100.0	369	29.0	17.6	52.5	0.9
	대학이상	100.0	371	23.7	19.9	56.3	0.0
전체		100.0	1000	29.2	19.5	51.0	0.3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2%가 “심한 학대”로, 45.3%가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36.0%, 여자가 36.3%가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가 53.4%, 대학 이상이 28.1%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IV-20).

<표 IV-20>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화낸다

		합계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성별	남자	100.0	500	36.0	20.3	43.3	0.4
	여자	100.0	500	36.3	16.4	47.2	0.0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122	53.4	12.8	33.8	0.0
	중졸이하	100.0	129	42.6	19.0	38.3	0.0
	고졸이하	100.0	369	37.1	19.6	42.8	0.5
	대학이상	100.0	371	28.1	18.9	53.1	0.0
전체		100.0	1000	36.2	18.4	45.3	0.2

이상의 정서적학대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적학대 상황을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노인 자신이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것에 더 민감하다고 하겠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응답자들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불감증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학대 시 필요한 조치로 응답자의 48.0%가 「쉽터」, 42.5%가 「상담」으로 두 개의 조치가 거의 같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인식되었고, 「신고」는 6.5%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변수들과의 교차분석결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고, 신고에 있어서 각 변수별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10%미만인데 비해 연령변수에서는 10대 응답자와 70대 응답자가 각각 16.7%, 13.0%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10대는 사춘기로, 70대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두 세대가 모두 정서적 측면에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 학대상황을 사회적 문제해결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표 IV-21).

<표 IV-21> 노인 정서적 학대시 필요한 것

		합계		노인 정서적 학대시 필요한 것				
		%	응답자 수	쉽터	상담	신고	경제적 도움	모르겠다
				%	%	%	%	%
나이	10대	100.0	99	42.0	40.3	16.7	0.0	1.0
	20대	100.0	212	44.1	48.8	5.2	0.0	1.9
	30대	100.0	241	50.0	45.4	3.9	0.0	0.8
	40대	100.0	207	50.9	40.1	5.3	0.0	3.7
	50대	100.0	122	50.0	38.6	4.6	0.0	6.8
	60대	100.0	96	51.3	33.4	9.3	1.0	4.9
	70대	100.0	23	39.1	43.5	13.0	0.0	4.3
전체		100.0	1000	48.0	42.5	6.5	0.1	2.9

### ③ 언어적학대

언어적학대에 제시된 3가지 상황에서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를 응답자의 90.1%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4.2%가 “학대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2>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합계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성별	남자	100.0	500	91.9	4.9	3.1	0.2
	여자	100.0	500	88.2	6.4	5.4	0.0
나이	10대	100.0	99	88.2	7.4	4.5	0.0
	20대	100.0	212	93.9	4.8	1.3	0.0
	30대	100.0	241	88.7	7.3	4.1	0.0
	40대	100.0	207	88.4	5.1	6.1	0.5
	50대	100.0	122	93.4	3.3	3.3	0.0
	60대	100.0	96	88.2	6.9	4.9	0.0
	70대	100.0	23	82.6	0.0	17.4	0.0
직업	전문직	100.0	61	91.5	8.5	0.0	0.0
	관리직	100.0	22	84.1	15.9	0.0	0.0
	사무직	100.0	151	92.5	3.4	4.1	0.0
	판매서비스직	100.0	133	93.4	3.8	2.8	0.0
	생산직	100.0	45	87.0	10.8	2.2	0.0
	기타	100.0	579	88.8	5.6	5.4	0.2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93.1	5.6	0.6	0.7
	살고 있지 않다	100.0	862	89.6	5.6	4.8	0.0
동거가족	1대	100.0	122	91.3	4.3	4.4	0.0
	2대	100.0	687	88.7	6.2	4.9	0.1
	3대	100.0	110	93.6	6.4	0.0	0.0
	기타	100.0	81	95.1	1.2	3.7	0.0
전체		100.0	1000	90.1	5.6	4.2	0.1

성별에서는 남자가 91.9%, 여자가 88.2%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령별에서는 50대가 응답자의 93.4%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가장 많이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가장 많이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마도 직업자체가 언어적 폭력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노인과 동거 시 비동거보다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1, 2세대 동거가족 응답자는 같은 비율로 학대가 아니라고 한 것과 달리 3세대 동거가족 응답자의 모두가 학대로 인식하고 있어 동거하거나 동거가족이 확대되면 언어적학대에 민감해지는 것 같다(표 IV-22).

<표 IV-23>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합계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성별	남자	100.0	500	70.8	14.6	14.1	0.4
	여자	100.0	500	69.9	12.4	17.8	0.0
나이	10대	100.0	99	69.6	15.3	15.1	0.0
	20대	100.0	212	68.2	13.2	18.6	0.0
	30대	100.0	241	71.7	15.3	13.0	0.0
	40대	100.0	207	70.4	14.2	14.9	0.5
	50대	100.0	122	72.3	10.7	16.2	0.8
	60대	100.0	96	73.3	10.7	16.1	0.0
	70대	100.0	23	56.5	8.7	34.8	0.0
전체		100.0	1000	70.3	13.5	16.0	0.2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심하게 하는 말을 한

다」를 응답자의 70.3%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6.0%가 “학대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70.8%, 여자가 69.9%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령별에서는 70대가 응답자의 34.8%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가장 많이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IV-23).

「노인을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한다」를 응답자의 79.8%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1.2%가 “학대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에서는 70대가 응답자의 26.1%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가장 많이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노인과 동거여부에서는 살고 있다가 83.6%, 살고 있지 않다가 79.2%로 함께 노인과 살고 있는 동거세대가 더욱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IV-24).

<표 IV-24> 노인을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한다

		합계		노인을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한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나이	10대	100.0	99	77.2	9.3	12.7	0.8
	20대	100.0	212	77.3	13.7	9.0	0.0
	30대	100.0	241	85.0	7.2	7.8	0.0
	40대	100.0	207	80.8	8.5	10.2	0.5
	50대	100.0	122	75.3	6.1	17.7	0.8
	60대	100.0	96	80.6	6.0	13.5	0.0
	70대	100.0	23	69.6	0.0	26.1	4.3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83.6	6.2	9.4	0.7
	살고 있지 않다	100.0	862	79.2	9.0	11.5	0.3
전체		100.0	1000	79.8	8.6	11.2	0.4

언어적 학대에 대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43.6%가 「쉼터」를, 35.9%가 「상담」을, 17.1%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성과 남성간에는 조치필요에 대해서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로는 70대가 신고보다는 쉼터와 상담을 더 필요한 조치로 답변하였다. 노인과 동거하거나 동거세대가 많을수록 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다. 노인과 살고 있는 응답자가 언어적 학대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다(표 VI-25).

<표 IV-25> 언어적 학대시 필요한 것

		합계		노인 언어적 학대시 필요한 것				
		%	응답자 수	쉼터	상담	신고	경제적 도움	모르겠다
				%	%	%	%	%
나이	10대	100.0	99	36.4	36.1	27.5	0.0	0.0
	20대	100.0	212	37.2	38.6	19.6	0.0	4.7
	30대	100.0	241	50.3	33.3	15.5	0.0	0.8
	40대	100.0	207	46.0	35.6	14.7	0.0	3.7
	50대	100.0	122	46.4	34.3	14.3	0.0	5.0
	60대	100.0	96	38.6	38.1	15.6	1.0	6.7
	70대	100.0	23	47.8	39.1	8.7	0.0	4.3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43.1	33.7	18.2	0.0	5.0
	살고 있지 않다	100.0	862	43.7	36.3	16.9	0.1	3.0
동거 가족	1대	100.0	122	45.3	35.2	13.3	0.8	5.4
	2대	100.0	687	44.6	36.0	16.5	0.0	2.9
	3대	100.0	110	44.1	34.4	18.2	0.0	3.3
	기타	100.0	81	31.8	37.9	26.8	0.0	3.5
전체		100.0	1000	43.6	35.9	17.1	0.1	3.3

#### ④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제시된 3가지 상황에서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는 응답자의 82.3%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9.4%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6>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합계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응답자 수	%	%	%	%
성별	남자	100.0	500	82.6	9.0	8.2	0.2
	여자	100.0	500	82.4	7.1	10.5	0.0
나이	10대	100.0	99	72.7	9.6	17.7	0.0
	20대	100.0	212	82.3	5.9	11.8	0.0
	30대	100.0	241	83.5	10.2	6.3	0.0
	40대	100.0	207	81.9	9.9	7.7	0.5
	50대	100.0	122	86.7	4.1	9.2	0.0
	60대	100.0	96	88.5	4.6	6.9	0.0
	70대	100.0	23	73.9	17.4	8.7	0.0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87.3	6.3	5.7	0.7
	살고 있지 않다	100.0	862	81.7	8.3	10.0	0.0
동거 가족	1대	100.0	122	82.4	10.5	7.1	0.0
	2대	100.0	687	80.5	8.8	10.6	0.1
	3대	100.0	110	90.1	4.6	5.3	0.0
	기타	100.0	81	89.2	3.1	7.6	0.0
전체		100.0	1000	82.5	8.0	9.4	0.1

성별에서 여자가 10.5%, 남자가 8.2%로 여자가 남자보다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10대가 17.7%, 20대가 11.8%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노인과 동거여부에 따른 학대인식을 보면, 노인 앞에서 물건을 던지는 상황을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동거하는 응답자의 2배에 이르고 있다. 3세대 동거가족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VI-26).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는 응답자의 96.4%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6%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7>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합계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성별	남자	100.0	500	96.3	2.2	1.2	0.2
	여자	100.0	500	96.4	1.6	2.0	0.0
나이	10대	100.0	99	93.2	4.8	2.0	0.0
	20대	100.0	212	96.1	1.5	2.4	0.0
	30대	100.0	241	96.8	1.9	1.3	0.0
	40대	100.0	207	97.7	1.8	0.0	0.5
	50대	100.0	122	95.1	2.5	2.5	0.0
	60대	100.0	96	97.9	0.0	2.1	0.0
	70대	100.0	23	95.7	0.0	4.3	0.0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95.9	2.7	0.7	0.7
	살고 있지 않다	100.0	862	96.4	1.8	1.8	0.0
동거 가족	1대	100.0	122	97.3	2.7	0.0	0.0
	2대	100.0	687	95.9	1.9	2.0	0.1
	3대	100.0	110	97.3	2.7	.0	0.0
	기타	100.0	81	97.3	0.0	2.7	0.0
전체		100.0	1000	96.4	1.9	1.6	0.1

성별에서 여자가 2.0%, 남자가 1.2%로 여자가 남자보다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70대가 4.3%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노인과 동거여부에 따른 학대인식을 보면,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1.8%, 동거하는 응답자가 0.7%로 동거하는 응답자가 보다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동거세대가 3세대인 경우에 다른 집단보다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경우를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VI-27).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98.3%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0.8%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8>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합계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성별	남자	100.0	500	98.4	0.9	0.5	0.2
	여자	100.0	500	98.2	0.6	1.2	0.0
나이	10대	100.0	99	95.6	2.4	2.0	0.0
	20대	100.0	212	98.0	1.5	0.5	0.0
	30대	100.0	241	99.0	0.4	0.5	0.0
	40대	100.0	207	99.0	0.0	0.5	0.5
	50대	100.0	122	98.4	0.8	0.8	0.0
	60대	100.0	96	99.0	0.0	1.0	0.0
	70대	100.0	23	95.7	0.0	4.3	0.0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98.6	0.7	0.0	0.7
	살고 있지 않다	100.0	862	98.3	0.8	1.0	0.0
전체		100.0	1000	98.3	0.8	0.8	0.1

성별에서 여자가 1.2%, 남자가 0.5%로 여자가 남자보다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70대가 4.3%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노인과 동거여부에 따른 학대인식을 보면,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1.0%, 동거하는 응답자가 0.0%로 동거하는 응답자가 보다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표 VI-28).

이상에서 볼 때 신체적학대는 학대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학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보면 노인을 밀거나 때리거나 하는 노인 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행위는 다른 학대상황에 비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학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학대가 학대유형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학대로 인식되는 유형이라 하겠다.

신체적 학대 시 필요한 조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7.5%)이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리고 「쉼터」(26.2%), 「상담」(14.5%)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신체적 학대를 다른 변수와 교차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동거여부, 동거가족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⑤ 경제적학대

경제적학대로 제시된 3가지 상황에서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64.9%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2.7%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서 여자가 23.1%, 남자가 22.4%로 여자가 남자보다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노인과 동거여부에 따른 학대인식을 보면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22.3%, 동거하는 응답자가 22.8%로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IV-29).

<표 IV-29>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합계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성별	남자	100.0	500	64.9	12.2	22.4	0.6
	여자	100.0	500	64.8	11.5	23.1	0.6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68.4	7.8	22.3	1.4
	살고 있지않다	100.0	862	64.3	12.5	22.8	0.4
전체		100.0	1000	64.9	11.8	22.7	0.6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노인소득을 가로챈다」는 응답자의 83.2%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9.5%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초졸 이하가 13.4%, 대학이상이 9.0%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학대가 아니라”고 더 인식하고 있었고, 동거가족에서 1세대는 4.5%, 3대는 10.7%로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학대가 아니라”고 더 인식하고 있었다(표 IV-30).

<표 IV-30>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노인소득을 가로챈다

		합계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노인소득을 가로챈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교육수준	초졸이하	100.0	122	80.1	6.5	13.4	0.0
	중졸이하	100.0	129	81.1	7.8	11.1	0.0
	고졸이하	100.0	369	82.3	9.2	8.2	0.3
	대학이상	100.0	371	85.8	5.2	9.0	0.0
동거 가족	1대	100.0	122	85.8	9.7	4.5	0.0
	2대	100.0	687	82.4	7.1	10.3	0.1
	3대	100.0	110	84.9	4.4	10.7	0.0
	기타	100.0	81	82.8	8.5	8.7	0.0
전체		100.0	1000	83.2	7.2	9.5	0.1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 등의 명의를 변경한다」는 응답자의 77.7%가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3.1%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31>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 등의 명의를 변경한다.

		합계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 등의 명의를 변경한다			
		%	응답자 수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모르겠다
				%	%	%	%
노인과 동거여부	살고 있다	100.0	138	78.5	6.5	14.3	0.7
	살고 있지 않다	100.0	862	77.6	9.3	12.9	0.1
동거 가족	1대	100.0	122	80.7	9.0	10.3	0.0
	2대	100.0	687	76.1	9.4	14.2	0.3
	3대	100.0	110	79.4	6.4	14.3	0.0
	기타	100.0	81	85.3	8.3	6.4	0.0
전체		100.0	1000	77.7	8.9	13.1	0.2

노인과 동거여부에서 “함께 살고 있다”가 14.3%, “살고 있지 않다”가 12.9%로 함께 살고 있는 쪽이 오히려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편이 높았고, 동거가족에서 1대는 10.3%, 3대는 14.3%로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편이 높았다(표 IV-31).

이상에서 볼 때 경제적학대 상황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제적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노인과 함께 살고 있거나 동거세대가 많은 경우가 동거세대가 적은 세대보다 오히려 경제적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아 노인부양시 노인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학대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로 「신고」라고 응답한 사람이 47.8%이고, 「상담」이 33.3%, 쉽터가 16.5%이고 「경제적 도움」이 2.4%로 학대 특성상 필요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IV-32).

<표 IV-32> 노인 재정적 학대시 필요한 것

	합계		노인 재정적 학대시 필요한 것			
	%	응답자 수	쉽터	상담	신고	모르겠다
			%	%	%	%
전체	100.0	1000	16.5	33.3	47.8	2.4

### 3) 노인과의 동거여부에 따른 학대인식

#### (1) 응답자의 노부모와의 동거비율

노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0.8%(608명)가 “같이 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같이 살고 있다”는 13.8%(138명)였다. 응답자의 25.4%(254명)는 부모님이 안계셨다.

<표 IV-33> 노인(노부모)과 동거여부

노부모와 동거여부	빈도	%
같이 살고 있다	138	13.8
같이 살지 않는다	608	60.8
부모님 안계심	254	25.4
합계	1000	100.0

노부모가 계신 경우에만 국한시켜서 볼 때 성별, 연령별 동거형태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연령의 특성상 50대 이상에서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 직업 등에서도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보여진다. 노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소득수준과 교차분석해 보면,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경제적 빈곤층에서 노인(노부모)과 같이 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표 IV-34). 노인학대의 상황적 요인중 부양자의 부양부담, 경제적 곤란 등이 주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을 모심

으로써 노인학대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34> 소득수준에 따른 노부모와 동거여부

		합계		노인(노부모)과 동거여부		
		%	응답자수	같이 살고 있다	같이 살지 않는다	부모님 안계심
소득 수준	어려움 없다	100.0	390	13.4	66.0	20.6
	약간 어렵다	100.0	420	14.3	60.7	25.0
	많이 어렵다	100.0	121	18.2	46.8	34.9
	그저 그렇다	100.0	56	3.6	58.8	37.6
	모르겠다	100.0	14	14.7	44.5	40.8
전체		100.0	1000	13.8	60.8	25.4

## (2) 노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른 학대인식

응답자의 노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학대인식을 살펴보았다.

제시된 학대상황에 대한 민감도에서 전체적으로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민감도가 높았다(표 IV-35).

방임학대상황에서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동거하는 응답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학대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신체적 학대에서 두드러졌다.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에 대하여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10.0%가 학대가 아니라고 응답, 동거하는 응답자의 5.7%만 학대가 아니라고 응답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IV-35> 노인과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학대인식

(%)

상황	심한 학대이다		심하지 않은 학대이다		학대 아니다	
	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방임 학대 ①	79.2	71.6	10.8	12.4	9.3	15.6
방임 학대 ②	88.8	84.0	6.9	9.4	3.6	6.4
방임 학대 ③	73.0	65.4	13.2	19.5	13.1	14.8
정서적학대①	27.4	29.5	25.2	18.6	46.7	51.7
정서적학대②	28.6	37.4	20.3	18.1	50.5	44.4
정서적학대③	57.7	59.5	19.5	22.1	21.4	18.4
언어적학대①	93.1	89.6	5.6	5.6	0.6	4.8
언어적학대②	69.2	70.5	12.2	13.7	17.1	15.8
언어적학대③	83.6	79.2	6.2	9.0	9.4	11.5
신체적학대①	87.3	81.7	6.3	8.3	5.7	10.0
신체적학대②	95.9	96.4	2.7	1.8	0.7	1.8
신체적학대③	98.6	98.3	0.7	0.8	0.0	1.0
경제적학대①	68.4	64.3	7.8	12.5	22.3	22.8
경제적학대②	83.8	83.1	4.7	7.6	10.8	9.3
경제적학대③	78.5	77.6	6.5	9.3	14.3	12.9

- 방임 학대 ①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둔다
- 방임 학대 ② 아픈 노인에게 약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 방임 학대 ③ 노인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
- 정서적학대①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정서적학대②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 정서적학대③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 언어적학대①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향을 지른다
- 언어적학대②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언어적학대③ 노인을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한다
- 신체적학대①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 신체적학대②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 신체적학대③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 경제적학대①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 경제적학대②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노인소득을 가로챈다
- 경제적학대③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 등의 명의를 변경한다

특히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와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라는 항목에서 동거하는 경우는 “학대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비하여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2% 내외이지만 학대가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상황에서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항목에서는 비동거응답자의 51.7%가 학대가 아니라고 응답한 반면 동거응답자의 경우 46.7%만 학대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거응답자의 50.5%가 학대가 아니라고 응답, 노부모와의 동거 시 세대차이 및 의사소통에서 갈등의 여지가 있음을 짐작케한다.

열거된 학대상황에 대하여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식의 심각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방임에 대해서는 동거응답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비동거응답자가 더 많이 “심한 학대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의 경우 주어진 학대상황이 “심한 학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동거응답자가 더 높아 노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의 노인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 (3) 앞으로 노부모와의 동거의향

#### ① 현재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현재 노부모와 함께 사는 138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노부모와의 동거의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계속 같이 살고 싶다”가 93.0%,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7.0%이었다.

<표 IV-36> 미래 노부모와 동거의향 - 현재 동거중인 경우

미래 노부모와 동거의향	빈도	%
같이 살고 싶다	129	93.0
같이 살고 싶지 않다	10	7.0
합계	138	100.0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소득수준과 관련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득이 낮은 경우 부양자가 부양의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수준을 “많이 어렵다”라고 응답한 경우, 78.1%만이 “미래에도 같이 살고 싶다”라고 응답, “어려움 없다” 92.5%, “약간 어렵다” 98.3%에 비추어 미래 지속적인 동거여부에 회의적인 반응을 엿보였다. 부양자의 경제적인 상태와 노부모부양과의 관계는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도 지적되었으며, 본 조사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양자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 예를 들면 구직,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 노부모 부양자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노인학대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37> 앞으로 노인(노부모)과 동거할 이유

앞으로 노부모와 동거할 이유	빈도	%
부모이기 때문에	87	67.9
자녀양육 때문에	3	2.3
분가할 능력이 안되므로	6	4.4
부모님이 혼자 사실 수 없으므로	18	13.7
장남이라서	6	4.7
아이들 교육에 좋으니까	1	0.8
부모님이 원하셔서	1	0.8
이유없다	3	2.5
모르겠다	4	3.0
합계	129	100.0

앞으로 노부모와 함께 동거할 의향이 있는 129명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보면 “부모이기 때문에” 67.9%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이 혼자 사실 수 없으므로” 13.7%로 아직까지는 사회 전반적으로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IV-37).

그리고, 앞으로 노부모와 동거할 의향이 없는 10명에서 이에 대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20.6%로 가장 높았고, “함께 살아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19.5%이었다(표 IV-38).

<표 IV-38> 앞으로 노인(노부모)과 동거안할 이유

동거 안할 이유	빈도	%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2	20.6
함께 살아보니까 어려운점이 많아서	2	19.5
장남이 아니라서	1	10.3
노인들이 귀찮아서	1	10.3
이유없다	1	10.3
모르겠다	3	29.0
합계	10	100.0

## ② 현재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한편, 노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이 없는 152cases, “이유 없다”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71cases를 제외한 385cases를 동거하지 않는 이유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IV-39).

동거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서로 생활 터전이 달라서” 22.1%, “다른 가족을 모시고 있다” 10.9%, “함께 살아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8.0%,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6.6%이었다.

65세 이상 노부모가 계신 경우라도 “생활터전이 달라서”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134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서”, “세대차이 때문에”, “함께 살아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부모님이 같이 살기 싫어해서”, 혹은 “서로 편하려고” 등 같이 사

는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모시고 있지 않은 경우가 124명으로 32.2%를 차지하였다.

다른 가족이 모시고 있는 경우는 16.6%, “경제적으로 힘들거나”(10.4%) 아니면 “부모님이 따로 사는 형편이 되어서”(3.4%)로 나타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주수발자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노인의 수발부담이 가족에게 지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부모와의 동거가 편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가족에게만 노인부양의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시대적 변화의 반영이기도 하다.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의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완화되어도 기존의 가족공동체는 이제 다시 급속한 노령화를 맞아 주변 지원망의 확충없이 전통적 노인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 나가기에는 한계에 이른 듯하다.

지역사회와 제도적 차원에서 노인부양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그동안 명목적으로나마 유지되어 오던 노부모 공경, 부양의 책임을 “효”이데올로기에만 의존하여 지속하려 한다면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여지만 강화시켜 극단적으로 가족을 와해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며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지원·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노인수발의 대안 마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39> 노인(노부모)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이유

동거하고 있지 않은 이유	빈도	%
같이 사는게 편하지 않아서	124	32.2
다른 가족이 모시고 있어서	66	17.1
생활터전이 달라서	134	34.8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40	10.4
부모님이 따로 살 능력이 되므로	13	3.4
기타	8	2.1
합 계	385	100.0

한편, 앞으로 노부모와의 동거의향에서는 “같이 살고 싶다”가 470명(77.4%)으로 매우 높았으며,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98명(16.1%)이었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 중 눈에 띄는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앞으로 노인(노부모)과 함께 살고 싶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노인(노부모)과 살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 앞으로 노인(노부모)과 같이 살고 싶다고 대답한 경우는 50, 60, 70대 응답자가 10, 20, 30, 40대 응답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표 IV-40). 이는 고령노인 노부모에 대한 현실적인 부양부담과 함께 응답자 스스로 늙어가면서 느끼는 부양의 필요, 부양의 중요성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IV-40> 미래 노부모와 동거의향 -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합계		앞으로 노인(노부모)과 동거의향		
		%	응답자수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
나 이	10대	100.0	71	67.3	24.7	8.0
	20대	100.0	149	78.6	15.5	5.8
	30대	100.0	186	81.5	11.7	6.8
	40대	100.0	125	73.2	18.1	8.6
	50대	100.0	49	80.5	15.3	4.1
	60대	100.0	23	82.2	17.8	0.0
	70대	100.0	6	83.3	16.7	0.0
합 계		100.0	608	77.4	16.1	6.5

이상에서 종합해 보면 앞으로 노부모와의 동거 의향은 “같이 살겠다”가 599명(59.9%)이며, “같이 살지 않겠다”가 107명(10.7%), “모르겠다”가 294명(29.4%)이었다(표 IV-41).

<표 IV-41> 노인과 동거의향(종합)

동거의향	빈도	%
같이 살겠다	599	59.9
같이 살지 않겠다	107	10.7
모르겠다/비해당	294	29.4
합 계	1000	100.0

전체적으로 앞으로 노부모와의 동거의향을 알아본 결과 “같이 살겠다”가 59.9%, “같이 살지 않겠다”가 10.7%, “모르겠다”가 29.4%였다.

<표 IV-42> 노인과 동거의향

		합계		노인과 동거의향(종합)		
		%	응답자수	같이 살겠다	같이 살지 않겠다	모르겠다 비해당
나이	10대	100.0	99	63.6	19.8	16.6
	20대	100.0	212	69.0	12.7	18.3
	30대	100.0	241	76.6	9.8	13.6
	40대	100.0	207	59.1	11.4	29.4
	50대	100.0	122	43.7	6.9	49.4
	60대	100.0	96	25.5	4.2	70.3
	70대	100.0	23	21.7	4.3	73.9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122	37.6	2.3	60.1
	중졸이하	100.0	129	56.3	9.5	34.2
	고졸이하	100.0	369	59.1	13.2	27.8
	대학이상	100.0	371	69.6	11.8	18.7
소득 수준	어려움 없다	100.0	390	60.6	14.4	25.1
	약간 어렵다	100.0	420	64.7	6.9	28.4
	많이 어렵다	100.0	121	50.1	12.5	37.4
	그저그렇다	100.0	56	44.4	11.1	44.5
	모르겠다	100.0	14	44.5	7.4	48.2
전 체		100.0	1000	59.9	10.7	29.4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연령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같이 살겠다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부양에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같이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어려움이 많은 경우 같이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다(표 IV-42).

### (3) 미래 자녀와의 동거의향

앞으로 「자녀와의 동거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가 637명(63.7%)으로 가장 높았고, “살고 싶다”가 325명(32.5%)이었다 (표 IV-43).

<표 IV-43> 미래 자녀와 동거의향

미래자녀와 동거의향	빈도	%
살고 싶다	325	32.5
살고 싶지 않다	637	63.7
자녀없음	20	2.0
모르겠다	18	1.8
합계	1000	100.0

성별과 교육수준과 함께 보았을 때(표 IV-44), 남정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미래 자녀와 같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반응은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 미래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보편적 태도로 여겨진다.

<표 IV-44> 미래 자녀와 동거의향

		합계		미래 자녀와 동거의향			
		%	응답자수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자녀없음	모르겠다
성별	남자	100.0	500	36.8	59.6	1.8	1.8
	여자	100.0	500	28.2	67.8	2.2	1.8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122	44.2	45.3	7.3	3.3
	중졸이하	100.0	129	44.2	55.0	0.8	0.0
	고졸이하	100.0	369	26.1	69.9	1.7	2.3
	대학이상	100.0	371	31.2	66.7	1.0	1.0
전 체		100.0	1000	32.5	63.7	2.0	1.8

성별 차이에서 미래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의 주수발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젊어서는 자녀를, 나이 들면서는 노부모와 손자녀를 돌보는 일에 매여 왔던 여성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혹은 주변에서 목격해왔을 여성 응답자들이 미래 자녀와 동거하지 않음으로써 평생 수발의 고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손자녀 수발 혹은 또 다른 여성(며느리 혹은 딸)의 수발 대상자로부터 자신은 분리시키고 싶은 여성 응답자들의 태도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졸 이상 응답자 층이 더 미래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은 고학력과 관련이 있는 다른 변

인들, 경제력, 직업, 다른 사회적 관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노후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원동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이들은 가족구성원 외에도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지원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녀와 동거할 필요를 못느끼는 층이기도 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노인수발과 관련된 가족 공동체의 역할 축소와 지원망 부족이 노인부양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 악화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 **4) 노인학대의 해결방안에 대한 태도**

##### **(1)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여부**

###### **①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여부**

가정폭력방지법의 인지여부(표 IV-45)에 대해 “들어보았다” 53.5%, “들어보지 않았다” 46.4%로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법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방지법의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여부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남자가 57.6%로 여자의 49.3% 보다 약 8%정도 많이 가정폭력방지법을 인지하고 있다.

연령에 있어서는 10대의 30%, 20대의 50% 정도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는 40%, 70대는 30% 정도가 인지하고 있어 사회적 활동과 언론매체에 대한 접촉 기회가 많은 연령대에서 법의 존재를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법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초졸 이하 40.6%, 중졸 이하 43.2%, 고졸 이하 52.7%, 대학 이상 61.4%) 이 역시 각종 매체접근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이나 소득수준, 노인과의 동거여부 및 동거가족의 세대구성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인지여부를 교차분석해 본 결과 별다른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가정의 54%, 동거하지 않는 가정의 53.4%가 법의 존재를 알고 있어 법의 인지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판별된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 정도만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행된 지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점도 있지만 홍보의 주체나 대상 모두가 가정내의 문제로 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점도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노인의 인권옹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홍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일반인과 학생들을 위해 각급 교육(직장인의 연수와 교과서)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을 다루어야 한다.

둘째, 폭력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① 전국의 11개 노인학대 상담센터의 증설 ②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관련 시설에 포스터 부착 ③ 농어촌 지역의 농협 경로대학과 각종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가정폭력방지법 강좌개설 ④ 대한 노인회 회장단 모임 등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표 IV-45>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여부

		합계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여부		
		%	응답자 수	들어 보았다	들어보지 않았다	모르겠다
				%	%	%
성별	남자	100.0	500	57.6	42.4	0.0
	여자	100.0	500	49.3	50.5	0.2
나이	10대	100.0	99	28.5	71.5	0.0
	20대	100.0	212	49.7	50.3	0.0
	30대	100.0	241	61.9	38.1	0.0
	40대	100.0	207	63.3	36.2	0.5
	50대	100.0	122	62.0	38.0	0.0
	60대	100.0	96	39.5	60.5	0.0
	70대	100.0	23	30.4	69.6	0.0
교육수준	초졸이하	100.0	122	40.6	58.6	0.8
	중졸이하	100.0	129	43.2	56.8	0.0
	고졸이하	100.0	369	52.7	47.3	0.0
	대학이상	100.0	371	61.4	38.6	0.0
전체		100.0	1000	53.5	46.4	0.1

## ② 주변이나 가정에서 학대상황 발생 시 신고여부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난다면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표 IV-46) 74.5%가 “신고하겠다”, 25%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4명중 3명은 신고하고 1명은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인데 이것은 아직도 노인학대의 문제가 범죄가 아닌 가족내부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46> 주변에서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할 의향

		합계		주변에서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할 의향		
		%	응답자수	신고하겠다	신고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	%	%
나이	10대	100.0	99	79.4	20.6	0.0
	20대	100.0	212	79.2	20.4	0.5
	30대	100.0	241	72.4	27.6	0.0
	40대	100.0	207	74.9	24.7	0.4
	50대	100.0	122	77.1	21.4	1.5
	60대	100.0	96	62.7	36.3	1.0
	70대	100.0	23	65.2	34.8	0.0
전체		100.0	1000	74.5	25.0	0.5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시 신고할 의향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성별과 직업, 소득수준, 노인과 동거여부, 동거 가족 등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연령을 (10대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로 3분해 보면 10대와 20대는 80%에 가까운 신고의향율, 30대, 40대, 50대는 70%의 신고의향율, 그리

고 60대, 70대는 60%의 신고의향율을 나타내, 젊을수록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정에서 발생시

「가정 내에서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할 의향」에 대해 “신고하겠다”가 52.8%로 “신고하지 않겠다”의 45.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앞의 질문인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응답자의 21.7%가 가정 내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유연한 인간의 이중적인 면모를 나타낸 현상이다.

<표 IV-47> 가정에서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할 의향

		합계		가정내에서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할 의향			
		%	응답자수	신고하겠다	신고하지 않겠다	절대 학대하는 일 없다	모르겠다
성별	남자	100.0	500	50.7	47.8	0.2	1.3
	여자	100.0	500	54.9	43.5	0.4	1.2
나이	10대	100.0	99	73.0	22.3	0.0	4.7
	20대	100.0	212	59.4	40.2	0.0	0.5
	30대	100.0	241	47.8	50.1	0.8	1.2
	40대	100.0	207	48.1	51.1	0.0	0.8
	50대	100.0	122	50.2	48.2	0.8	0.8
	60대	100.0	96	47.0	53.0	0.0	0.0
	70대	100.0	23	39.1	56.5	0.0	4.3
전체		100.0	1000	52.8	45.7	0.3	1.2

가정 내에서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할 의향과 연령과의 분석에서(표 IV-47) 10대의 신고율이 73.0%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이는 표 IV

-46와 비교해 다른 연령대에서는 평균 20% 정도의 신고의향율이 하락한 반면 10대는 6% 하락율에 그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객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 (2)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심각성

현재 우리 나라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표 IV-46) “매우 심각하다” 10.2%, “심각한 편이다” 47.8%로 58%가 노인학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에 “전혀 심각하지 않다” 0.8%,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29.5%로 30.3%만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더라고 응답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58%)가 “그렇지 않다” (30.3%)보다 2배 가깝게 많아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보편적임을 보여준다.

<표 IV-48> 현재 우리 나라 노인학대의 심각성

노인학대의 심각성	빈도	%
전혀 심각하지 않다	8	0.8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295	29.5
그저 그렇다	70	7.0
심각한 편이다	478	47.8
매우 심각하다	102	10.2
모르겠다	47	4.7
합계	1000	100.0

다만 이 때 응답자가 생각하는 노인학대의 범주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로 예상된다. 즉 본 조사 앞 부분에서 나타난 일반국민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드러났듯이 과격하고 외부로 노출되기 쉬운 신체적학대만 심한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와 같은 신체적학대의 경우 마스크 등을 통하여 센세이셔널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 응답자의 노인학대 심각성 인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 (3)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학대의 원인(표 IV-49)으로는 36가지의 원인이 파악되었고, 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분위기, 마스크에서 배워서, 물질만능주의, 개인(이기)주의 등의 「사회적 문제」(47.3%)였고,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서, 가족내 자녀중심문화 등의 「가정의 문제」(12.5%), 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노인에게 경제력이 없어서, 노인이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등의 「노인의 문제」(7.2%), 가해자의 잘못된 가치관, 성격, 술버릇 등의 「가해자의 문제」(5.7%), 자녀의 책임회피, 무관심 등의 「자녀의 문제」(1.6%) 순이었다.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노인 학대 원인의 62.8%에 이르는 것은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물질만능과 이기주의의 만연에 따른 가족해체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학대가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존속상해에 대한 포괄적 해석과 보다 엄격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 다음 문항에서 보여주듯 자녀(아들과 며느리)가 노인학대 가해자의 대부분(88.2%)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부모를 학대하고도 원인은 사회에 돌리는 현상이다.

이러한 이중성의 극복은 내면적 성숙, 즉 양심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치가 현대 물질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인학대의 원인이 되는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엄격한 집행과 새롭게 효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각급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IV-49>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학대의 원인	빈도	%
노인의 문제	72	7.2
가해자의 문제	57	5.7
사회적 문제	473	47.3
가정의 문제	125	12.5
자녀의 문제	16	1.6
경제적인 어려움	155	15.5
기타	102	10.2
합계	1000	100.0

#### (4) 노인학대의 가해자

일반 국민들은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표 IV-50)으로는 주로 아들(42.9%)과 며느리(39.9%)라는 응답이 많았고 자녀모두라고 한 경우도 5.3%나 되었으며,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1.0%라고 응답하였다.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를 포함한 자녀(88.2%)가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요인은 가정교육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가로 노인이 되어 자식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경우와, 노부모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이 훗날 자신의 부모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자녀 사랑과 부모공경이라는 가정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IV-50> 주로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

주 가해자	빈도	%
배우자	10	1.0
아들	429	42.9
며느리	399	39.9
딸	9	0.9
자녀 모두	53	5.3
기타	100	10.0
<b>합 계</b>	<b>1000</b>	<b>100.0</b>

\* 기타 : 간병인, 형제·자매, 친구, 이웃, 간병인 등

#### (5) 노인학대문제의 주 해결자

노인학대 문제의 주해결자는 가족과 노인 자신이 79.4%를 차지하고 있다(표 IV-51). 이러한 결과는 노인학대의 원인과 학대의 동기가 가족 내의 문제 즉 노인과 자식, 노인과 며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자 역시 가족과 노인 자신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노인학대의 원인은 47.3%가 사회적 문제 때문으로 응답했는데 18.5%만이 정부 또는 사회를 노인학대의 주해결자로 지적했다. 원인이 사회적 문제

라면 해결의 주체도 정부 또는 사회여야 하는데 약 30%가 원인과 해결의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대의 원인은 넓게 본 반면, 해결책은 좁게 바라본 이중성으로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정부와 사회가 노인학대 문제의 원인과 주해결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관점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여 학대 상담 센터의 증설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51> 노인학대 주 해결자

주 해결자	빈도	%
가족	718	71.8
노인자신	76	7.6
정부 또는 사회	185	18.5
아무도 해결못함	3	0.3
모르겠다	18	1.8
합계	1000	100.0

노인학대 주 해결자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표 IV-52)을 살펴보면, 60대와 70대의 25% 이상이 정부 또는 사회가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1세대 동거 가족의 54.9%인 반면 노인학대 문제의 주 해결자가 가족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2대와 3대에서는 70% 이상이었다. 역으로 1세대 동거가족의 28.2%가 정부 또는 사회가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세대, 3세대 동거가족은 17.6%와 16.6%만이 주 해결자가 정부 또는 사회라고 응답했다. 50대 이상은 노인 자신이 노인학대 문제의 주 해결자(50대 18.5%, 60대 11.4%, 70대 17.4%)라고 응답한 반면 10대부터 40대까지는(10대 3.4%, 20대

8.2%, 30대 4.8%, 40대 2.8%) 노인 자신은 학대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문제 해결자를 노인 스스로라고 응답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52> 노인학대 주해결자에 대한 인식

		합계		노인학대 주 해결자				
		%	응답자수	가족	노인 자신	정부·사회	아무도 해결못함	모르겠다
나이	10대	100.0	99	71.2	3.4	24.7	0.0	0.6
	20대	100.0	212	74.4	8.2	16.9	0.5	0.0
	30대	100.0	241	76.8	4.8	16.1	0.0	2.3
	40대	100.0	207	77.4	2.8	17.3	1.0	1.4
	50대	100.0	122	62.7	18.5	16.3	0.0	2.5
	60대	100.0	96	58.9	11.4	25.5	0.0	4.2
	70대	100.0	23	47.8	17.4	26.1	0.0	8.7
동거 가족	1대	100.0	122	54.9	13.5	28.2	0.8	2.5
	2대	100.0	687	74.5	6.1	17.6	0.3	1.5
	3대	100.0	110	70.3	10.4	16.6	0.0	2.7
	기타	100.0	81	75.9	7.2	14.5	0.0	2.5
전체	100.0	1000	71.8	7.6	18.5	0.3	1.8	

이상의 전화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인공경에 대한 태도에서 전체적으로 “공경하지 않는 편이다”가 47.6%로 우리의 전통적인 효사상에 대한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8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노인들은 집안 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83.4%로 가장 높았고,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가 30.6%, 「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가 62.9%, 「노인들은 젊은 세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가 65.8%, 「사람은 나이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가 62.9%, 「노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이다」가 62.5%로 낮게 나타나 노인과 노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집단이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집단에 비해 더욱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라 보여지는 차이와 함께 이 결과는 직접 노인의 생활을 접할 기회가 없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간 교류가 활발할수록, 노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될수록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노인학대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각 유형을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본 결과,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는 것은 신체적학대유형인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가 98.3%,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가 96.4%, 언어적 유형인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향을 지른다」가 90.1%로 매우 높았으며, 정서적학대 유형인 「노인의 친구나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가 29.2%,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가 36.2%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신체적학대는 학대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학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며 유교적 가치관에서 보면 노인을 밀거나 때리거나 하는 노인 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행위는 다른 학대상황에 비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학대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서적학대는 다른 학대영역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는 학대유형으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4.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노인학대의 유형이 정서적 혹은 심리적학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국민의 정서적학대 인지도가 낮은 조사결과는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 세대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5. 노인의 “청결” 보다는 “보살피지 않는 것”과 “식사준비를 못하는 노인을 방치하는 것”을 거의 같은 수의 응답자가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노인의 “청결” 보다는 “식사준비 못하는 노인을 방치하는 것”을 더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결문제 보다는 식사가 생존과 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존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14.7%의 응답자가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6.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나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살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학대에 대해 덜 민감함을 알 수 있다.

7. 「노인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도 앞의 두 가지 상황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학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르다. 학대상황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학대인식이 낮은 이유는 노인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학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양을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학대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연령간의 차이는 고연령 노인이 이런 상황을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학대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감내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8. 정서적학대는 다른 학대영역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는 학대영역으로 일반 국민의 학대인식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다만 냉담이나 무관심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가 있어 다른 상황에 비해 학대인식이 높았다.

9.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 정도만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행된 지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점도 있지만 홍보의 주체나 대상 모두가 가정내의 문제로 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점도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노인의 인권옹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홍보를 위해 각급 학교교육은 물론 전국의 11개 노인학대 상담센터의 증설과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관련 시설에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10. 노인 학대 원인의 62.8%가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그리고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를 포함한 자녀(88.2%)가 많았던 것은 물질만능과 이기주의의 만연에 따라 가족해체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학대의 원인과 가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엄격한 집행과 효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각급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이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정부와 사회가 노인학대 문제의 원인과 주해결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관점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여 학대 상담 센터의 증설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일반면접조사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학대받는 노인을 발굴하기 위한 사전적 검토의 의미로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의 심층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다양한 노인집단의 학대 노출정도를 살펴보는 데 일반면접조사의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노인학대 관련 조사에서 노인학대의 경험 유무를 1차적으로 체크하고 진단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조사방법

#### (1) 일반면접

가능한 한 많은 피학대노인을 만나 노인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곳을 찾아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면접 시간은 평균 30분이었으며, 조사자와 노인 1:1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 (2) 대상자 선정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면접을 한 노인은 총 1,349명이었고, 경로당 이용노인 30.0%,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21.3%, 시설입소노인 17.5%, 공원 및 무료급식 이용노인 13.6%, 기타로 독거노인, 학대문제로 상담을 해 온 노인 등이 17.6%였다.

## 3) 연구문제

일반면접조사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 (1) 학대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
- (2) 학대를 당했다면 어떤 학대상황을 경험했는지?

## 4) 연구의 제한점

조사지역 및 장소 등을 미리 정해놓고 피학대노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 무료급식소, 미인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독거노인방

문, 수급자 노인 방문 등을 통하여 실시한 조사이므로 본 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 기본적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응답자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은 표 IV-53과 같이 총 1,349명의 응답자 중 여자 794명(58.9%), 남자 555명(41.1%)으로 여자 노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 비율과 비교해 보면, 2002년 현재 남자 38.2%, 여자 61.8%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통계청, 2002).

응답자의 연령은 표 IV-53과 같이 65~74세 576명(42.7%), 75~84세 612명(45.4%), 85세 이상 161명(11.9%)으로 75~84세의 노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대별 비율은 65~74세 68.0%, 75~84세 26.8%, 85세 이상 5.1%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2).

<표 IV-5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내 용		빈도	%	내 용		빈도	%
성별	남	555	41.1	배우자와 혼인상태	미혼	15	1.1
	여	794	58.9		기혼	498	36.9
계		1349	100.0		이혼	23	1.7
연령	65~74세	576	42.7		사별	771	57.2
	75~84세	612	45.4		별거	22	1.6
	85세 이상	161	11.9		가출	9	0.7
	계	1349	100.0		동거	8	0.6
학력	서당	39	2.9		기타	3	0.2
	초졸이하	1024	75.9		계	1349	100.0
	중졸이하	128	9.5		부양상태	부양자 없다	221
	고졸이하	91	6.7	배우자		357	26.5
	대학이상	67	5.0	장남/큰며느리		304	22.5
계	1349	100.0	장남 외아들/며느리	125		9.3	
거주지역 (권역별)	수도권시부	439	32.5	딸		91	6.7
	수도권군부	25	1.9	친구/이웃사람	33	2.4	
	충청강원시부	158	11.7	시설 담당자	164	12.2	
	충청강원군부	94	7.0	기타	53	3.9	
	영남시부	312	23.1	계	1348	100.0	
	영남군부	133	9.9	부양자와 친밀관계	좋은 편이다	914	81.2
	호남시부	102	7.6		그저 그렇다	167	14.8
	호남군부	86	6.4		나쁜 편이다	44	3.9
	계	1349	100.0	계	1125	100.0	
	거주지역 (도농별)	도시	1011	74.9	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648
농촌		338	25.1	그저 그렇다		279	20.7
계		1349	100.0	불만족스럽다		418	31.1
면접장소	노인복지관	288	21.3	계	1345	100.0	
	경로당	405	30.0	소득생활 만족도	전혀 어려움없다	389	29.0
	공원	183	13.6		약간 어렵다	439	32.7
	수용시설	236	17.5		매우 어렵다	345	25.7
	기타(제가)	237	17.6		시설거주	170	12.7
	계	1349	100.0		계	1343	100.0
거주지 형태 (제가*)	자가**	708	64.6	건강상태	건강하다	405	30.0
	전세	169	15.4		그저 그렇다	88	6.5
	월세	44	4.0		건강하지 않다	855	63.4
	사글세	26	2.4	계	1348	100.0	
	임대주택	126	11.5	지병여부	있다	775	57.4
	기타	23	2.1		없다	574	42.6
	계	1096	100.0		계	1349	100.0
	거주지 형태 (시설)	무료시설	216	85.4	* 제가 : 본 조사 응답자중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는 노인을 말하며, 독거노인, 수급권자, 경로당복지관·무료급식소 이용노인들이 속함 ** 자가 : 제가 노인 중에서 전세나 월세가 아닌 본인 또는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함.		
실비시설		35	13.8				
유료시설		2	0.8				
계	253	100.0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연령대별 비율에 비하여 일반면접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가 고령중기 이상의 노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설계시 고령 전기, 중기, 후기 각 연령대별 응답자수를 동일하게 확보하려는 연구진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고령후기노인집단이 적었던 이유는 복지관, 경로당, 무료 급식소 등과 같은 면접장소에 이들 노인집단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고, 또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력 약화, 의사전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표 IV-53의 면접장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65% 이상의 응답자가 집이나 시설 이외의 외부공간에서 조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나 75세 이상 중기고령인구도 일정한 외부활동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 수준은 표 IV-53과 같이 초졸 이하 1,063명(78.8%), 중졸 이하 128명(9.5%), 고졸 이하 91명(6.7%), 대학 이상 67명(5.0%)으로 초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성별로 분류하면, 여자 노인은 초졸 이하가 90.9%로 대다수가 저학력자인 반면, 남자 노인은 초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61.5%로 여자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 수준을 보였다.

한편,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육정도별 비율은 무학 44.3%, 초졸 33.8%, 중졸 8.4%, 고졸 8.0%, 대학이상 5.4%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2).

## 2) 조사지역

조사지역은 지역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하여 수도권, 충청·강원, 영남, 호남 등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각 권역별로 시 단위와 군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각 지역에서의 쿼터를 지정하였다.

이를 각 권역별로 살펴보면 표 IV-53과 같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464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34.3%로 영남 445명(33.0%)과 더불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충청·강원 252명(18.7%), 호남 188명(13.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도농으로 구분하면 도시 1,011명(74.9%), 농촌 338명(25.1%)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각 권역별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서울·인천·경기 35.3%, 충청·강원 17.4%, 영남 29.5%, 호남 17.8%(제주 포함)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2).

조사지역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영남 37.8%, 수도권 33.0%, 충청강원 17.7%, 호남 11.5% 등 영남과 수도권에서 조사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여자 노인은 수도권 35.4%, 영남 29.6%, 충청·강원 19.4%, 호남 15.6% 등 역시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조사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사지역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는 영남 34.5%, 수도권 34.2%, 충청·강원 20.7%, 호남 10.6% 등 영남과 수도권에서 조사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75~84세는 수도권 34.8%, 영남 30.6%, 충청·강원 17.5%, 호남 17.2% 등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조사된 경우가 가장 많

았으며, 85세 이상은 영남 36.6%, 수도권 33.5%, 충청·강원 16.1%, 호남13.7% 등 영남과 수도권에서 조사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3) 면접장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사는 조사결과를 일반화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 어떤 식의 학대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학대 노인이 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다니며 면접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면접장소를 살펴보면, 표 IV-53과 같이 경로당 405명(30.0%), 노인복지관 288명(21.3%), 재가노인 237명(17.6%), 수용시설 236명(17.5%), 공원 183명(13.6%)의 순이었다.

특히, 재가노인에 대한 면접은 최근 1년간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고, 수용시설에서의 면접은 전반적으로 시설 입소 전 1년 간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면접장소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경로당 31.7%, 노인복지관 27.4%, 공원 22.3% 등 지역사회내의 이용시설 등에서 면접한 경우가 많았고, 여자 노인은 경로당 28.8%, 수용시설 23.3%, 재가 23.3%, 노인복지관 17.1% 등 지역사회내의 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수용시설에서의 면접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남자 노인에 비해 여자 노인의 평균수명이 높고 건강 상태가 낮아 여자 노인의 생활시설 입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더불어 사회적 활동 범위가 전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접장소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는 노인복지관 28.6%, 경로당 24.7%, 기타 20.8% 등 지역사회내의 이용시설 등에서 면접한 경우가 많았고, 75~84세는 경로당 33.8%, 노인복지관 17.6%, 시설 17.6%, 기타 16.7% 등 지역사회내의 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시설에서의 면접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85세 이상은 시설 36.6%, 경로당 34.8%, 공원 9.9% 등 생활시설에서 면접한 경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낮은 연령대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비교적 활동적으로 생활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면, 고령일수록 사회적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거주지 형태**

재가 응답자의 거주지 형태는 표 IV-53과 같이 전체 1,096명중 자기 집인 경우 708명(64.6%), 전세 169명(15.4%), 임대주택 126명(11.5%), 월세 44명(4.0%), 사글세 26명(2.4%)의 순으로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생활시설 응답자의 거주지 형태는 전체 253명중 무료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216명(85.4%), 실비시설 35명(13.8%), 유료시설 2명(0.8%)의 순으로 무료시설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대부분 이었다.

## 5) 배우자와의 혼인상태

배우자와의 혼인상태는 표 IV-53과 같이 사별의 경우가 771명(57.2%)으로 가장 많았고, 함께 사는 경우가 498명(36.9%), 이혼 23명(1.7%), 별거 22명(1.6%), 미혼 15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배우자와 혼인상태 비율은 유배우자 52%, 사별 47%, 이혼 0.7%, 미혼 0.3%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2).

배우자와의 혼인상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기혼 66.1%, 사별 27.0%, 별거 2.5% 등 기혼 상태가 많았고, 여자 노인은 사별 78.2%, 기혼 16.5%, 이혼 1.6%, 미혼 1.5% 등 배우자와의 사별이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남자 노인에 비해 여자 노인의 평균수명이 매우 높고 현 노인 세대의 재혼, 이성교제 등 제한된 사회적 시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의 혼인상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는 기혼 49.3%,

사별 42.2% 등 기혼 상태가 가장 많았고, 75~84세는 사별 65.0%, 기혼 30.2% 등 사별의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85세 이상은 사별 80.7%, 기혼 18.0% 등 사별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당연한 결과를 보였다.

## 6) 부양상태

응답자를 평소에 돌봐주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 부양상태를 살펴본 결과, 표 IV-53과 같이 배우자 357명(26.5%), 장남·큰며느리 304명(22.6%), 돌봐주는 사람 없다 221명(16.4%), 시설 담당자 164명(12.2%)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비율을 보면, 3세대 가구의 경우 29.9%, 1세대 가구 28.7%, 2세대 가구 23.9%, 혼자 사는 1인 가구 16.2%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2).

응답자의 부양상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배우자 50.4%, 장남 및 큰며느리 19.0%, 돌봐주는 사람 없다 10.1% 등 배우자가 돌봐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여자 노인은 장남 및 큰며느리 25.1%, 돌봐주는 사람 없다 20.8%, 시설 담당자 16.1% 등 장남 및 큰며느리가 돌봐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남자 노인에 비해 여자 노인의 평균수명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유 배우자율의 차이와 매우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부양상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는 배우자 38.3%, 장남 및 큰며느리 18.3%, 돌봐주는 사람 없다 14.8% 등 배우자가 돌봐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75~84세는 장남 및 큰며느리 24.5%, 배우자 20.4%, 돌봐주는 사람 없다 19.4%, 시설 담당자 11.1% 등 장남 및 큰며느리가 돌봐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85세 이상은 장남 및 큰며느리 30.4%, 시설 담당자 26.1%, 돌봐주는 사람 없다 10.6%, 장남 이외의 아들 및 며느리 30.4% 등 장남 및 큰며느리가 돌봐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전통적으로 장남과 큰며느리에 의해 노인 세대가 부양되어 왔던 사회적 관습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7) 부양자와의 친밀 관계

응답자를 평소에 돌봐주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 부양자와의 친밀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IV-53과 같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수치가 914명(81.2%), “그저 그렇다” 167명(14.9%), “나쁜 편이다” 44명(3.9%) 등으로 조사되어 대부분 부양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부양자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는 피학대에 대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양자와의 친밀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416명(83.7%)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자 노인은 498명(79.3%)이 좋은 편이라

고 응답하여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양자와의 친밀 관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는 398명(81.6%), 75~84세는 397명(80.5%), 85세 이상은 119명(82.6%)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전 연령대에서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8) 생활만족도

응답자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IV-53과 같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648명(48.2%), “그저 그렇다” 279명(20.7%), “불만족스럽다” 418명(31.1%)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응답자의 건강상태, 경제수준,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점에 치중하여 검증된 생활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생활만족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275명(49.7%), 여자 노인은 373명(47.1%)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활만족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는 285명(49.7%), 75~84세는 281명(46.0%), 85세 이상은 82명(51.3%)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낮은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검증된 생활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 9) 소득생활만족도

응답자의 소득에 의한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IV-53과 같이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이 389명(29.0%),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439명(32.7%), “많은 어려움이 있다” 345명(25.7%), “시설거주자” 170명(12.7%)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약 30%정도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응답자중 약 64.6%가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약 50% 이상이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생계의 부담없이 생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계비 부담 비율은 본인·배우자가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32.5%,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각각 45.4%와 22.0%로 총 67.4%가 생활비를 지원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통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2).

소득생활만족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208명(37.6%), 여자 노인은 181명(22.9%)이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여 남자 노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생활만족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는 192명(33.6%), 75~84세는 154명(25.2%), 85세 이상은 43명(26.7%)이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여 낮은 연령대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10) 건강상태

응답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표 IV-53과 같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이 405명(30.0%)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 855명(63.4%)과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대부분의 노인 관련 조사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의 가장 큰 욕구가 건강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236명(42.5%), 여자 노인은 169명(21.3%)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여 남자 노인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는 191명(33.2%), 75~84세는 164명(26.8%), 85세 이상은 50명(31.1%)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여 낮은 연령대에서 건강상태가 높게 나타났다.

## 11) 지병여부

응답자가 오랫동안 앓고 있는 지병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IV-53과 같이 지병이 있는 경우가 775명(57.4%)으로 없는 경우 574명(42.6%) 보다 다소 많았다.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86.7%의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 보건복지사업안내), 이렇듯 통계와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재가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비교적 활동적으로 생활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비중 있게 응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병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268명(48.3%), 여자 노인은 507명(63.9%)이 “지병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 노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병율을 보였다.

지병 여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는 347명(60.2%), 75~84세는 341명(55.7%), 85세 이상은 87명(54.0%)이 “지병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 연령대에서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12) 기능적 독립정도

응답자의 기능적 독립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ADL을 걷기, 식사, 대소변보기,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몸 단장하기 항목으로, IADL은 시장보기, 음식만들기, 빨래·청소하기, 약먹기, 돈관리하기 항목으로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IV-54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혼자서 가능” 87.0%, “도움이 필요” 8.3%, “혼자서 전혀 못하는 경우” 4.7%로 조사되어 응답자 대부분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기능적 독립정도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IV-54와 같이 음식 만들기, 빨래·청소하기, 시장보기 등은 각각 200명(14.8%), 177명(13.1%), 169명(12.5%)이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3% 미만의 「목욕하기」 42명(3.1%), 「돈관리하기」 41명(3.0%), 「견기」 27명(2.0%), 「대소변 보기」 11명(0.8%), 「옷갈아입기」 11명(0.8%), 「몸단장하기」 9명(0.7%), 「약먹기」 9명(0.7%), 「식사하기」 2명(0.1%) 등 다른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음식 만들기」, 「빨래·청소하기」 등을 주로 여성의 기능적 범주로 인식하는 남자 노인들의 생활방식에서 기인된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즉 실제조사를 통해 볼 때 남자 노인의 경우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 시장보기, 음식만들기, 빨래·청소하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보다는 “남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남자 노인들의 사고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가정봉사원과건의 확대 등의 서비스의 확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적 독립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표 IV-54와 같이 「음식 만들기」, 「빨래·청소하기」 등은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른 기능들은 남자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54> 성별에 따른 기능적 독립정도

단위 : 명(%)

기 능		남	여	계
걷기	혼자 가능	479(86.3)	619(78.0)	1098(81.4)
	도움 필요	71(12.8)	153(19.3)	224(16.6)
	전혀 못함	5(0.9)	22(2.8)	27(2.0)
식사	혼자 가능	551(99.3)	773(97.4)	1324(98.1)
	도움 필요	4(0.7)	19(2.4)	23(1.7)
	전혀 못함	-	2(0.3)	2(0.1)
대소변	혼자 가능	543(97.8)	754(95.0)	1297(96.1)
	도움 필요	10(1.8)	31(3.9)	41(3.0)
	전혀 못함	2(0.4)	9(1.1)	11(0.8)
목욕	혼자 가능	522(94.1)	644(81.1)	1166(86.4)
	도움 필요	25(4.5)	116(14.6)	141(10.5)
	전혀 못함	8(1.4)	34(4.3)	42(3.1)
옷입기	혼자 가능	543(97.8)	751(94.6)	1294(95.9)
	도움 필요	11(2.0)	33(4.2)	44(3.3)
	전혀 못함	1(0.2)	10(1.3)	11(0.8)
몸단장	혼자 가능	542(97.7)	756(95.2)	1298(96.2)
	도움 필요	12(2.2)	30(3.8)	42(3.1)
	전혀 못함	1(0.2)	8(1.0)	9(0.7)
시장보기	혼자 가능	426(76.8)	541(68.1)	967(71.7)
	도움 필요	78(14.1)	135(17.0)	213(15.8)
	전혀 못함	51(9.2)	118(14.9)	169(12.5)
음식하기	혼자 가능	374(67.4)	582(73.3)	956(70.9)
	도움 필요	86(15.5)	107(13.5)	193(14.3)
	전혀 못함	95(17.1)	105(13.2)	200(14.8)
빨래청소	혼자 가능	384(69.2)	581(73.2)	965(71.5)
	도움 필요	89(16.0)	118(14.9)	207(15.3)
	전혀 못함	82(14.8)	95(12.0)	177(13.1)
약먹기	혼자 가능	547(98.6)	762(96.0)	1309(97.0)
	도움 필요	7(1.3)	24(3.0)	31(2.3)
	전혀 못함	1(0.2)	8(1.0)	9(0.7)
돈관리	혼자 가능	527(95.0)	705(88.8)	1232(91.3)
	도움 필요	21(3.8)	55(6.9)	76(5.6)
	전혀 못함	7(1.3)	34(4.3)	41(3.0)
합계		555(100.0)	794(100.0)	1349(100.0)

또한, 기능적 독립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IV-55와 같이 「걷기」, 「목욕」, 「몸단장」, 「시장보기」, 「음식 만들기」, 「빨래·청

소하기」, 「돈관리」 등은 낮은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기능적 독립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다른 기능들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IV-55> 연령에 따른 기능적 독립정도

단위 : 명(%)

기 능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계
걷기	혼자가능	507(88.0)	484(79.1)	107(66.5)	1098(81.4)
	도움 필요	62(10.8)	114(18.6)	48(29.8)	224(16.6)
	전혀 못함	7(1.2)	14(2.3)	6(3.7)	27(2.0)
식사	혼자가능	568(98.6)	596(97.4)	160(99.4)	1324(98.1)
	도움 필요	8(1.4)	14(2.3)	1(0.6)	23(1.7)
	전혀 못함	-	2(0.3)	-	2(0.1)
대소변	혼자가능	556(96.5)	587(95.9)	154(95.7)	1297(96.1)
	도움 필요	16(2.8)	18(2.9)	7(4.3)	41(3.0)
	전혀 못함	4(0.7)	7(1.1)	-	11(0.8)
목욕	혼자가능	524(91.0)	530(86.6)	112(69.6)	1166(86.4)
	도움 필요	39(6.8)	63(10.3)	39(24.2)	141(10.5)
	전혀 못함	13(2.3)	19(3.1)	10(6.2)	42(3.1)
옷입기	혼자가능	554(96.2)	589(96.2)	151(93.8)	1294(95.9)
	도움 필요	19(3.3)	17(2.8)	8(5.0)	44(3.3)
	전혀 못함	3(0.5)	6(1.0)	2(1.2)	11(0.8)
몸단장	혼자가능	554(96.2)	595(97.2)	149(92.5)	1298(96.2)
	도움 필요	19(3.3)	12(2.0)	11(6.8)	42(3.1)
	전혀 못함	3(0.5)	5(0.8)	1(0.6)	9(0.7)
시장보기	혼자가능	465(80.7)	425(69.4)	77(47.8)	967(71.7)
	도움 필요	62(10.8)	111(18.1)	40(24.8)	213(15.8)
	전혀 못함	49(8.5)	76(12.4)	44(27.3)	169(12.5)
음식하기	혼자가능	458(79.5)	421(68.8)	77(47.8)	956(70.9)
	도움 필요	66(11.5)	96(15.7)	31(19.3)	193(14.3)
	전혀 못함	52(9.0)	95(15.5)	53(32.9)	200(14.8)
빨래청소	혼자가능	458(79.5)	422(69.0)	85(52.8)	965(71.5)
	도움 필요	64(11.1)	108(17.6)	35(21.7)	207(15.3)
	전혀 못함	54(9.4)	82(13.4)	41(25.5)	177(13.1)
약먹기	혼자가능	564(97.9)	595(97.2)	150(93.2)	1309(97.0)
	도움 필요	10(1.7)	14(2.3)	7(4.3)	31(2.3)
	전혀 못함	2(0.3)	3(0.5)	4(2.5)	9(0.7)
돈관리	혼자가능	547(95.0)	553(90.4)	132(82.0)	1232(91.3)
	도움 필요	19(3.3)	41(6.7)	16(9.9)	76(5.6)
	전혀 못함	10(1.7)	18(2.9)	13(8.1)	41(3.0)
합계		576(100.0)	612(100.0)	161(100.0)	1349(100.0)

본 조사는 표본추출조사가 아니므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교가 가능한 일반 통계에 비추어 보아 본 일반면접 조사 응답자들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고령중기 이후 노인들의 비율이 높았다. 일반 통계에서는 고령중기노인(75~84세) 26.8%, 고령후기노인(85세 이상) 5.1%였으나 본조사에서는 고령중기노인 45.4%, 고령후기노인 11.9%였다. 둘째, 시설거주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시설거주노인은 0.3%인데 비해 본 일반면접조사 응답자들 중 시설거주노인은 18.7%(1,349명 중 253명)였다. 셋째, 사별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2%(771명)가 사별하였으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2002년 기준)에는 47%가 사별하였다. 넷째, 지병이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낮았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4%(775명)가 지병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86.7%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일반면접조사 응답자 집단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다고 여겨지며, 연구설계상 시설거주노인의 비율이 높게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응답자집단의 특성은 조사결과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영향을 측정하지는 않았다.

### **3. 연구문제분석**

#### **2)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경험 유무**

응답자의 학대 경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학대 유형을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마다 발생 가능성이 큰 세 가지의 학대 상황을 제시하고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15개 상황을 모두 물어본 다음 해당되는 경험은 모두 응답 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학대 경험 유무를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임학대를 살펴보면, 표 IV-56과 같이 응답자가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데 방치하는 경우」는 8.6%, 응답자가 「아픈데 약을 안주거나 병원에 안 데려가는 경우」 5.5%, 응답자의 「몸 또는 옷, 주변 환경이 더러워도 방치하는 경우」 4.5%로 조사되었다.

정서적학대는 응답자의 「친지나 친구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7.7%, 응답자가 「의견을 말하면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 12.3%, 응답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 19.9%로 조사되어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언어적학대는 응답자에게 「욕 또는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6.6%, 응답자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말을 하는 경우」 10.5%, 응답자를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 2.1%로 조사되었다.

신체적학대는 응답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경우」가

3.9%, 응답자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경우」 3.1%, 응답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 2.2%로 조사되었다.

경제적학대는 응답자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는 경우」가 5.9%, 응답자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소득을 가로채는 경우」 1.8%, 응답자의 「허락 없이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2%로 조사되었다.

<표 IV-56>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경험 유무

학 대 상 황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방 입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116	8.6	1231	91.4	1347	100
	아픈 노인에게 약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74	5.5	1274	94.5	1348	100
	노인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	61	4.5	1287	95.5	1348	100
정 서 적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104	7.7	1244	92.3	1348	100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 화낸다	166	12.3	1182	87.7	1348	100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268	19.9	1080	80.1	1348	100
언 어 적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89	6.6	1259	93.4	1348	100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141	10.5	1206	89.5	1347	100
	노인을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한다	28	2.1	1319	97.9	1347	100
신 체 적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53	3.9	1293	96.1	1346	100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42	3.1	1304	96.9	1346	100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30	2.2	1316	97.8	1346	100
재 정 적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79	5.9	1267	94.1	1346	100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노인소득을 가로챈다	24	1.8	1322	98.2	1346	100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땅, 전세금) 등의 명의를 변경한다	29	2.2	1316	97.8	1345	100

\* 중복응답 가능

또한, 학대 유형별 응답자의 학대 경험 유무를 성별, 연령별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학대 유형별 비율이 매우 낮아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복수응답에 의한 조사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언급하지 않았다.

### 1) 노인학대의 경험 유무

학대 빈도별 노인학대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표 IV-57과 같이 제시된 5개의 학대유형 중 최소한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노인은 510명(37.8%)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개의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은 227명(전체 대비 16.8%)으로 가장 많았고, 2개의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은 126명(전체 대비 9.3%), 그리고 3개 이상의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은 157명(전체 대비 11.6%)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15개의 학대 상황(도구)을 통해 응답자의 학대 경험 유무를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학대 유형에 관계없이 1개 이상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1개~2개의 학대 경험자가 예상보다 많은 빈도를 보였던 관계로 노인학대 실태를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개 이상의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들에 한하여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오차 범위에서 오는 한계적

측면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노인학대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조사는 심층면접 대상자를 찾아내기 위한 1차 조사인 관계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피학대 노인들을 만나고자 하여 학대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 다녔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층면접 대상자 172명과 3개 이상의 학대경험이 있는 대상자 157명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초기 조사시 1~2개의 학대 경험이 있는 15명의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유형의 학대에서 다양한 학대의 상황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사례 중 10% 내외였으며, 응답자의 90%가 2개 이상의 학대유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7> 학대의 분산분포도

경험한 학대유형수	빈도	%
1개	17	9.9
2개	53	30.8
3개	62	36.0
4개	30	17.5
5개	10	5.8
<b>합계</b>	<b>172</b>	<b>100.0</b>

또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대 빈도별 노인학대 경험 유무는 표 IV-58과 같이 조사되었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배우자와 사별 및 별거인 경우, 부양자와의 친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소득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지병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소간 높은 비율의 학대경험을 보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별 분석은 심층면접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IV-58>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대 빈도별 노인학대 경험 유무

		경험 없음	1개 학대경험	2개 학대경험	3개 이상	계
성별	남	359(64.7)	93(16.8)	52(9.4)	51(9.2)	555(100.0)
	여	480(60.5)	134(16.9)	74(9.3)	106(13.4)	794(100.0)
연령	65-74세	359(62.3)	98(17.0)	50(8.7)	69(12.0)	576(100.0)
	75-84세	383(62.6)	103(16.8)	60(9.8)	66(10.8)	612(100.0)
	85세 이상	97(60.2)	26(16.1)	16(9.9)	22(13.7)	161(100.0)
학력	서당	22(56.4)	10(25.6)	4(10.3)	3(7.7)	39(100.0)
	초졸이하	627(61.2)	173(16.9)	102(10.0)	122(11.9)	1024(100.0)
	중졸이하	83(64.8)	25(19.5)	12(9.4)	8(6.3)	128(100.0)
	고졸이하 대학이상	61(67.0) 46(68.7)	10(11.0) 9(13.4)	5(5.5) 3(4.5)	15(16.5) 9(13.4)	91(100.0) 67(100.0)
거주지 I	수도권	284(61.2)	57(12.3)	46(9.9)	77(16.6)	464(100.0)
	충청강원	159(63.1)	55(21.8)	18(7.1)	20(7.9)	252(100.0)
	영남	302(67.9)	81(18.2)	28(6.3)	34(7.6)	445(100.0)
	호남	94(50.0)	34(18.1)	34(18.1)	26(13.8)	188(100.0)
거주지 II	도시	624(61.7)	162(16.0)	95(9.4)	130(12.9)	1011(100.0)
	농촌	215(63.6)	65(19.2)	31(9.2)	27(8.0)	338(100.0)
면접 장소	노인복지관	158(54.9)	55(19.1)	33(11.5)	42(14.6)	288(100.0)
	경로당	286(70.6)	63(15.6)	38(9.4)	18(4.4)	405(100.0)
	공원	117(63.9)	27(14.8)	20(10.9)	19(10.4)	183(100.0)
	수용시설 재가	137(58.1) 141(59.5)	32(13.6) 50(21.1)	21(8.9) 14(5.9)	46(19.5) 32(13.5)	236(100.0) 237(100.0)
배우자 동거 상태	미혼	14(93.3)	-	-	1(6.7)	15(100.0)
	기혼	330(66.3)	86(17.3)	40(8.0)	42(8.4)	498(100.0)
	이혼	16(69.6)	2(8.7)	1(4.3)	4(17.4)	23(100.0)
	사별	455(59.0)	134(17.4)	78(10.1)	104(13.5)	771(100.0)
	별거	9(40.9)	2(9.1)	6(27.3)	5(22.7)	22(100.0)
	가출	6(66.7)	2(22.2)	-	1(11.1)	9(100.0)
	기타	9(81.8)	1(9.1)	1(9.1)	-	11(100.0)
부양 상태	없다	130(58.8)	33(14.9)	21(9.5)	37(16.7)	221(100.0)
	배우자	234(65.5)	68(19.0)	29(8.1)	26(7.3)	357(100.0)
	장남/큰며느리	190(62.5)	40(13.2)	37(12.2)	37(12.2)	304(100.0)
	장남외아들/며느리	81(64.8)	23(18.4)	10(8.0)	11(8.8)	125(100.0)
	딸	54(59.3)	19(20.9)	10(11.0)	8(8.8)	91(100.0)
	친구/이웃사람	25(75.8)	3(9.1)	1(3.0)	4(12.1)	33(100.0)
	시설 담당자 기타	93(56.7) 31(58.5)	27(16.5) 14(26.4)	17(10.4) 1(1.9)	27(16.5) 7(13.2)	164(100.0) 53(100.0)
부양자 관계	좋은 편이다	616(67.4)	151(16.5)	79(8.6)	68(7.4)	914(100.0)
	그저 그렇다	86(51.5)	37(22.2)	19(11.4)	25(15.0)	167(100.0)
	나쁜 편이다	5(11.4)	6(13.6)	6(13.6)	27(61.4)	44(100.0)
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455(70.2)	92(14.2)	46(7.1)	55(8.5)	648(100.0)
	그저 그렇다	184(65.9)	44(15.8)	30(10.8)	21(7.5)	279(100.0)
	불만족스럽다	196(46.9)	91(21.8)	50(12.0)	81(19.4)	418(100.0)
소득 생활 만족도	전혀 어려움 없다	271(69.7)	52(13.4)	32(8.2)	34(8.7)	389(100.0)
	약간 어려움 있다	292(66.5)	76(17.3)	36(8.2)	35(8.0)	439(100.0)
	많은 어려움 있다	171(49.6)	71(20.6)	42(12.2)	61(17.7)	345(100.0)
	시설거주	102(60.0)	26(15.3)	15(8.8)	27(15.9)	170(100.0)
건강 상태	건강하다	287(70.9)	59(14.6)	29(7.2)	30(7.4)	405(100.0)
	그저 그렇다	57(64.8)	19(21.6)	5(5.7)	7(8.0)	88(100.0)
	안좋은 편이다	494(57.8)	149(17.4)	92(10.8)	120(14.0)	855(100.0)
지병 여부	있다	467(60.3)	128(16.5)	80(10.3)	100(12.9)	775(100.0)
	없다	372(64.8)	99(17.2)	46(8.0)	57(9.9)	574(100.0)
계		839(62.2)	227(16.8)	126(9.3)	157(11.6)	1,349(100.0)

이상의 일반면접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전적 검토의 의미로서 이를 통해 노인학대의 심층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다만, 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등으로 인해 본 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1. 학대 유형별 응답자의 노인학대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5% 내외의 학대 비율을 보였으나, 응답자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적학대는 10.5%, 응답자가 의견을 말하면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와 응답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 등 정서적학대는 각각 12.3%, 19.9%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경험 유무는 복수응답에 의한 조사방법의 한계와 학대의 비율이 매우 낮아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

3. 학대 빈도별 응답자의 노인학대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1개 이상의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1,349명 중 510명(37.8%)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개의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은 227명(16.8%)으로 가장 많았고, 2개의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은 126명(9.3%), 3개 이상의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은 157명(11.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복합적인 학대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학대 경험의 유무와는 별도로

로 학대 경험의 포괄성, 복합성에 좀 더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대 빈도별 노인학대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배우자와 사별 및 별거인 경우, 부양자와의 친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소득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지병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비율로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응답자의 학대 경험 유무를 복수응답으로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학대 유형에 관계없이 1개 이상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1~2개의 학대 경험자가 예상보다 많은 빈도를 보였던 관계로 노인학대 실태를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개 이상의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들에 한하여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정하였다.

# 심층면접조사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연구의 의의

이번 조사의 심층면접 부분은 노인학대가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노인학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학대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인지,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개입수단들을 개발하며, 피학노인의 대응행동 등을 파악함으로써 학대를 경험하였을 때 필요한 지지적 자원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입장에서 직접 전달된 학대의 실태, 원인, 대응행동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노인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적, 실천적 접근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2) 조사방법

#### (1)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일반면접에서 걸러진 심층면접대상자들을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초하여 1:1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면접시간은 평균 50분이었으며,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자와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 (2) 대상자 선정

일반면접과정에서 제시된 학대상황에 세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를 심층면접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일반면접 설문지 10번 문항에서 학대상황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일반면접응답자 1349명 중 839명으로 62.2%에 달하였다. 한 번이라도 제시된 학대상황을 경험한 경우는 510명(37.8%)으로 그 중 한 개의 학대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227명, 두 개의 학대상황을 경험한 경우는 126명으로 피학대경험자의 44.5%, 24.7%에 달하였다. 세 개 이상 학대상황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일반면접응답자 중 157명으로 피학대경험자 중 30.8%였다.

이번 설문조사가 처음 시작될 때, 연구자들은 하나라도 학대상황을 경험한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 분들을 심층면접의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연구설계하였다. 그러나 일반면접조사가 시작되면서 학대상황을 경험한 사례가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높은 비율로 나타나면서, 심층면접대상자 선정 기준을 하나의 학대상황에서 세 개의 학대상황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사 초반 한, 두 개의 학대상황을 경험하였으나 심층면접의 대상자가 된 사례가 15개였다. 이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심층면접대상자는 172명을 일 대 일 심층면접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질문은 아래와 같다.

### 3) 연구문제

심층면접조사는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 노인학대의 실태는 어떠한가?(표 IV-62~69)
- 학대받는 노인들은 학대당할 때 어떤 대응행동을 하는가?(표 IV-70~78)
- 피학대자 노인들이 인식하는 학대의 원인은 무엇인가?(표 IV-79~81)
- 피학대노인들은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망을 알고 있는가?(표 IV-82~86)
- 학대를 당한 결과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표 IV-87~88)

### 4) 연구의 제한점

심층면접조사의 경우는 제한된 여건 하에서 어떤 식의 학대가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학대노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 무료급식소, 미인가 시설,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독거노인방문, 수급자 노인 방문을 통하여 조사한 것으로 본 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다.

## 2. 피학대노인의 일반적 특성

### 1) 응답자의 사회경제학적 관련 변인 분석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성을 보면, 우선 여성이 전체의 65.1%로 다소 높게 응답했으며, 연령은 65세-74세의 고령전기와 75-84세의 고령중기의 노인들이 각각 43%, 약 44% 응답하였다. 대부분이 초졸 이하(약 80%)의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지역은 81%가 도시에서 사시며, 그들의 생활만족도는 64%가 “그저 그렇다” 이하로 응답했다. 다시 말해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노인들이 반수 이상임을 볼 수 있다. 65%의 노인들이 혼자 사시며, 시설에 사시는 분 중에는 입소 전에도 혼자 사신 분이 약 38%, 장남내외랑 사신 분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시설은 미인가시설도 포함하고 있어 자식이 있어도 시설입소가 가능하신 분들이다. 자택에 거주하는 분 중에 평소 도움을 주는 식구들은 거의 없으며(20.3%), 있는 경우는 배우자, 큰며느리, 장남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들과의 사이는 “비교적 좋은 편”(48.2%)이거나 “그저 그렇다”(20.4%)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23.3%, “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37%로 나타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학대노인들은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약 63%로 나타났다(표 IV-59).

<표 IV-59> 피학대노인의 일반적 특성

내 용		빈도	%	내 용		빈도	%	
성별	남	60	34.9	입소전 동거가족	혼자서	20	37.7	
	여	112	65.1		장남내외	14	26.4	
계	172	100.0	배우자		7	13.2		
나이	65~74세	74	43.0		딸 내외	4	7.5	
	75~84세	75	43.6		차남 이하	3	5.7	
	85세 이상	23	13.4		손자녀	2	3.8	
	계	172	100.0		기타	3	5.7	
교육 수준	초졸이하	137	79.6		계	53	100.0	
	중졸이하	12	7.0		평소 돌봐주는 사람	없다	35	20.3
	고졸이하	15	8.7			배우자	32	18.6
	대학이상	8	4.7	큰며느리		22	12.8	
생활 만족도	계	172	100.0	장남		18	10.5	
	매우 만족	11	6.4	딸		11	6.4	
	만족하는 편	51	29.7	차남이하 아들		8	4.7	
	그저 그렇다	24	14.0	작은며느리		6	3.5	
	불만족하는 편	48	27.9	친구·이웃		5	2.9	
매우 불만족	38	22.1	시설담당자	27		15.7		
계	172	100.0	기타	8		4.7		
거주 지역 I	수도권시부	81	47.1	계	172	100.0		
	수도권군부	4	2.3	돌봐주는 사람과의 사이	매우 좋다	15	10.9	
	충청·강원시부	11	6.4		좋은편	66	48.2	
	충청·강원군부	13	7.6		그저 그렇다	28	20.4	
	영남시부	31	18.0		나쁜편	17	12.4	
	영남군부	6	3.5		매우 나쁘다	11	8.0	
	호남시부	16	9.3	계	137	100.0		
	호남군부	10	5.8	소득 생활 만족도	어려움 없다	35	20.3	
계	172	100.0	약간 어려움		40	23.3		
거주 지역 II	도시	139	80.8		많이 어려움	64	37.2	
	농촌	33	19.2	시설거주	33	19.2		
	계	172	100.0	계	172	100.0		
면접 장소	노인복지관	51	29.7	배우자와 혼인상태	사별	111	64.5	
	경로당	19	11.0		함께 산다	49	28.5	
	공원	19	11.0		이혼	5	2.9	
	수용시설	51	29.7		별거	5	2.9	
	기타(제가)	32	18.6		기타	2	1.2	
계	172	100.0	계	172	100.0			
거주 장소	집	119	69.2	질환 여부	있다	108	62.8	
	인가시설	27	15.7		없다	64	37.2	
	비인가시설	26	15.1		계	172	100.0	
	계	172	100.0					

## 2) 응답자의 기능적 독립정도

노인들의 기능적 독립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상적 생활유지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수단적 생활유지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이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ADL을 걷기, 식사, 대소변보기,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몸 단장하기 항목으로, IADL은 시장보기, 음식만들기, 빨래·청소하기, 약먹기, 돈관리하기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유지능력에서 매우 독립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IV-60). 다만, 수단적 생활유지능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시장보기, 음식만들기, 빨래·청소하기 항목에서 “혼자서 전혀 못한다”는 응답이 13-15%로 높게 나타났다. 수단적 생활유지능력에서의 독립성 약화는 그만큼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양자의 부양부담가중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적으로 객관적 상황이 좋지 않은 노인들, 예를 들어 여성, 중기 고령이상의 고연령층, 저학력, 소득생활의 어려움, 지병이 있는 경우 등이 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구적 일상생활유지능력의 저하는 건강, 지병여부, 독립적 생활여부 등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학대유발요소가 될 수 있다.

<표 IV-60> 피학대자의 기능적 독립정도

기 능	혼자서 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 전혀못한다
걷기	81.6	16.4	2.0
식사	98.2	1.7	0.1
대소변보기	96.2	3.0	0.8
목욕하기	86.3	10.6	3.1
옷갈아 입기	95.9	3.3	0.8
몸 단장하기	96.2	3.2	0.7
시장보기	71.5	15.9	<b>12.6</b>
음식만들기	70.9	14.3	<b>14.8</b>
빨래·청소하기	71.6	15.3	<b>13.1</b>
약먹기	97.0	2.3	0.7
돈관리하기	91.2	5.7	3.1
합계 평균	87.0	8.3	4.7

### 3) 응답자 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응답자 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53cases로 전체 응답자의 30.8%를 차지하였다. 시설거주 응답자의 대부분(79.0%)이 무료시설에 거주하였으며, 다른 경우는 미인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였다. 법적으로나, 실제로 자녀나 배우자 등 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인가양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에 들어 온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던 38 건 중 25건은 비공식적 지원체계인 가족, 친·인척, 이웃 등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65.8%). 동사무소, 병원, 경찰서 등 공식적 지원망을 통해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전체 사례의 1/3에 불과하였다. 노인인구를 대

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비공식적 체계가 공식적 체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한 예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설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알아보기보다는 관공서나 복지관 등 공식적지원체계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원하는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표 IV-61).

<표 IV-61> 시설인 경우 들어온 경로

경로	빈도	%
공식적 지원체계	13	34.2
비공식적 지원체계	25	65.8
<b>합계</b>	<b>38</b>	<b>100.0</b>

시설에 들어 온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던 65.8%가 비공식적 지원체계인 가족, 친·인척, 이웃 등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34.2%만이 보건소, 경찰서 등 공식적 지원망을 통해 시설에 입소한 경우이다. 특히 가족에 대한 노인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유교적 가치규범의 영향에 따라 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가족관계 및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의 정도가 한국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제시(조병은, 1990; 김태현 등, 1998)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비공식적 체계가 공식적 체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 연구문제분석

#### 1) 유형별 노인학대실태

일반면접을 통하여 제시된 다섯 개의 학대유형(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열 다섯 개의 학대상황에서 세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심층면접에서는 스물 일곱 개의 학대상황을 제시, 경험이 있는 상황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해당되는 모든 경우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심층면접응답자들이 표시한 학대의 상황은 모두 1,232건이었으며 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피학대노인들의 유형별 학대비율은 정서적학대(37.3%), 방임학대(24.9%), 언어적학대(19.5%), 신체적학대(10.6%), 경제적학대(7.7%) 순으로 나타났다(표 IV-62). 이는 다른 학대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우국희, 2002, 김승용 2003). 요즘 가족관련 연구들을 보면, 어르신네들은 정서적 부양을 경제적 부양보다도 더 원하고 있다고 한다. 즉 그들이 지각하는 가족내의 소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불편함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의 가속화, 세대단절 팽배 등이 어르신네들의 더욱 외롭고 고독한 삶을 가져왔고 이는 자식으로부터의 정서적학대로 연결되기도 한다.

<표 IV-62> 전체 5가지 유형별 학대 비율

방입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24.9 %	37.3 %	19.5 %	10.6 %	7.7 %

N = 1,232

또한 피학대노인 개인이 어떤 학대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피학경험의 복합성과 포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학분산분포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심층면접 응답자 172명은 대체로 2~3가지 유형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63).

한 가지 유형의 학대에서 다양한 학대 상황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사례 중 10% 내외였으며, 응답자의 90%가 2개 이상의 학대유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신체적학대만이 아닌 정서적학대나 언어적학대 등 다른 유형의 학대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대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문제의 복합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결과이다. 학대상황에 노출된 노인은 특정한 유형의 학대만 경험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학대상황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집단이며, 이와 같은 학대의 복합성, 포괄성은 학대의 정도를 심화시키는데도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학대의 특성을 고려한 복합적·통합적 사전예방장치 및 사후처리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V-63> 학대의 분산분포도

경험한 학대유형수	빈도	%
1개	17	9.9
2개	53	30.8
3개	62	36.0
4개	30	17.5
5개	10	5.8
<b>합계</b>	<b>172</b>	<b>100.0</b>

응답자들에게 각 유형에 따른 학대상황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중복응답이 가능했기 때문에 각 학대유형에 따른 총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중복응답 한 경우를 심층면접응답자 총수인 172명으로 나누어 빈도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비율의 합은 100이 되지 않는다. 각 학대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표의 비율은 심층면접응답자 중 해당 학대상황을 경험한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학대상황은 매우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비율이 낮은 경우는 드물게 경험되는 학대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① 방임학대

방임학대는 자기방임과 타인에 의한 방임이 있는데 자기방임의 경우는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노인의 행동이 특징이며 적절한 음식, 물, 의복, 주거, 안전, 개인위생, 약복용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제

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방임부분은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자기방임 부분에 대한 정의가 다른 어느 학대의 정의보다도 애매모호하다는 점과 두 번째는 아직까지 노인학대의 전수조사까지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방임까지 넣는다면 노인학대율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자기방임의 대부분이 국가의 노인복지정책 부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보단계인 이 부분이 부각되면 국가 역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방임학대에서는 「내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데, 나를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는 상황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총 172명 중, 69명이 체크). 그 다음으로는 「자녀나 가족들이 찾아와 주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 순으로 나타났다(68명). 이는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부모를 소외시키거나 돌보지 않는 적극적 방임의 결과일 수도 있으나, 자녀들이 학대에 대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행하는 바가 방임이라는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소극적 방임)일 수도 있다. 소극적 방임을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타인에 의한 방임은 주수발자의 의도적·비의도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

수발자의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이 학대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발자를 대상으로 학대상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대인관계, 가족관계,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일반사회교육프로그램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다면 학대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민감하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64> 방임학대

(N=172)

학 대 내 용	빈도	%
내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데, 나를 혼자 집에 내버려 둔다	69	40.1
자녀나 가족이 찾아오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	68	39.5
아픈 내게 약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57	33.1
내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 둔다	55	31.9
세수나 목욕할 때, 또는 대소변 볼 때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와주지 않는다	36	20.9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	22	12.8

\* 중복응답가능

## ② 정서적학대

정서적학대는 방임학대보다도 응답률이 높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가족들이 내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가 130명으로 거의 30%를 차지한다(표 IV-65). 전국민 대상 전화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서적학대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감안한다면, 주수발자가 정서적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을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발자가 어른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을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서적학대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인학대에 둔감하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정서적학대 뿐 아니라 기타 방임이나 언어적학대까지 복합적으로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수발자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전화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일반국민의 정서에 아직까지는 학대라고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학대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수발자의 부양부담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학대에 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인 개입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65> 정서적학대

(N=172)

학 대 내 용	빈도	%
가족들이 내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130	75.6
내가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98	57.0
가족모임이나 가족회의(의사결정과정)에서 일부러 나를 소외시킨다	78	45.3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나를 불안하게 한다	73	40.7
내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63	36.6
청소나 빨래, 애보기와 같은 하기 싫은 일을 시킨다	17	9.9

\* 중복응답가능

### ③ 언어적학대

정서적학대, 방임학대에 이어 언어적학대의 순으로 응답자 많았다.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가 80명이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66). 이 또한 방임학대, 정서적학대와 마찬가지로 학대로 여겨지지 않았던 말 실수, 무례함 등이 권력관계에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했을 때는 그것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권력관계론의 입장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전체 사회에서 권위 약화, 지식산

업사회에서 개별 구성원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소멸, 다른 구성원들과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 등을 경험하며 이는 가족관계 내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장으로, 어른으로 모든 집안 일을 총괄하고 결정하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적 환경이 약화됨으로써 가정 내에서 노인의 위치는 아랫세대,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세대와 역전되게 된다. 이제 노인은 결정을 내리는 입장이 아니라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가정 내에서 역전된 권력관계는 특히 주수발자와 수발받는 노인이라는 관계 또한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전환시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자원이 없는 노인에게는 주수발자 혹은 가해자의 의미없는 한 마디가 쌍방향의 의사소통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권력관계에 기초한 학대의 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다 수평적인 가족관계를 위하여, 또는 보다 효과적인 가족내 의사소통을 위한 인식전환 및 교육 프로그램은 무의식적인 노인학대의 가능성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표 IV-66> 언어적학대

(N=172)

학 대 내 용	빈도	%
내 실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80	46.5
내게 욕을 하거나 고향을 지른다	68	39.5
내게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한다	41	23.8
내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30	17.4
나를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했다	21	12.2

\* 중복응답가능

#### ④ 신체적학대

신체적학대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학대이다. 우리의 문화정서상 부모가 아니더라도 소위 어른에 대한 신체적인 가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도 적지 않게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빈도상 직접적 학대보다는 위협에 가까운 신체적학대가 더 큰 문제로 보여진다(47명, 전체 응답자 중 27.3%가 경험). 그러나 “나를 밀어서 넘어뜨린다” 22.1%,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16.9%,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7.0%로 중복응답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후 학대 상황시 대응행동에 따르면 신체적학대시 응답자의 대부분은 그 상황을 우선 일단 피했다고 응답해 신체적학대 상황에 따라 학대받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빠르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응급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학대상황에서의 쉼터의 역할은 일차적으로는 위기상황에서의 격리수용에 따른 안전한 공간 제공의 의미가 강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영구적으로 안전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Group home체제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학대의 특성상 노인의 재활이나 재교육을 통하여 학대상황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장기거주시설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적학대에 따른 응급쉼터의 경우는 기존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학대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대응행동에서 표 IV-70를 참조할 것). 가정으로 돌아가기에는 보복의 두려움이 크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본인에게 가해지는 위험이 너무 클 경우, 이 문제를 가족 외에서 다루어 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 3자, 예를 들어 노인학대상담센터 혹은 파출소, 노인관련 전문기관 등이 신체적학대 등과 같은 위급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표 IV-67> 신체적학대

(N=172)

학 대 내 용	빈도	%
내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47	27.3
나를 밀어서 넘어뜨린다	38	22.1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29	16.9
나를 강제로 방이나 지하실 등에 가둔다	5	2.9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12	7.0

\* 중복응답가능

### ⑤ 경제적학대

다른 학대에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70·80대 노년세대는 대부분이 재산을 자식에게 주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권을 쥐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적학대 또는 착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빈도 95건 중 반 정도가(43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채무·채권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표 IV-68). 이는 수발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금전적 이양은 채무로 보지 않고 조기 상속 혹은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며,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나 정보에 미숙한 약점을 노린 사기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경제적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대한 홍보·교육과 아울러 경제행위에 따른 법적 보호절차,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보증보험, 변호사입회 등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IV-68> 경제적학대

(N=172)

학 대 내 용	빈도	%
내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는다	43	25.0
내 허락 없이 부동산(땅, 전세금)등의 명의를 변경한다	19	11.0
내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소득을 가로챈다	18	10.5
내가 모아놓은 돈이나 보석 등 값나가는 내 물건을 훔친다	13	7.6
내 유언(장)을 마음대로 작성하거나 내 동의없이 수정한다	2	1.2

\* 중복응답가능

## ⑥ 관련변인과의 교차분석

다음은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유형별 학대경험을 본 교차분석표 결과이다.

<표 IV-69> 유형별 학대경험

		합 계		방임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	응답자수					
성별	남	100.0	60	66.7	90.0	50.0	22.0	33.3
	여	100.0	112	59.8	92.9	68.8	35.7	31.3
나이	65-74세	100.0	74	63.5	95.9	68.9	33.8	29.7
	75-84세	100.0	75	57.3	88.0	52.0	29.3	36.0
	85세 이상	100.0	23	73.9	91.3	73.9	27.3	26.1
거주지 유형	도시	100.0	139	60.4	95.0	65.5	31.9	31.7
	농촌	100.0	33	69.7	78.8	48.5	27.3	33.3
혼인 상태	기혼	100.0	49	55.1	87.8	46.9	22.4	42.9
	사별	100.0	111	66.7	94.6	67.6	32.7	27.9
	기타	100.0	12	50.0	83.3	75.0	50.0	25.0
생활 만족도	만족하는편	100.0	62	64.5	85.5	54.8	30.6	35.5
	그저그렇다	100.0	24	66.7	95.8	75.0	29.2	33.3
	불만족하는편	100.0	86	59.3	95.3	64.0	31.8	29.1
건강 상태	건강한편	100.0	33	60.6	87.9	63.6	24.2	42.4
	그저그렇다	100.0	9	55.6	66.7	44.4	33.3	11.1
	안좋은편	100.0	130	63.1	94.6	63.1	32.6	30.8
지병 여부	있다	100.0	108	63.9	94.4	61.1	29.6	33.3
	없다	100.0	64	59.4	87.5	64.1	33.3	29.7
소득 생활 만족도	어려움 없다	100.0	35	62.9	94.3	60.0	28.6	45.7
	어려움 있다	100.0	40	57.5	82.5	52.5	22.5	22.5
	어려움 많다	100.0	64	67.2	100.0	73.4	33.3	31.3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137	62.8	92.0	62.8	30.9	29.2
	중졸이하	100.0	12	66.7	83.3	50.0	25.0	50.0
	고졸이하	100.0	15	66.7	93.3	60.0	40.0	46.7
	대학이상	100.0	8	37.5	100.0	75.0	25.0	25.0
전 체		100.0	172	62.2	91.9	62.2	31.0	32.0

성별 학대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방임학대와 경제적학대가 여성노인보다 많았고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학대의 경우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높았다. 피학노인 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두 배 가까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여성노인의 일반적 특성, 오랜 여명, 상대적으로 나쁜 건강상태, 취약한 경제적 상황, 가부장적 가족구조 내에서의 억압적인 위치 등을 고려해 본다면 비록 본 연구에서 여성변수만의 특성을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여성노인이 노인학대의 취약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추론하기 어렵지 않다.

경제적인 경우는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이 명의적으로나마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명의로나마 집이 혹은 다른 재산이 남성노인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여도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면 경제적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조차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기혼보다는 사별인 경우가 많았다. 전체노인의 유배우율을 참고해보면 65세 이상 사별인 경우 2/3 이상이 여성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도 여성노인이 노인학대에 매우 취약한 집단임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하겠다.

65세에서 74세 이하인 경우는 정서적, 신체적학대를, 75~84세 이하는

경제적학대를, 85세 이상은 방임학대와 언어적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도농간의 학대경험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도시에 사는 노인들이 농촌보다는 전반적으로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방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농촌노인이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가 불만족한 경우, 신체적 학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피학대노인의 경우 지병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지병이 있는 경우 해당노인의 상황이 어려운 점, 지병으로 인한 수발의 부담,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학대의 상황적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학대에 노출된 확률이 높다는 이전 문헌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병이 있는 경우는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방임학대는 가장 낮게 경험하고 반면 정서적학대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표현 혹은 의사소통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방임의 잠재적 요인들이 사전에 완화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2) 피학대노인의 대응행동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였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대응행동은 학대유형을 막론하고 “그냥 참았다”이다(표 IV-70). 방임학대의 경우 전체 해당 응답자의 92%가 “그냥 참았다”로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는 “주

위에 의논·도움을 청하였다” 뿐으로 다른 대응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서적학대의 경우도 대부분은 그냥 참으며(87.5%), 언어적학대의 경우는 “같이 싸웠다”(11.1%)는 대응행동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표 IV-71부터 표 IV-75까지를 참조하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노인들, 경제적으로 소득생활만족도가 낮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여성이면서, 사별, 지병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특히 참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참는 경우의 이유로는 “가족이기 때문에”가 대부분이었지만(표 IV-76) 객관적 상황이 열악한 노인일수록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열악한 상황이 노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학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이 열악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이 보다 조밀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기존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 이들이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망 접근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이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주변에 있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의 몸이 불편한 여성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혹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마련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노인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을 위한 역량강화(Empowerment)를 통하여 대인관계향상, 자존감 고양 혹은 삶의 질 유지 등과 같은 측면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학대일 경우 더욱 더 속수무책으로 그냥 참았으며(94.5%), 신체적학대의 경우는 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를 피하는” 소극적인 대응행동을 보여주고 있다(14.5%). 이는 신체적학대의 경우 직접적으로 본인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리를 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학대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대상황에서 임시라도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IV-70> 학대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대응행동

대응 행동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그냥 참았다	91.7	87.5	76.9	70.9	94.5
자리를 피했다	-	8.7	9.2	14.5	-
주위에 의논·도움을 요청했다	8.3	2.5	2.8	7.3	-
같이 싸웠다	-	1.3	11.1	7.3	-
합계	100.0	100.0	100.0	100.0	94.5

(1) 학대유형에 따라 살펴본 관련변수별 대응행동

각각의 학대유형에 따른 응답자들의 대응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방임학대시 대응행동

심층면접 대상자 중 방임의 여섯 가지 학대 상황 중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은 91명이었다.

방임학대시 피학대자의 관련변인들에 따른 대응행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 농촌 관계없이 그냥 참았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농촌에 사는 노인들에 비해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주위와 의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시 9.9%, 농촌 0.0%, 표 IV-71 참조). 기혼노인이 사별노인보다 더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에 만족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주위와 의논하는 경우가 높았다. 혼인유형에 따른 차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학대노인이 학대에 더욱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생활만족도가 높은 노인의 경우가 주위와 의논하는 경우가 높았던 것은 피학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예를 들면 도시의 여러가지 서비스 시설이라든지 혹은 높은 생활만족도에 따른 서비스접근성의 증대와 같은 이유로 조금 더 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참는 것으로 나타나 해석상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방임학대시 대응행동에 관한 관련변인과의 연관성에서는 어떤 일관된 유형을 발견하기보다는 가능한 연관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이후 다른 유형에서 보여지는 대응행동양식과 추후 계속될 연구에서 피학노인의 대응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좀 더 깊은 상관관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71> 방임학대시 대응행동

		합계		방임학대시 대응행동	
		%	응답자수	그냥 참았다	주위에 의논했다
거주지 유형	도시	100.0	71	90.1	9.9
	농촌	100.0	20	100.0	0.0
혼인 상태	기혼	100.0	23	100.0	0.0
	사별	100.0	64	89.1	10.9
	기타	100.0	4	100.0	0.0
생활 만족도	만족하는편	100.0	37	86.5	13.5
	그저그렇다	100.0	13	92.3	7.7
	불만족하는편	100.0	41	97.6	2.4
소득 생활 만족도	어려움 없다	100.0	21	95.2	4.8
	어려움 있다	100.0	19	89.5	10.5
	어려움 많다	100.0	33	97.0	3.0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73	90.4	9.6
	중졸이하	100.0	5	100.0	0.0
	고졸이하	100.0	10	100.0	0.0
	대학이상	100.0	3	100.0	0.0
전 체		100.0	91	92.3	7.7

② 정서적학대시 대응행동

정서적학대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대응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노인이 그냥 참는 경우가 더 많았고, 미미하지만 남성노인은 같이 싸우기도 하였다(표 IV-72). 농촌에 사는 노인이 도시에 사는

노인보다 더 많이 참았지만, 도시에 사는 노인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같이 싸우는 등 다양한 대응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혼인유형에 따른 차이에서는 대부분이 그냥 참았으나, 특히 사별인 경우 그냥 참는 비율이 혼인상태의 다른 경우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노인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을수록(이 경우에는 배우자)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생활에 불만족일수록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았으며 건강상태가 안좋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았다.

지병이 있으면 다른 어떤 대응행동보다 그냥 참았고, 소득생활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과 그냥 참는다는 비율과의 연관성은 일관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관련변인과 정서적학대를 당했을 때 응답자들의 대응행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노인의 활용 가능한 자원, 경제력, 건강, 지식, 가족 등이 있을수록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것이 노인학대 해결방안의 주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표 IV-72> 정서적학대 시 대응행동

		합계		정서적학대시 대응행동			
		%	응답자수	그냥 참음	도움 요청	자리 피함	같이 싸움
성별	남	100.0	53	83.0	3.8	9.4	3.8
	여	100.0	98	91.8	1.0	7.1	0.0
거주지 유형	도시	100.0	127	87.4	2.4	8.7	1.6
	농촌	100.0	24	95.8	0.0	4.2	0.0
혼인 상태	기혼	100.0	41	82.9	2.4	12.2	2.4
	사별	100.0	100	92.0	2.0	5.0	1.0
	기타	100.0	10	80.0	0.0	20.0	0.0
생활 만족도	만족하는편	100.0	50	82.0	6.0	10.0	2.0
	그저그렇다	100.0	22	90.9	0.0	9.1	0.0
	불만족하는편	100.0	79	92.4	0.0	6.3	1.3
건강 상태	건강한편	100.0	28	82.1	7.1	10.7	0.0
	그저그렇다	100.0	6	66.7	0.0	16.7	16.7
	안좋은편	100.0	117	91.5	0.9	6.8	0.9
지병 여부	있다	100.0	96	92.7	1.0	5.2	1.0
	없다	100.0	55	81.8	3.6	12.7	1.8
소득 생활 만족도	어려움 없다	100.0	33	75.8	6.1	15.2	3.0
	어려움 있다	100.0	32	87.5	0.0	12.5	0.0
	어려움 많다	100.0	61	95.1	0.0	3.3	1.6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121	89.3	1.7	7.4	1.7
	중졸이하	100.0	9	100.0	0.0	0.0	0.0
	고졸이하	100.0	13	84.6	7.7	7.7	0.0
	대학이상	100.0	8	75.0	0.0	25.0	0.0
전체		100.0	151	88.7	2.0	7.9	1.3

③ 언어적학대 시 대응행동

언어적학대 시 피학대자의 관련변인에 따른 대응행동을 보면, 남성노인, 85세 이상 노인, 도시에 사는 노인, 생활만족도가 낮은 노인, 지병이

있는 노인, 소득에 어려움이 많은 노인,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그냥 참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학대유형의 관련변인과의 연관성에서도 드러났듯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열악할수록 학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어적학대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같이 싸운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10.6%). 이는 소위 말싸움이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에 위해를 덜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또 말로써 직접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나 생각된다.

<표 IV-73> 언어적학대 시 대응행동

		합계		언어적학대시 대응행동			
		%	응답자수	그냥 참음	도움 요청	자리 피함	같이 싸움
나이	65-74세	100.0	50	70.0	4.0	14.0	12.0
	75-84세	100.0	37	81.1	0.0	8.1	10.8
	85세 이상	100.0	17	88.2	5.9	0.0	5.9
거주지 유형	도시	100.0	88	78.4	2.3	10.2	9.1
	농촌	100.0	16	68.8	6.3	6.3	18.8
혼인 상태	기혼	100.0	23	69.6	0.0	21.7	8.7
	사별	100.0	72	77.8	4.2	6.9	11.1
	기타	100.0	9	88.9	0.0	0.0	11.1
생활 만족도	만족하는편	100.0	34	64.7	5.9	5.9	23.5
	그저그렇다	100.0	18	77.8	0.0	16.7	5.6
	불만족하는편	100.0	52	84.6	1.9	9.6	3.8
건강 상태	건강한편	100.0	20	70.0	0.0	20.0	10.0
	그저그렇다	100.0	4	50.0	0.0	0.0	50.0
	안좋은편	100.0	80	80.0	3.8	7.5	8.8
지병 여부	있다	100.0	66	83.3	4.5	4.5	7.6
	없다	100.0	38	65.8	0.0	18.4	15.8
전체		100.0	104	76.9	2.9	9.6	10.6

#### ④ 신체적학대 시 대응행동

신체적학대 시의 경우는 여성들은 “그냥 참았다”가 77.5%인 반면 남성노인들은 53.8%는 참았지만 “같이 싸웠다”라고 응답한 남성들도 23.1%로 높게 조사되어 신체적학대에는 강하게 대응하는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연세가 높은 85세 이상 노인, 생활만족도가 높은 노인, 지병이 있는 노인, 건강이 안좋은 노인, 소득이 어려운 노인, 중졸 이하인 노인들이 신체적학대 시 “그냥 참는다”의 응답율이 그렇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IV-74> 신체적학대 시 대응행동

		합계		신체적학대시 행동			
		%	응답자수	그냥 참았다	도움요청	자리 피함	같이 싸움
성별	남	100.0	13	53.8	15.4	7.7	23.1
	여	100.0	40	77.5	5.0	15.0	2.5
나이	65-74세	100.0	25	64.0	16.0	16.0	4.0
	75-84세	100.0	22	77.3	0.0	9.1	13.6
	85세 이상	100.0	6	83.3	0.0	16.7	0.0
혼인 상태	기혼	100.0	11	54.5	9.1	18.2	18.2
	사별	100.0	36	72.2	8.3	13.9	5.6
	기타	100.0	6	100.0	0.0	0.0	0.0
건강 상태	건강한편	100.0	8	50.0	12.5	12.5	25.0
	그저그렇다	100.0	3	66.7	.0	.0	33.3
	안좋은편	100.0	42	76.2	7.1	14.3	2.4
전체		100.0	53	71.7	7.5	13.2	7.5

신체적학대 시 대응행동이 다른 학대유형 보다도 “그냥 참았다”의 비

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도움을 요청(15.4%)하거나 같이 싸움(23.1%)한 경우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체적학대에 대한 피학대자의 공격적 대응을 보여준 것이다. 85세 이상의 노인일수록 “그냥 참는다”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사별한 노인일수록 참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안좋은 편에 속한 노인들이 참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⑤ 경제적학대 시 대응행동

경제적학대는 다른 유형의 대응행동 보다 그냥 참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표 IV-75). 85세 이상은 100%가 그냥 참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촌에 사는 노인일수록 참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피학노인의 지원망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개입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대목이다.

<표 IV-75> 경제적학대 시 대응행동

		합계		경제적학대 시 대처행동	
		%	응답자수	그냥 참았다	다시 주라고 요구
나이	65-74세	100.0	22	86.4	13.6
	75-84세	100.0	26	100.0	0.0
	85세 이상	100.0	6	100.0	0.0
거주지 유형	도시	100.0	43	93.0	7.0
	농촌	100.0	11	100.0	0.0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39	94.9	5.1
	중졸이하	100.0	6	100.0	0.0
	고졸이하	100.0	7	100.0	0.0
	대학이상	100.0	2	50.0	50.0
전 체		100.0	54	94.4	5.6

경제적학대를 받았을 경우 남성노인, 85세 이상 노인, 농촌에 사시는 노인, 생활만족도가 낮은 소득이 어려운 노인들일수록 학대시 “그냥 참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젊은 노인인 경우, 도시에 사는 경우, 또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인 경우 “다시 주라고 요구”한 경우가 높아 연령, 거주지역, 학력 등이 경제적학대를 당했을 때 피학노인의 대응방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학대를 당하였을 때 응답자가 “그냥 참았다”는 이유

각 학대유형에 따른 질문에서 학대시 대응행동을 “그냥 참았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모든 유형에서 “가족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학대의 주된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임을 짐작케 하며 아직도 노인학대의 문제가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의 범주에서 이해되고 접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유형별로 가장 많이 지적한 원인을 세 가지씩 살펴보면, 방임학대의 경우, 가족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달리) 갈 곳이 없어서라는 항목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정서적학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정서적학대와 언어적학대의 경우 위의 세 가지 원인이 그냥 참은 이유를 밝힌 응답자의 60%가량을 차지하였다. 신체적학대의 경우는 “가족이기 때문에”가 28.2%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응하면 더 학대받을까봐” 20.5%, “무서워서” 15.4%, 등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신

체적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경우 이미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대응전략 부재에 따른 자포자기 식의 대응행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학대에 따른 일시적 피난처, 혹은 보복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처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학대의 경우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35.2%,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17.5%, “(달리) 갈 곳이 없어서” 9.6%로 응답하여 다른 학대의 유형과 비슷한 대응행동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제적학대의 경우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하여 학대가 미치는 영향이 장기 지속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그냥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표 IV-76> 학대유형별 “그냥 참았다”의 이유

참은 이유	방입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가족이기 때문	37.0	37.9	37.3	28.2	35.2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11.0	10.7	8.4	5.1	17.5
(달리) 갈 곳이 없어서	13.0	9.3	12.1	12.8	9.6
대응하면 더 학대받을까봐	6.0	6.4	9.7	20.5	7.4
창피해서	7.0	6.4	7.2	15.4	7.0
무서워서	2.0	5.7	7.2	15.4	5.0
다 내 잘못이다	5.0	5.7	8.4	2.6	4.4
기타	19.0	17.9	9.7	-	13.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3) 학대를 당했을 경우 주된 의논 대상자

학대를 경험하였을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하셨느냐는 질문에 주된 의논

대상자로는 “이웃”을 꼽았다(표 IV-77).

특히 방임학대의 경우는 의논대상자가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학대나 언어적학대의 경우에도 50% 이상이 이웃과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노인에게 있어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여기서는 그냥 참는 노인분들에 대한 노인인권, 노인학대관련 지식, 정보, 자기주장훈련, 의식교육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나이 들어 친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사실이다.

<표 IV-77> 유형별에 따라 의논대상자(현재)

현재 의논대상자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이웃	11.1	50.0	33.3	50.0	-
경찰	11.1	25.0	33.3	50.0	-
친구	44.4	-	-	-	-
다른 가족	11.1	25.0	33.3	-	-
친척	11.1	-	-	-	-
전문상담원	11.1	-	-	-	-

#### (4) 또 다시 학대를 당한다면 의논하고 싶은 대상

그러나 노인들은 또 다시 학대를 당한다면 누구와 의논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72명 중 74명, 42.3%가 “누구와도 의논하고 싶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학대재발 시 의논상대를 묻는 질문에는 10개의 예가 주어졌으며 응답자는 주어진 예 외에도 자유롭게 원하는 의논 대상자를 언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여개에 달하는 의논희망대상자가 모아졌으

며, 분석의 편의상 친척을 포함한 가족, 이웃을 포함한 지역사회구성원, 경찰, 보건소, 구청직원등을 포함한 관공서 관련자, 전문상담가 및 성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 등으로 분류하였다.

“누구와도 의논하고 싶지 않다” 외에는 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하였다(표 IV-78).

“말하고 싶지만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응답이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매우 적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학대의 적극적 예방과 개입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 IV-78> 학대를 당했을 때 의논하고 싶은 대상

	빈도	%
가족	29	16.9
지역사회	45	26.2
관공서	1	0.6
전문가	16	9.3
말하고 싶지만 의논할 상대가 없다	2	1.2
의논하고 싶지않다	72	41.8
모르겠다	7	4.0
합계	172	100.0

### 3) 학대의 원인 및 가해자

## (1) 응답자들이 대답한 학대의 원인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학대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주로 가해자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노인과 함께 사는 스트레스 등에서 찾았다(표 IV-79).

학대당한 원인을 유형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방임학대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고(26.2%), 정서적학대는 가해자의 문제(24.7%), 경제적 어려움(18.4%)의 순으로 응답했고,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도 같은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학대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49.1%), 가해자의 문제(21.8%)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 가해자가 학대를 하는 이유를 노인들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가해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문제를 들 수 있고 이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들 수 있겠다. 후자는 피학대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가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피학대자 뿐만 아니라 잠정적 피학대자인 전노인을 위한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의 소득보장문제이다. 전자는 가해자들이 경제적 부담문제 때문에 학대를 할 경우에는 후자가 해결되면 줄어들게 된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문제는 “가해자의 술버릇”이라는 항목을 “학대하는 사람(가해자)의 문제”로 합쳐서 “가해자 개인의 이유”로 학대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해자의 문제로 인하여 학대를 당하는 비율은 조금씩 더 높아진다. 특히 신체적학대의 경우 “가해자개인의 문제로 인한 학대가 52.8%에 이르게 된다. 이 중 13.2 %가 Alcohol과 관련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Alcoholism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문제는 가정 내에서의 노인과 학대에 국한시켜 조망하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관련변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학대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완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노인들이 사용 가능한 지원망을 강화함으로써 학대를 당하였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표 IV-79> 유형별 학대당한 이유

학대 받은 이유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학대하는 사람(가해자)의 문제	21.5	24.7	31.8	39.6	21.8
나(노인)의 문제	7.5	8.9	10.3	9.4	3.6
노인과 함께 사는 스트레스	12.1	13.3	11.2	9.4	1.8
경제적 어려움	26.2	18.4	18.7	7.5	49.1
가해자의 술버릇	-	3.2	6.5	13.2	7.3
성격 차이	6.5	9.5	10.3	7.5	3.6
노인을 공경하지않는 사회분위기	6.5	9.5	3.7	1.9	-
기타	19.7	12.5	7.5	11.5	12.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2) 응답자들이 대답한 가해자

노인학대유형별로 학대가해자를 보면 전반적으로 장남과 맏며느리로 나타났다(표 IV-80). 장남의 경우 경제적학대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 맏며느리의 경우는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순으로, 배우자의 경우는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의 순으로, 딸의 경우는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학대의 경우, 장남 다음으로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많았다. 배우자폭력에 관한 최정혜(2000)의 연구를 참고로 하면, 노부부 폭력에 관한 경우 부부관계의 학대에서 남성노인들과 여성노인들 모두 배우자에게서 주로 언어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노인들이 언어폭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신체 폭력 또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많아 주로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까지도 장남이 노부모를 모시는 비율이 높고, 재산상속도 법적으로 남녀 자녀 동등하게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장남과 재산 상속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 조사결과에서도 장남의 경우 재정적인 착취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중 맏며느리와 딸은 방임학대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정서적학대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80> 유형별로 본 학대가해자

가해자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장남	33.0	37.5	36.1	38.2	43.7
맏며느리	27.5	23.8	23.2	14.6	12.7
배우자	12.9	15.0	17.6	25.5	3.6
딸	13.8	10.6	9.2	5.4	7.2
기타	12.8	13.1	13.9	16.3	32.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유형별 가해자는 주로 가족 내에서 노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연관된다. 아직까지 노인 부양의 주수발자로 여겨지는 장남 내외의 경우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 부양 혹은 부양기대에 대한 현실적 스트레스, 노인과의 접촉빈도 등이 그들을 주된 가해자군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학대유형별로 본 가해자의 동거여부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는 경우보다 학대가 적게 일어났다(표 IV-81). 역시 신체적학대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언어적학대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경제적학대가 제일 높게 그 다음으로는 방임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에서 가해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함께 사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학대의 주된 가해자가 주수발자로 여겨지는 장남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즉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 방임, 정서적, 언어적학대를 더 많이 받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이 자신의 고독, 소외감 등을 방임, 정서적, 언어적학대 상황에 투여한 것으로도 의심해 볼 수 있다. 즉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상황이 경미한 정서적 무관심을 학대로까지 여기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학대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응답율이 높은 것은 경제적학대에 대한 민감도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같이 살

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도, 주수발자도 서로 명확히 구분된 경제활동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경제적 권리를 임의로 주수발자가 대신하는 것에 대해 학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는 낮은 민감도로 해석할 수 있다. 동거 시 노인과 주수발자와의 경제권에 대한 사전 합의, 경제활동에 대한 결정권 보호, 기타 경제활동에 대한 소비자교육 및 지지방안 등은 노인의 경제적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표 IV-82> 유형별로 본 가해자와의 동거여부

가해자와 동거여부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함께 살지 않는다	67.0	63.1	59.3	50.9	72.7
함께 산다	33.0	36.9	40.7	49.1	27.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4)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망 인지여부

##### (1)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여부

가정폭력방지법(1999년 제정)은 그동안 개인의 일,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이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의 남의 가정사가 아닌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행위임을 명시한 것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전환은 가

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인한 불이익과 처벌로 인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과 임시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상담, 치료명령 등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받게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약 75%가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82).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노인학대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또한 노인복지법 안에서 노인학대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노인학대관련법이 진행되어야 한다.

<표 IV-82> 심층면접 응답자의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여부

가정폭력방지법	빈도	%
모른다	129	75.09
안다	443	25.01
합 계	172	100.0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인지여부를 알아봤다(표 IV-83). 남성노인, 고령전기노인, 도시노인,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노인, 고졸 이상인 노인들이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소외되고 고통 당하는 노인을 위한 법적

장치,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노인에게는 오히려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 저학력층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지원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IV-83> 가정폭력방지법 인지 여부

		합계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여부	
		%	응답자수	예	아니오
성별	남	100.0	60	38.3	61.7
	여	100.0	112	17.9	82.1
나이	65-74세	100.0	74	32.4	67.6
	75-84세	100.0	75	24.0	76.0
	85세 이상	100.0	23	4.3	95.7
거주지 유형	도시	100.0	139	28.1	71.9
	농촌	100.0	33	12.1	87.9
소득 생활 만족도	어려움 없다	100.0	35	37.1	62.9
	어려움 있다	100.0	40	25.0	75.0
	어려움 많다	100.0	64	21.9	78.1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0	137	17.5	82.5
	중졸이하	100.0	12	41.7	58.3
	고졸이하	100.0	15	66.7	33.3
	대학이상	100.0	8	50.0	50.0
전 체		100.0	172	25.0	75.0

## (2) 학대상황 재발 시 지원망 이용에 대한 태도

만약 학대상황이 재발한다면 신고하시겠냐는 질문에 80% 가까운 응답자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38명 21.7%만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표 IV-84).

<표 IV-84> 학대 재발 시 신고여부

신고 의향	빈도	%
신고 안하겠다	134	77.9
신고하겠다	38	22.1
합 계	172	100.0

학대 재발생 시 신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남성노인, 고령전기노인, 건강한 노인들이 “신고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IV-85). 즉 젊고 건강한 남성노인들이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IV-85> 학대 재발생시 신고여부

		합계		학대 재발 시 신고여부	
		%	응답자수	예	아니오
성별	남	100.0	60	40.0	60.0
	여	100.0	112	12.5	87.5
나이	65-74세	100.0	74	28.4	71.6
	75-84세	100.0	75	18.7	81.3
	85세 이상	100.0	23	13.0	87.0
건강 상태	건강한 편	100.0	33	39.4	60.6
	그저 그렇다	100.0	9	22.2	77.8
	안좋은 편	100.0	130	17.7	82.3
전체		100.0	172	22.1	77.9

학대 재발시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족이기 때문에”가 가장 많다 (표 IV-86). 앞의 표 IV-76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르신들은 학대를 받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대부분 참고,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노인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 문제를 가족의 범주 밖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표 IV-86> 학대 재발시 신고하지 않는 이유

신고하지 않는 이유	빈도	%
가족이기 때문에	63	58.3
창피해서	17	15.8
자식과 연을 끊을 수 없어서	16	14.8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12	11.1
합 계	108	100.0

## 5) 학대의 파급효과

학대로 인해 병원에 간 경험과 학대를 당했을 때 느꼈던 기분, 심리적 상태에 대해 물어보았다.

심층면접응답자들은 「학대로 인해 병원에 간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와 “없다”로 대답하였다. 학대로 인해 병원에 간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9%로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나이가 젊을수록, 지병이 있

는 경우가 병원에 간 경험이 더 많았다. 생활만족도에서는 불만족한 편이, 교육수준에서는 일관되진 않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대로 인해 병원에 간 경험이 많았다.

<표 IV-87> 학대로 인해 병원에 간 경험

		합계		학대로 인해 병원에 간 경험	
		%	응답자수	있다	없다
성별	남	100.0	60	16.7	83.3
	여	100.0	112	23.2	76.8
나이	65-74세	100.0	74	23.0	77.0
	75-84세	100.0	75	20.0	80.0
	85세 이상	100.0	23	17.4	82.6
생활만족도	만족하는 편	100.0	62	14.5	85.5
	그저 그렇다	100.0	24	12.5	87.5
	불만족하는 편	100.0	86	27.9	72.1
지병여부	있다	100.0	108	23.1	76.9
	없다	100.0	64	17.2	82.8
교육수준	초졸이하	100.0	137	19.0	81.0
	중졸이하	100.0	12	8.3	91.7
	고졸이하	100.0	15	40.0	60.0
	대학이상	100.0	8	37.5	62.5
전체		100.0	172	20.9	79.1

학대로 인해 병원에 갔다라고 응답한 모든 경우를 학대의 직접적인 영향이 병원에 갈만큼 심각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노인이 될수록 병원에 가게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학대의 영향 또한 직, 간접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학대

의 심각도와 직접 연결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응답자들이 판단하기에 학대로 인해 병원에 간 경험을 나타낸 것임으로 주관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학대경험의 심각성과는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주어진 예문에 따라 학대를 당했을 때 기분을 물어보았다. 응답자는 예문에 따라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하였으며 “다른 가족이나 친척의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40.6%), “양로원 등의 노인시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45.1%)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특히 “기분이 나빴다”(88.0%), “우울했다”(87.4%), “외로웠다”(85.7%), “화가났다”(83.4%), “서럽고 슬펐다”(81.7%)라는 항목은 열 명중 약 아홉 명이 “그렇다”라고 응답, 노인이 학대를 당했을 때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표현은 일차적으로는 감정적 경험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차적으로는 노인우울증이나 고독, 소외 등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즉, 노인의 학대경험은 순간적인 영향 뿐 아니라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장기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학대예방과 신속, 정확한 개입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표 IV-88> 학대받았을 때의 기분

	빈도	%
기분이 나빴다	154	88.0
화가 났다	146	83.4
억울하고 분했다	137	77.1
서럽고 슬펐다	143	81.7
마구 대들고 싶었다	88	50.3
신경이 예민해졌다	136	77.7
우울했다	153	87.4
외로웠다	150	85.7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20	68.6
얼른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20	69.0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친척의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71	40.6
양로원 등의 노인시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79	45.1
종교를 가지고 싶었다	117	66.9

이상의 심층면접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노인학대의 실태

172명의 피학대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전체 5가지 유형별 학대비율을 보면, 「정서적학대」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방임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유형별 학대경험을 본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는 여성노인이, 「방임학대」, 「경제적학대」는 남성노인이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에 따른 유형별 학대경험을 보면, 65~74세의 경우는 「정서적학대」와 「신체적학대」를, 75~84세인 경우는 「경제적학대」를, 85세 이상인 경우는 「방임학대」와 「언어적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도시에 사는 노인들이 농촌보다는 전반적으로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병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가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낮은 방임학대율을 나타낸 반면 「정서적학대」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피학대노인의 대응행동

유형별 학대받을시 대응행동의 차이를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대응행동은 학대유형을 막론하고 “그냥 참았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경요인에 따른 방임학대시 대응행동을 보면 남성노인, 85세 이상 노인, 농촌노인, 생활만족도와 소득이 낮은 노인, 지병이 있는 노인 등이 “그냥 참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각 유형에 따른 질문에서 학대시 대응행동이 “그냥 참았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모든 유형에서 '가족이기 때문'으로 응답한 피학대노인들이 많았다.

또한 현재 유형별에 따른 의논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방임학대」의 경우 '친구'가 의논대상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학대」나 「언어적학대」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이웃'과 의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앞으로 학대를 당한다면 의논하고 싶은 대상으로는 “의논하고 싶지 않다”가 42.3%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친척과 친구이웃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3. 피학대노인들이 인식하는 학대 원인

유형별 학대당한 이유를 보면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경제적학대」의 경우의 경우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대를 당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만 「신체적학대」의 경우는 “가해자의 문제”라고 응답하고 있다. 유형별 가해자를 보면, 대부분 장남과 맏며느리로 나타났다.

장남의 경우, 「경제적학대」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 맏며느리의 경우는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순으로, 배우자의 경우는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의 순으로, 딸의 경우는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4. 피학대노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망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약 75%가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노인, 고령전기노인, 도시노인, 생활만족도가 높은 노인, 고졸 이상인 노인들이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대상황이 재발하면 신고하겠느냐는 질문에 80% 가까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신고의무제 도입과 더불어 실제 적용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 남성노인, 고령전기노인, 농촌노인, 건강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신고율이 조금 높아 학대에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엿볼 수 있다.

반면 재발생시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족이기 때문에”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노인학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 5. 학대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학대로 병원까지 간 피학대노인들이 거의 없다(83.3%)라고 응답하였다. 학대결과로 병원에 간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주로 여성노인, 고령전기노인, 농촌노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 생활만족도가 낮은 노인, 건강한 노인, 소득이 낮은 노인, 고졸 이상인 노인들로 나타났다. 학대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을 가게 되었는지의 여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학대의 경험이 정신적·신체적 반응(somatic)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에 관한 본 조사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정도를 검토하고, 실제 피해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과 원인 및 대응행동을 분석해봄으로써 노인학대예방과 개입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국민들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학대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인식하였으나 정서적학대에 대하여는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학대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각 유형을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본 결과, “심한 학대”라고 인식하는 것은 신체적학대 유형인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가 98.3%,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가 96.4%, 언어적학대 유형인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가 90.1%로 매우 높았으며, 정서적학대 유형인 「노인의 친구나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가 29.2%,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가 36.2%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신체적학대는 학대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학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며 유교적 가치관에서 보면 노인을 밀거나 때리거나 하는 노인 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행위는 다른 학대상황에 비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학대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서적학대는 다른 학대영역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는 학대유형으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노인학대의 유형이 정서적 혹은 심리적학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국민의 정서적학대 인지도가 낮다는 조사결과는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 세대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둘째,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는 상당히 보편적이며 학대당하는 노인들의 경험은 포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면접조사를 통하여 학대 유형별 응답자의 노인학대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그 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5% 내외의 학대비율을 보였다. 특히 응답자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적학대는 10.5%, 응답자가 의견을 말하면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와 응답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 등의 정서적학대는 12.3%, 19.9%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학대노인들의 학대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349명 중 510명(37.8%)이 1개 이상의 학대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이상의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은 126명(9.3%), 3개 이상의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은 157명(11.6%)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학대의 내용이 한 유형에 국한되기 보다는 여러 유형에 걸쳐져 있어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복합적인 학대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지속적이며 중층적인 피학경험이 있는 17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결과, 지역사회 노인들은 정서적학대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학대는 37.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임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유형별 학대경험을 본 결과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학대는 여성노인이, 방임학대, 경제적학대는 남성노인이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에 따른 유형별 학대경험을 보면, 65~74세의 경우는 정서적학대와 신체적학대를, 75~84세인 경우는 경제적학대를, 85세 이상인 경우는 방임학대와 언어적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도시에 사는 노인들이 농촌보다는 전반적으로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병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가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낮은 방임학대율을 나타낸 반면 정서적학대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화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노인의 실제 학대 경험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2/3 이상이 정서적학대를 학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 비

해 노인들은 1/3 이상이 정서적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더 나아가서는 “노인학대”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채 형성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차이는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접근과 실제적 현상사이의 괴리를 나타내며, 동시에 이러한 인식차이가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노인을 수발하는 입장에서는 노인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노인에게는 학대로 여겨질 수 있으며, 수발자가 그 상황을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별다른 개입이나 처치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의존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학대에 많이 노출되었다.

지병이 있거나, 주관적 건강평가가 나쁜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더 많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대 유형에 따라 피학경험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노출된 정서적학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큰 차이를 보이는 관련변인으로는 거주지유형, 혼인상태,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지병여부, 소득생활만족도와 학대경험이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도시에 사시는 노인이 농촌에 사시는 노인보다, 사별하신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생활에 불만족하시는 노인이 만족하시는 노인보다, 건강이 안좋은 노인이 좋은 노인보다, 지병이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소득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노인이 어려움이 없는 노인보다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피학대노인들이 지적한 학대의 원인으로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임학대,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경제적학대의 경우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대를 당한다고 응답하였고, 다만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가해자의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화조사를 통한 일반국민의 노인학대원인을 살펴보면, 47.3%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분위기, 매스컴에서 배워서, 물질만능주의 혹은 개인(이기)주의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문제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등을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들었다. 노인 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의 의존성증가, 부양스트레스증가, 노인부양의 대안 부재 등의 상황이 학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일곱째, 노인학대의 가해자로는 심층면접조사결과 아들, 만며느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학대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신체적학대의 경우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다른 어떤 유형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노인학대의 주가해자를 물어본 결과 또한 아들(42.9%), 며느리(39.9%) 등 직계존속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으나, 신체적학대의 경우는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49.1%)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경제적학대의 경우는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72.7%). 이는 학대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노인의 의존성과 부양스트레스 등과 연결시켜 볼 때, 노인부양이 노인학대의 가장 첨예한 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양과 관련하여 노인학대의 위험요인들이 생겨나고, 따라서 부양의 주체와 피부양자가 위험요인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대라는 갈등국면의 대치자가 되는 상황이다.

노인학대의 문제가 가정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적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부양의 영역 또한 가정에만 일방적으로 맡겨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공동책임지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여덟째, 학대를 받았을 때 노인들의 대응행동은 압도적으로 “그냥 참았다”가 많았다. 모든 학대유형에서 “그냥 참았다”라는 대응행동이 많았으며, 신체적학대의 경우 “자리를 피했다”(14.5%), 언어적학대의 경우 “같이 싸웠다”(11.1%)가 눈에 띄는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그냥 참는 이유로는 모든 유형에서 “가족이기 때문”으로 응답한 피학대노인들이 많았다. 주된 가해자가 친족이기 때문에, 또 학대를 당하여도 참는 경우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은 노인학대의 문제가 가정의 영역 안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정 내 노인학대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노인학대의 문제를 가정의 영역 밖으로 끌어내려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홉째, 노인학대와 관련된 지원망인식과 이용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근간으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전화조사결과 일반국민의

53.5%만이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심층면접대상자인 피학대노인의 경우 25%만이 “가정폭력방지법”을 알고 있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 정도만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행된 지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점도 있지만 홍보의 주체나 대상 모두가 가정내의 문제로 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점도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노인의 인권옹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홍보를 위해 각급 학교교육은 물론 전국의 11개 노인학대 상담센터의 증설과 경로당, 노인 복지회관 등 노인관련 시설에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여부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변에서 노인학대발생시 신고할 의향은 74.5%로 상당히 높으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신고할 의향은 52.8%로 응답자의 반가까이가 가정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외부개입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학대노인 스스로도 학대를 다시 당하였을 때 신고하지 않겠다(77.9%)고 응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주된 상황이 가정이라는 점, 노인학대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족관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정내 노인학대상황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제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다.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학대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형성된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원인을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전연령층의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과 노인의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매스컴의 역할은 매우 크다. 노인과 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 연령차별주의(Ageism)를 인권차원에서 접근, 노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대중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익광고, 뉴스 등을 활용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지도와 민감도를 높이며, 노인학대를 일회성의 특종주의로 보도하기 보다는 노인학대의 원인과 그 실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언론기관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활용하도록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노인학대상담 및 신고센터 1588-9222의 전국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안으로는 1·3세대 통합적 프로그램의 확대, 인간존중의 교육, 전인격적 교육내용을 기존 교과과정 에 포함시켜 어린 세대부터 장기, 지속적으로 개인인권의 개념에 기초

한 노인학대민감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교육의 내용들을 인구집단별로 살펴보면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피학대노인과 일반노인을 위한 역량강화(Empowerment) 교육, 노인소비자 교육, 학대위험요인중심으로 학대예방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이나 주수발자교육으로 부양부담완화프로그램 등이 제고될 수 있다.

주부양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년세대 여성을 위한 노인학대예방교육, 부양부담 완화교육 등이 지역의 여성발전센터나 문화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을 대상으로는 근무처에서 은퇴준비교육 등을 통해 노인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관련전문가 혹은 인근 관련 기관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는 보수교육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으로는 경로사상고취를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 등이 가능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체험학습 등(노인체험관 설치)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교과과정에 노인·노화, 죽음 등이 포함되므로 노인과 노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인식, 대처함으로써 노인학대의 문제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칭 “노인학대방지매뉴얼”을 구성, 각 생활의 영역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일차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피학대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지망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에서 학대 당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강화한다. 기존의 보건소를 통한 신체적학대의 처치를 정신건강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며, 신체적학대 시 임시적으로나마 피학대노인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쉼터의 필요도 절실하다. 특히 노인의 특성상 노인학대쉼터의 경우는 임시적 쉼터 이외에 학대위험요인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될 수 있는 대안적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의 원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쉼터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노인학대의 해결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극한 학대상황에서의 임시적 격리에 따른 쉼터와 아울러 장기적이고 반영구적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 예를 들면 노인그룹홈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겪게되는 정서적·심리적학대와 관련한 상담센터, 정신치료프로그램 등은 기존의 노인복지프로그램과의 연결 아래 짧은 시간 안에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라 여겨진다.

셋째, 학대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학대노인의 역량강화(empowerment)가 요구된다.

노인의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및 심리적 의존성을 낮추는 것이 학대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체적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령전기 노인(60세 내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의학적 접근, 특히 치과 및 안과진료에 대한 규칙적인 검사, 뇌졸중 예방을 위한 검사,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단기기억력검사 등을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노인건강유지를 위한 식생활, 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자기관리능력을 높이는 것도 궁극적으로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적착취(financial exploitation)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노인교육강화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 사기 및 경제적 착취를 전담할 부서 및 담당인력 확보, 법률적 지원 등이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상품, 예를 들어 건강상품 혹은 실버타운 등에 관한 규제 및 65세 이상 특별 소비자보호조항을 신설, 강화함으로써 노인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정적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소득보장방안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다. 최저생계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양자에게 경제적 부양의 부담을 완

화시키며, 노인의 자존감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로수당 및 노인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노인의 재정적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관계훈련, 의사소통훈련, 자기주장훈련 등 자기표현능력확대와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인을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충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양스트레스가 노인학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양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부양가족을 위한 세제혜택 및 주택지원방안 마련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특히 갑자기 노인의 건강이 악화됨으로써 빚어지는 급격한 부양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지역보건소의 노인치료 확대 등은 노인부양의 부담을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장기요양에 관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최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보험 혹은 사회보험과 사적보험의 혼합형태로서의 장기요양보험의 제도화는 부양가족의 외상노인 장기수발의 부담을 경감시키

며 이로 인한 극단적 학대의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휴식서비스(Respite care) 도입, 노인수발자가족 모임(Self-help group) 장려, 장기요양보험의 현실화 이전이라도 의료보험에서 일정 정도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수발자에 대한 일명 수발수당이 마련됨으로써 노인부양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인학대와 관련된 인력들을 교육, 훈련하고 가칭 “성인보호 전문사회복지사(Adult Protective Service Social Worker)”를 육성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꾀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노인교육 관련 등 노인복지관련종사자, 전문상담가, 의료전문가 등 관련인력 중 특히 노인학대와 관련된 인력을 교육·훈련함으로써 각 지역사회간 연계를 구축, 노인학대에 대한 다면적, 다층적 개입의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와 같은 전문가집단을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개입의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가칭 “노인학대방지매뉴얼”을 구성, 노인학대에 대한 일차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노인 및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

을 거친, “성인보호전문사회복지사(Adult Protective Service Social Worker)” 제도를 신설, 노인학대문제를 전담케 함으로써 성인보호 및 노인학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질적인 접근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역할은 노인학대신고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정하고 개입여부를 결정하며, 현장조사 및 주변조사를 통하여 신고된 학대건의 사실여부와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로 한다. 또한 학대상황에 따른 개입에 있어 관련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총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할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은 법률에 의해 조사권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인학대의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확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가정폭력방지법” 내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조항을 심화,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기존 제도의 활발한 홍보와 아울러 의무신고대상자를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서 노인복지관련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무신고와 관련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무신고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법내에 노인학대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신설되는 장에는 매 5년마다 노인학대실태조사, 노인학대관련 대중교육과 아웃리치, 서비스 조항, 정보관리체계 확립, 전문가 훈련,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에 지원,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옴부스맨 프로그램 제정, 노인학대의무신고 및 처벌조항, 처리 규정 등이 별도의 항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가정폭력방지법”의 틀을 벗어나 가칭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노인학대예방과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 인적자원, 활용방안, 개입 후 조치에 따른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보다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는 노인학대의 영역을 가정으로부터 사회로 끌어내고,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가 노인학대에 대해 공동 책임의식아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본의 “고령자인권보장법”과 같이 노인학대의 영역을 넘어 좀 더 궁극적인 인권의 차원을 법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따른 법적·제도적 개입의 기반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곱째, 노인학대지원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노인을 지지하기 위한 기존의 방안들도 전반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이나,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전국 11개 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학대상담센터, 1588-9222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여도 이를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노인학대상황개선

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함께 기존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노인과 노인의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를 접할 가능성이 많은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 경찰공무원, 보건관련자 등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의 통로를 마련하고 학대위험요인들을 다각도에서 발굴, 사전에 완화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안을 중·장기과제와 단기과제로 묶어보면 아래와 같다.

## 1. 단기대책

### 1) 노인학대의 민감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공익광고, 뉴스 등을 활용한 일반인들의 노인학대 인지도 강화
- 1·3 세대 통합적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전세대적 접근 강화
-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정, 경로당 등 노인관련시설을 통한 노인학대 홍보

### 2)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피학대노인과 일반노인을 위한 역량강화(Empowerment) 교육
- 학대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학대예방 및 갈등완화 기술 교육
-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부양스트레스 완화 훈련

-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사내교양프로그램 혹은 은퇴준비교육 등에 학대예방관련내용 첨가
- 사회복지관련전무가 혹은 관련기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및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 제공

### 3) 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노인의 자기관리능력향상을 위한 건강생활교육 : 영양, 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및 신체관리, 약물의 오남용방지, 음주, 흡연과 관련된 생활습관 교육.
-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재정운영에 관한 교육
-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노인대상 각종 재정지원방안의 적극적 활용
- 자기표현능력확대와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 4) 피학대노인 지지망 강화

- 기존 보건소 치료내용에 정신건강 관련 치료내용을 확대 강화 함으로써 학대받은 노인들이 신체적 징후와 아울러 정신적 피해 까지 일차적으로 지역보건소에서 처지받을 수 있도록 함.
- 임시적으로 피학대노인을 신체적 학대의 상황으로부터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쉼터
- 정서적·심리적학대와 관련한 상담센터, 정신치료프로그램 확대, 강화

### 5) 부양가족 지지방안

- 지역사회의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
- 지역보건소의 노인치료 확대
-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휴식서비스(Respite Care)
- 노인수발자가족지지모임 (Self-help group)

**6) 노인학대 방지 및 개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존 “가정폭력방지법”내 노인학대신고의무자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노인복지관련자 등으로 확대
- 의무신고와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무신고제를 실질적으로 적용.

**7) 기존 노인학대지원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 “가정폭력방지법” 홍보 강화
- 1588-9222, 노인학대상담센터 홍보

**2. 중·장기 대책**

**1) 노인과 노화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 창출**

- 노인체험관 등, 체험학습을 통한 노인, 노화에 대한 이해 확대
- 노인의 다양한 모습이 대중매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방송작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제공
-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통한 노인의 다양성 강조

**2) 노인의 재정적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방안 마련
- 노인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 알선 방안 마련
- 기존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3) 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예방적 접근 확대

-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과 및 치과 검진의 정례화
- 60세 이상 노인의 단기기억력 검사 및 노인관련 위험질병 무료검진
-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특별 소비자보호조항 신설, 강화.

### 4) 피학대노인 지지망 강화

- 피학대노인들이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의 주거시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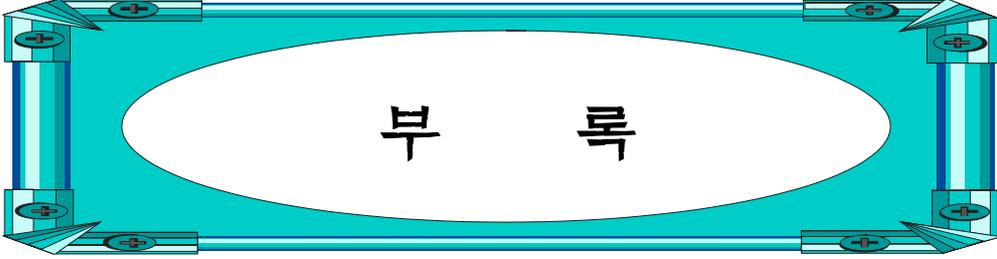
### 5) 부양가족 지지방안

- 장기요양보험 개발
- 수발수당 개발
- 각종 요양 및 노인치료시설 확충

### 6) 노인학대 방지 및 개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가칭 “노인학대방지법” 혹은 “고령자인권보장법”등을 마련 노인 학대에 대한 기준과 적극적 개입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
- 정기적인 노인학대실태조사, 노인관련 대중교육과 아웃리치, 서비스 조항과 정보관리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별법 제정.
-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제정 및 실행











8. 다음은 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입니다. 노인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이 노인학대인지, 아닌지, 학대라면 어느 정도의 노인학대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8.1. \_\_\_\_\_ 은 노인학대라고 보세요?  
 8.2. \_\_\_\_\_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8.3. (각 영역별로 한번씩만 물을 것)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 ① 상담      ② 상담      ③ 신고      9) 모르겠다

항 목	① 학대가 아니다	② 학대이다		8.3.질문 영역별로 한번씩만
		8.2. 심한정도 ↓		
		① 심하다	② 심하지 않다	
방 입	1.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
	2. 이쁜 노인에게 악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3. 노인의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			
정 서 적	4.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5.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회를 낸다			
	6.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언 어 적	7.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힘를 지른다.			→
	8. 노인의 살수를 비난하거나 꾸짖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9. 노인을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한다.			
신 체 적	10.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
	11.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12.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재 정 적	13.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
	14. 노인의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노인소득을 가로챈다.			
	15. 노인의 허위없이 부동산(땅, 전세금)등의 명의를 변경한다.			

9.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 신체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때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 ① 예      ② 아니오

10. 만약, ○○님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난다면, 신고하시겠어요?

- ① 예      ② 아니오



◎ 이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18.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직업코드 참조)

19.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보기 불러주지 말고 확인할 것. 졸업여부까지 확인할 것)

교육기간: □□ 년

무 학: 00년 초 졸: 06년  
중 졸: 09년 고 졸: 12년  
대 졸: 16년(4년제), 14년(전문대 2년제), 15년(전문대 3년)  
대학원 석사: 18년(2년) 대학원 박사: 21년(3년)

20. 현재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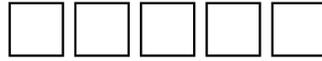
- ①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생활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③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4) 그저 그렇다 9) 모르겠다

★ 혹시 이 조사결과를 이메일로 받아보시길 원하시나요? 원하시는 분께는 결과 분석이 끝난 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hanmail 주소를 알려주면 다른 계정 온 없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볼 것)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2002년 한국노인의전화

## 『노인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노인의전화 여론조사원 ○○○입니다.  
저희 한국노인의전화에서는 나이드신 분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을 더 해야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찾아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시간을 내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통계분석에만 쓰이고  
어르신의 개인적인 정보나 의견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는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락처 한국노인의전화 1과장 김효정 ☎ 02-303-0070 016-730-1990	1차 검증 (연구보조원)	2차 검증 (연구원)	3차 검증 (연구소)
메모(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노인의전화

- ㉞ 조사원은 먼저 노인이 평소 기거하는 곳 또는 다른 가족(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곳을 확보하고 몇 가지 인사말로 응답자와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하여 응답자가 편안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 ㉞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질문지를 보여주거나, 같이 보면서 하지 않는다.
- ㉞ 보기의 예제는 원형숫자(예; ①, ② 등)만 불러주고, 반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예; 1), 99) 등)는 불러주지 말 것.

응답자 정보	
◆ 현거주지 주소 : _____ 시/도 _____ 시/구/군 _____ 읍/면/동	
◆ 응답자 성명 :	◆ 성별(문지말고) : 남, 여
◆ 응답자 나이 : 만 _____ 세	◆ 응답자 연락처 ☎ (     )     - (     )     -
◆ 면접 장소(구체적으로) :	
◆ 조사원 성명 :	◆ 조사일시 : 2002년 _____ 월 _____ 일
◆ 조사시작시간 : (오전·오후) _____ 시 _____ 분	

1. 결혼하셨어요? 할아버지(할머니)와 같이 살고 계세요(현재상태)?
-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별거                      6) 기타 \_\_\_\_\_

2.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① 집	② 인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 ③ 비인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
-----	---

<p>2.1. 지금 사시는 집은요? <input type="checkbox"/></p> <p>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사글세 ⑤ 임대주택(아파트) 기타)무엇? _____</p> <p>2.2. 어르신 이름으로 되어있나요? <input type="checkbox"/></p> <p>① 예    ② 아니오</p>	<p>2.3. 비용은요? <input type="checkbox"/></p> <p>① 무료    ② 실비    ③ 유료</p> <p>2.4. 여기에 오시기 바로 전에는 누구랑 사셨나요? <input type="checkbox"/></p> <p>① 혼자서    ② 배우자(할아버지, 할머니) ③ 장남 내외와 같이 ④ 장남 이외의 다른 아들 내외와 같이 ⑤ 딸 내외와 같이 ⑥ 결혼안한 아들 혹은 딸과 같이 ⑦ 손자 혹은 손녀와 같이 기타)누구? _____</p> <p>2.5. 이곳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input type="checkbox"/></p> <p>_____</p>
--	--

3. 평소에 할아버지(할머니)를 주로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혹은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1) 돌봐주는 사람 없다(☞ 4번으로 가세요)

- |               |            |             |
|---------------|------------|-------------|
| 02) 배우자       | 03) 장남     | 04) 큰며느리    |
| 05) 장남 이외의 아들 | 06) 작은 며느리 | 07) 딸       |
| 08) 사위        | 09) 손자/손녀  | 10) 조카      |
| 11) 부모        | 12) 형제/자매  | 13) 친구/이웃사람 |
| 14) 자원봉사자     | 15) 간병인    | 16) 시설 담당자  |
- 기타) 누구? \_\_\_\_\_

3.1. 그 분과의 사이는 어떠한가요?

- |          |          |           |
|----------|----------|-----------|
| ① 매우 좋다  | ② 좋은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 ④ 나쁜 편이다 | ⑤ 매우 나쁘다 | 9) 모르겠다   |

4. 지금 생활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불만족하세요?

- |             |             |           |
|-------------|-------------|-----------|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 ④ 불만족스런 편이다 |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 9) 모르겠다   |

5.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세요?

- |           |           |           |
|-----------|-----------|-----------|
| ① 매우 건강하다 | ② 건강한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 ④ 안좋은 편이다 | ⑤ 매우 안좋다  | 9) 모르겠다   |

6. 혹시 오랫동안 앓고 계시는 질병이 있으세요?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7. 어르신께서는 제가 여쭙보는 일을 혼자서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각각 혼자서 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 전혀 못한다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7~11번 문항은 시설에서 사는 경우 시설에서 모두 해 주더라도, 혼자 산다면 가능한지로 물어볼 것).

	① 혼자서 할 수 있다	②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③ 혼자서 전혀 못한다
1) 걸어다니기(걸음걸이)			
2) 식사			
3) 대소변보기			
4) 목욕하기			
5) 옷갈아 입기			
6) 몸 단장하기			
7) 시장보기			
8) 음식만들기			
9) 빨래·청소하기			
10) 약먹기			
11) 돈관리하기			





2002년 한국노인의전화

## 『노인실태조사2-심층면접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노인의전화 여론조사원 ○○○입니다.  
저희 한국노인의전화에서는 나이드신 분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을 더 해야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찾아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시간을 내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통계분석에만 쓰이고  
어르신들의 개인적인 정보나 의견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는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연락처 한국노인의전화 1과장 김효정 ☎ 02-303-0070 016-730-1990	1차 검증 (연구보조원)	2차 검증 (연구원)	3차 검증 (연구소)
메모(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노인의전화

- ㉞ 조사원은 먼저 노인이 평소 기거하는 곳 또는 다른 가족(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곳을 확보하고 몇 가지 인사말로 응답자와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하여 응답자가 편안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 ㉞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질문지를 보여주거나, 같이 보면서 하지 않는다.
- ㉞ 보기의 예제는 원형숫자(예; ①, ② 등)만 불러주고, 반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예; 1), 99) 등)는 불러주지 말 것.

응답자 정보	
◆ 현거주지 주소 : _____ 시/도 _____ 시/구/군 _____ 읍/면/동	
◆ 응답자 성명 :	◆ 성별(문자말고) : 남, 여
◆ 응답자 나이 : 만 _____ 세	◆ 응답자 연락처 ☎ (     )     - (     )     -
◆ 면접 장소(구체적으로) :	
◆ 조사원 성명:	◆ 조사일시: 2002년 _____ 월 _____ 일
◆ 조사시작시간: (오전·오후) _____ 시 _____ 분	

1. 결혼하셨어요? 할아버지(할머니)와 같이 살고 계세요(현재상태)?
-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별거                      6) 기타 \_\_\_\_\_

2.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① 집	② 인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 ③ 비인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
-----	---

<p>2.1. 지금 사시는 집은요? <input type="checkbox"/></p> <p>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사글세 ⑤ 임대주택(아파트) 기타)무엇? _____</p> <p>2.2. 어르신 이름으로 되어있나요? <input type="checkbox"/></p> <p>① 예      ② 아니오</p>	<p>2.3. 비용은요? <input type="checkbox"/></p> <p>① 무료    ② 실비    ③ 유료</p> <p>2.4. 여기에 오시기 바로 전에는 누구랑 사셨나요? <input type="checkbox"/></p> <p>① 혼자서    ② 배우자(할아버지, 할머니) ③ 장남 내외와 같이 ④ 장남 이외의 다른 아들 내외와 같이 ⑤ 딸 내외와 같이 ⑥ 결혼안한 아들 혹은 딸과 같이 ⑦ 손자 혹은 손녀와 같이 기타)누구? _____</p> <p>2.5. 이곳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input type="checkbox"/></p> <p>_____</p>
--	--

3. 평소에 할아버지(할머니)를 주로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혹은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1) 돌봐주는 사람 없다(☞ 4번으로 가세요)

- |               |            |             |
|---------------|------------|-------------|
| 02) 배우자       | 03) 장남     | 04) 큰며느리    |
| 05) 장남 이외의 아들 | 06) 작은 며느리 | 07) 딸       |
| 08) 사위        | 09) 손자/손녀  | 10) 조카      |
| 11) 부모        | 12) 형제/자매  | 13) 친구/이웃사람 |
| 14) 자원봉사자     | 15) 간병인    | 16) 시설 담당자  |
- 기타) 누구? \_\_\_\_\_

3.1. 그 분과의 사이는 어떠한가요?

- |          |          |           |
|----------|----------|-----------|
| ① 매우 좋다  | ② 좋은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 ④ 나쁜 편이다 | ⑤ 매우 나쁘다 | 9) 모르겠다   |

4. 지금 생활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불만족하세요?

- |             |             |           |
|-------------|-------------|-----------|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 ④ 불만족스런 편이다 |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 9) 모르겠다   |

5.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세요?

- |           |           |           |
|-----------|-----------|-----------|
| ① 매우 건강하다 | ② 건강한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 ④ 안좋은 편이다 | ⑤ 매우 안좋다  | 9) 모르겠다   |

6. 혹시 오랫동안 앓고 계시는 지병이 있으세요?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7. 어르신께서는 제가 여쭙보는 일을 혼자서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각각 혼자서 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 전혀 못한다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7~11번 문항은 시설에서 사는 경우 시설에서 모두 해 주더라도, 혼자 삼다면 가능한지로 물어볼 것).

	① 혼자서 할 수 있다	②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③ 혼자서 전혀 못한다
1) 걸어다니기(걸음걸이)			
2) 식사			
3) 대소변보기			
4) 목욕하기			
5) 옷갈아 입기			
6) 몸 단장하기			
7) 시장보기			
8) 음식만들기			
9) 빨래·청소하기			
10) 약먹기			
11) 돈관리하기			



(방임 학대)

11 제가 몇 가지 더 여쭙볼게요.

지난 1년간 제가 불러드리는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거주 노인의 경우, 시설에 들어오기 1년 전)

	없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 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항상 있었다	
1. 내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데, 나를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11.1.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행동을) 주로 누가 그랬나요? <input type="checkbox"/>
2. 아픈 내게 약을 주지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11.2. 현재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① 예                      ② 아니오
3. 내 몸이나 옷 또는 주변 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둔다				11.3.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행동을) _____ (상황에 맞게)이 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4.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뜯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				11.4. 그런일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input type="checkbox"/>
5. 세수나 목욕할 때, 또는 대소변 볼 때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와주지않는다.				
6. 자녀나 가족이 찾아오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				① 그냥 참았다                      ② 주위(다른가족, 이웃)에 의논(하소연)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혹시 말씀드린 것 이외에 어르신을 내버려두어서 서운한 적 있으셨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    ↓
7.				11.4.1. 그냥 참은 이유가 있으세요? (한가지만) <input type="checkbox"/>
8.				11.4.2. 주로 누구랑 의논하셨어요?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12. 제가 몇 가지 더 여쭙볼게요.

지난 1년간 제가 불러드리는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거주 노인의 경우, 시설에 들어오기 1년 전)

	없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 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1.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행동을) 주로 누가 그랬나요? □□
		가끔 있었다	항상 있었다	
1. 내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12.2. 현재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2. 내가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3. 가족들이 내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4. 가족모임이나 가족회의(의사결정과정)에서 일부러 나를 소외시킨다				
5.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나를 불안하게 한다.				
6. 청소나 빨래, 애보기와 같은 하기 싫은 일을 시킨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① 그냥 참았다</span> <span>②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다</span> <span>③ 그 자리를 피했다</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span> <span>↓</span> <span>↓</span> </div>				
<b>☞ 혹시 말씀드린 것 이외에 어르신이 서운한 적 있으셨어요? 언제 그러셨어요?</b>				12.4.1. 그냥 참은 이유가 있으세요? (한가지만) □□
7.				12.4.2. 주로 누구랑 의논하셨어요? □□
8.				12.4.3. 주로 어디로 피하셨어요? □□



(신체적 학대)

14. 또 다른 내용을 몇가지 더 여쭙볼게요.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제가 불러드리는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없다 ↓		있 다 ↓	
		가끔 있었다	항상 있었다		
				14.1.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행동을) 주로 누가 그랬나요? □□	
1.내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14.2. 현재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2.나를 밀어서 넘어뜨린다				14.3.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행동을) _____ (상황에 맞게)이 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3.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14.4. 그런일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	
4.나를 강제로 방이나 지하실 등에 가둔다.				① 그냥 참았다	②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다
5.내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③ 그 자리를 피했다	④나도 같이 때리거나 밀었다
☞ 혹시 말씀드린 것 이외에 다치거나 몸에 상처를 입은 적 있으셨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	↓
				14.4.1. 그냥 참은 이유가 있으세요? (한 가지만) □□	14.4.2. 주로 누구랑 의논 하셨어요? □□
6.				14.4.3. 주로 어디로 피하셨어요? □□	15번 문제로 가세요
7.					

(경제적 학대)

15. 힘드시죠? 이번에는 어르신 재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불러드리는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없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 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항상 있었다							
1. 내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는다.				15.1.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행동을) 주로 누가 그랬나요? <input type="checkbox"/>						
2. 내 연금이나 임대료 등의 소득을 가로챈다.				15.2. 현재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① 예                      ② 아니오						
3. 내 허락 없이 부동산 (땅, 전세금)등의 명의를 변경한다.				15.3. (지금까지 이야기 해주신 행동을) _____ (상황에 맞게)이 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4. 내가 모아놓은 돈이나 보석 등 값나가는 내 물건을 훔친다.				15.4. 그런일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input type="checkbox"/>						
5. 내 유언(장)을 마음대로 작성하거나 내 동의없이 수정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① 그냥 참았다</td> <td>②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다</td> <td>③ 다시 주라고 요구했다</td>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① 그냥 참았다	②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다	③ 다시 주라고 요구했다	↓	↓	↓
① 그냥 참았다	②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다	③ 다시 주라고 요구했다								
↓	↓	↓								
✎ 혹시 말씀드린 것 이외에 재산과 관련하여 서운한 적 있으셨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15.4.1. 그냥 참은 이유가 있으세요? (한가지만) <input type="checkbox"/>						
6.				15.4.2. 주로 누구랑 의논하셨어요? <input type="checkbox"/>						
7.				16번 문제로 가세요						





## II. 면접조사 지침서

### ♣ 면접조사의 기본원칙

1. 면접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독원(연구보조원)의 지시를 따른다.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질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질문문항에 따른 면접원이 알아야 할 지침을 알고 지킨다.

2. 해당지역의 quota에 맞게 대상자를 찾는다.

지역	1차 면접	2차 면접(심층면접)
수도권	558	56
충청강원	258	26
영남	443	44
호남	241	24
합계	1,500	150

3. 조사를 위한 quota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대학) 포함)	20~25%
경로당	25~30%
공원 (무료급식소 포함)	10~15%
수용시설 (양로원, 요양원, 미인가시설, 여성보호센터 포함)	15~20%
기타(재가노인) 독거노인, 수급권자, 노인의전화 상담사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상담사례, 까리따스상담사례, 노인학대 관련 석박사 학원논문의 사례, 가정봉사원파견대상노인 등	10~30%
계	100%

4. 조사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예:학력이나 소득, 연령, 가족사항 등)을 물어 볼 때는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응답자들의 기분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면접방식은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보여주지 않고 설문지의 순서대로 모든 문항을 읽어 주고 응답자의 응답을 받아 적는다('학대'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는다).
6.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 조사는 '노인학대실태조사'이지 '학대유도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한다.
7. 설문문항 중 <보기>가 없는 경우나 기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응답내용을 자세히 적도록 한다.
8. 불분명한 응답의 경우, 추정은 절대 금물! 캐어문기를 통해 정확한 응답을 받아낸다.
9. 『노인실태조사』 설문지로 먼저 조사를 시작하고, 심층조사로 이어질 경우에는 『심층면접용』 설문지의 11번 문항 이후부터 이어서 한다.

**▶▶면접기술(interview skill)**

**면접조사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면접원에게 달려 있다 !!**

- 면접원은 짧은 시간내에 응답자와 친밀한 우호관계(rapport)를 맺어 응답자가 진실하게 대답을 해주도록 해야 한다.
- rapport 형성시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면접자와 응답자간의 rapport 형성은 조사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지 조사의 목적은 아니다.

**☞ 면접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

- ☞ 응답자를 만나서 면접에 응하겠다는 협조, 동의를 얻는 일
- ☞ 응답자가 정직하게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일
- ☞ 되도록 조사표에 적힌 대로, 유도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문하는 일
- ☞ 면접자가 질문지에 따라 물어보는 질문에 적합한 응답자의 대답을 얻는 일
- ☞ 대답이 불분명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 자세히 캐어물어서 적절한 응답을 받아내는 일
- ☞ 대답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

## ♣ 조사요령

### ☞ 자기소개

응답자를 이미 확보했을 때(혹은 확보하는 과정에서), 면접원은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를 소개하여야 한다. 자기의 신분, 면접 목적,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자기의 신분 소개 : 면접원의 신분과 아울러 조사의 주관자,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심어 준다. 설문조사에 대해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잘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2) 면접의 목적 소개 : 조사의 목적과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곁들여 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기여하는 바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말을 한다.

(3)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 표집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반드시 귀하가 응답해야 조사가 올바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응답 내용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특히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및 사적인 문항의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통계처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 자기소개의 요령

저는 한국노인의전화 여론조사원 ○○○입니다. 저희 한국노인의전화에서는 나이드신 분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을 더 해야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시간을 내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통계분석에만 쓰이고 어르신들의 개인적인 정보나 의견은 절대로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는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 면접규칙

면접원이 면접을 할 때는 응답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몇 가지 규칙을 엄두해 두어야 한다.

#### 면접원의 태도 . .

- (1)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 (2) 반드시 존대말을 쓰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 (3) 응답자의 호감을 사도록 하여야 한다
- (4) 응답자의 반응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
- (5) 질문 문항은 친절히 읽어야 한다
- (6) 단계적인 이행으로 면접의 흐름을 순탄하게 하여야 한다
- (7) 면접원은 엄격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질문하는 과정에서 . .

- (1)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고 비밀로 지켜짐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2) 질문지에 대해 완전히 숙지한 후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한 자세로 면접할 수 있어야 한다
- (3) 응답자가 질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되, **유도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 (4) 면접자는 질문지상의 지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해야 하며, **질문을 요약**해서는 안된다
- (5) 질문은 **설문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야 한다
- (6) 질문해야 되는 문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질문해야 한다  
(스킵(skip)되는 문항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 (7) 응답자 외의 타인의 의견이나 영향을 배제하여야 한다
- (8) 응답이 끝나면 빠진 곳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의 응답에 마음대로 수정이나 첨가를 하여서는 안된다
- (9) 기록은 꼭 볼펜으로 하여야 하고, 수정액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10) “모른다”라고 하는 응답자의 대답을 **최대 한으로 줄여야** 한다
- (11) 엉뚱한 대답을 할 경우에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

### ☞ 캐어묻기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응답자가 엉뚱한 응답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할 경우, 정확한 응답을 받아 내기 위해 **캐어묻기**를 한다. 다시 말해, 연구의 목적에 맞는 가장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응답을 얻기 위해 캐어묻기를 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캐어묻기를 하기 위해서는 면접자가 각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 불완전한 응답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 (1) 캐어묻기를 할 때는 응답자에게 몇 가지 응답 예시를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 스스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나 느낌을 말하도록 하는 “**열린 질문**”방법을 사용한다
- (2) 응답자의 불완전하고 모호한 응답을 가지고 면접자가 그 대답을 추측하여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3) 면접자는 특정 방향의 응답을 시사하는 질문이나 유도질문을 피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캐어묻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①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응답을 하는 경우, ② 명료하지 않은 용어로 응답을 한 경우, ③ 구체적인 응답이 필요한데 매우 일반적인 응답을 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 응답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알아내도록 캐어묻기를 해야 한다.

### 캐어묻기의 예

- 1)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2)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 3) 어떤 방법으로 (말씀이지요)?
- 4) 어떤 의미로?
- 5) 무엇을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6)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7) (잘 이해가 안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 ☞ 응답의 기록

응답을 기록하는 대원칙은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료이면 응답자가 말한 것을 표현 그대로 완전하게 적는다”는 것이다.

질문의 형식으로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리 부호화 된 **닫힌 질문**(보기식)이고, 또 하나는 **열린 질문**(주관식)이다. 닫힌 질문의 경우에는 지정된 응답란에 보기의 부호를 적어주고, 열린 질문은 응답자의 말을 그대로 적도록 한다.

(1) 일반적으로 질문하자마자 처음 나오는 대답이 제일 믿을 만하고 중요한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2) “예”, “아니오”라는 대답이나, 또는 보기에서 고르는 것으로 충분한 질문인데도 거기에 덧붙여 “그런데.....” “하지만.....”등 응답자의 해명 해설이 따르면, 그런 종류의 의견 표시를 자세히 적는다.

(3) 기록할 때 특히 조심할 것은 기록에 정신이 팔려 면접이 중단되거나, 면접 진행의 주체가 면접자가 아니고 응답자가 되는 일이다.

(4) 특별한 지시한 없는 한, 응답자의 대답을 응답자가 직접 기록하는 일이 없

도록 한다(면접자가 기록 하도록 한다).

(5)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질문하고, 기록한다.

(6) “모르겠다”는 대답은 그대로 기록한 채 넘어가지 말고, 캐어묻기를 통해 유효 응답을 얻어내도록 한다.

(7) 잘못된 기록은 두 줄로 그어서 오기임을 확실히 알게 한다.

(8) 응답란이 □□인 질문에서 1번 보기가 선택되었을 때, ‘1’이 아니라 ‘01’로 적는다.

(9) 질문지에 없는 번호를 응답란에 적지 않는다(특히 보기식 질문에서 주의!). 응답이 하나만 있어야 하는 질문의 경우, 보기를 여러 개 체크하지 않는다(하나만 체크).

(10) 모든 질문에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분기형 질문 제외). 응답자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인데도 응답란에 응답이 없으면, 불완전한 질문지가 된다. 응답자가 한 말이 보기 중에 없다면, 반드시 해당 응답란에 응답자의 말을 적어둔다.

(11) 응답자의 말을 적는 과정에서, 면접원이 임의로 숫자를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부호화 작업은 연구원들이 한다.

## ☞ 면접의 완료와 뒷정리

면접이 끝나면, 우선 면접원은 응답자의 양해 아래 설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하고 빠뜨리거나 잘못 기록한 것이 없나 확인한 다음, 오랜 시간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작별한다. 준비된 선물이나 기념품은 면접 완료 후 떠날 때 남기고 오도록 한다. 면접이 완료되면 밖으로 나와서 면접에 소요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 자료검증

표본조사의 오차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로 나누는데, 면접과정에서의 오차는 비표본오차에 속한다. 통계이론상 표본오차는 일정치가 허용되어 있으므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비표본오차, 즉, 면접원의 실수, 불성실함, 나태, 사기성 등에서 기인하는 면접과정에서의 오차이다.

조사를 위한 사전연구, 표본설계 및 조사계획 수립, 자료의 전산처리 또 그 결과의 분석 및 집계 등 전 과정이 아무리 치열하고 논리정연하다고 하더라도, 면접과정에 결함이 있으면 조사전체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러한 면접과정에서의 오차를 최소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전체 표본 가운데 20-30%에 해당하는 질문지를 검증하게 된다. 주로 전화에 의한 검증과 재방문에 의한 검증, 왕복엽서에 의한 검증 및 응답패턴에 의한 검증이 있다. 검증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성실하게 면접한 것이 드러나면, 해당 조사원의 모든 질문지는 폐기처분한다.

완료된 조사 부수가 들어오는 즉시 '검증'을 시작한다. 1차 검증에서 감독원(연구보조원, 연구소 직원 등)이 'error'라고 표시하여 되돌려 준 응답지는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면접원은 자신이 어디서 오류를 냈는지 살펴보고 똑같은 오류를 내지 않도록 한다.

### 검증내용

- 1) 실제로 면접을 실시했는가?
- 2) 질문지에 기록된 성명의 사람과 면접을 했는가?
- 3) 질문지의 질문을 모두 물었는가?
- 4) 응답지의 선정을 제대로 했는가?
- 5) 기타 조사진행상의 제반규칙을 준수했는가?
- 6) 조사내용중 일부 내용을 재질문

### Ⅲ. 노인학대관련 자료목록

고양곤(2000) 외국 노인의 정치참여와 권익운동, 한국노년학회 제11회 노인복지세미나

광주·전남노인의전화(2002) 정치참여를 통한 어르신들의 권익향상

김금례(2001) 노인학대 인지도에 따른 대처방안,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1998)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 청주시를 중심으로, 청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혜·이선희(1998) 노인학대 측정도구를 위한 일 연구, 사회복지 봄호

김승관·조애저(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석& 김영순역(2000) 노년 불평등과 복지정책, 나눔의 집

김지연(2001) 부모의 생활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계분석, 대전대 석사학위논문

김태현외(1998). 노년기 QOL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김태현·한은주(1997)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17(1), p.51-73

김충규(1999)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한곤(1998)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권 1호,  
p.184-197

- 김현수(1997)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곤(1998)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 한국노년학회, pp.184-197
- (1997)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우리사회연구 4, pp.235-254
- 김한곤(1993)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경향과 과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논문
- 김한곤·Bernard E. Blakely(1994)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경향과 과제, 영남대인문연구 26, pp.209-227
- 나병균(1999) 인권으로서의 사회보호의 권리인정, 사회복지 통권 42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남찬섭 역(1996)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한울
- 문영숙(2000) 노인의 배우자학대 경험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2002)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11), 311-327
- 박봉길(2000) 노인학대 인식도 분석을 통한 사회사업 원조전략,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기(1998) 한국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 신문기사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서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형욱(1998) 노인학대의 실태조사연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만(1988) 복지권은 인권인가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 9호 2권

- 서상목 외(1995) 국민복지 수준 어디까지 와 있나? 국책연구 37, pp.15-116
- 서 윤(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 pp.27-72
- (2000) 노인학대사례 연구, 노인복지연구 9, 한국노인복지학회, pp.155-188
- (1998) 존속범죄를 통한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  
pp.182-206
- 성향숙(1997) 여성노인의 삶의 조건과 학대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여성연구논집 8,  
pp.19-39
- 송지원(2001)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애·전길양(1998)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Ⅱ : 노인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21, 대한가정학회, pp.145-159
- 안병숙(1999) 노인학대의 유형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국희(2001) 노인학대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일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44권  
p.209-231
- 우국희(2002) 노인학대의 의미와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노인들의 의식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0, pp.109-129
- 윤 진(1994) 폭력없는 가족-아내구타와 노부모 학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44(가을).
- 윤찬중(1999) 한·일간 노인학대실태 및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논문집  
(사회과학·복지대학) 34, pp.151-166

- 이경희(2001) 노인학대의 기본적 인지도에 관한 연구, 한서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성(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방법,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훈(1999) 노인학대 개념 연구,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이(1998)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화·한은주(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18
- 김승용(2003) 노인부부 폭력여부와 자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연호(2002) 노인학대 위험 요인과 피해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1997)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p.359-371
- 이영숙(1997) 가족기능과 가족폭력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군산대논문집 23,  
pp.383-396
- 이인수·이용환(2000) 노인학대 인식도의 남녀간 비교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0, 한국노인복지학회, pp.165-184
- 이종복(1999) 노인학대 문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평택대논문집 12, pp.75-85
- 이창곤(2000) 자식이 끔찍한 '노인의 눈물' : 신체적·물질적으로 학대받는 노인들 늘어...  
인륜파괴에 대한 국가적 대책 시급, 한겨레21 293(2000.1.27),  
한겨레신문사, pp.68-69
- 이해영(1996)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정책연구 3,  
pp.299-328

전길량·송현애(1998)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II, 대한가정학회지, 36(3).

----- (1997)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I : 기혼 성인남녀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  
한국가정관리학회, pp.83-94

정경희(1998)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pp.123-146

정공진(2000)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용달(2000)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정(1999)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애저(2000) 노부모 학대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43, pp.49-61

조애저 외(1999) 노부모 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2000) 경제위기하의 생존의 권리와 복지권 21세기의 인권, 한국인권재단편, 한길사

최선화·공미혜·한동희(2000)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4, pp.189-214

최성희(2001)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청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해경(1993)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 논문집 22, pp.273-286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동희(2001) 여성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연구 13, 한국노인복지학회,  
pp.193-208

한동희(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동희·김정옥(1995) 노년기 특성에 관련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7,  
pp.185-209

한동희·김정옥(1994)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4),  
pp.45-56

한은주(2000)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은주·최배영(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 대한가정학회, p.373-383

홍순혜(1999) 우리 나라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서울여대  
학생생활연구 12, pp.128-140

황정일, 한석태, 신광식, 홍양희(1995) 저소득층의 복지원 내용과 그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문, 통권 14호

金子善彦(1987), 老人虐待, 星和書店

Anita, C. A.(1994) "A literature review: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elder abus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0(7) : 25-32.

Austin, C.(1995) "Adult protective services", *Encyclopedia of Social  
Work*(19th), NASW Press, pp.89~94.

Biggs, S., Phillipson, C. & Kingston, P.(1995) *Elder abuse in perspective*,  
Open University Press.

- Blakely Bernard E. & David C. Morris.(1992) "Public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elder mistreatment in middletow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4(3) : 19–37.
- Gilliland, V., & Jimenez, S. R.(1996) "Elder abuse in developed and developing societies: the US and Costa Rica"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12(1) : 88–103.
- Goodrich, C. S.(1997)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of state protective services programs : Assessing risk and defining victim outcome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9(1), pp.69~86.
- Griffin, L. W.(1999) "Understanding elder abuse", in Hampton, R. L. *Family violence*(2nd), Sage Publications.
- Holt, M. G.(1993) "Elder abuse in Britain : Meeting the challenge in the 1990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5(1).
- Hwalek, M. A., Neale, A. V., Goodrich, C. S., & Quinn, K.(1996) "The association of elder abuse and substance abuse in the Illinois elder abuse system" *The Gerontologist*, 36(5) : 694–700.
- Johnson, T.(1986) "Critical issues in the definition of elder mistreatment", in *Elder abuse : Conflict in the family*, edited by Pillemer, K. & Wolf, R.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 Lachs, M.S., & Pillemer, K.(1995) "Aging parents of elderly persons." *The New English Journal of Medicine*, 332 : 437–443.
- Longres, J. F.(1995) "Self–neglec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7(1), pp.69~86.

- Moon, A. L., & Williams, O.(1993)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women" *The Gerontologist*, 33(3) : 386-395.
- Neale, A. V., Hwalek, M. A., Sengstock, M. C., & Stahl, C.(1991) "Validation of the Hwalek-Sengstock elder abuse screening test"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40(4) : 406-418.
- Neal, V. et al.(1996) "The Illinois elder abuse system : Program description and administrative findings", *The Gerontologist*, 36(4), pp.502-511.
- Neikrug, S. M., & Ronen, M.(1993) "Elder abuse in Israel"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5(3), 1-19.
- Paris, B. E., Meier, D. E., Goldstein, T., Weiss, M., & Rein, E. D.(1995) "Elder abuse and neglect: How to recognize warning signs and intervene" *Geriatrics*, 50(4) : 47-51.
- Paton, R. N., Huber, R. & Netting, F. E.(1994) "The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 and complaints of abuse and neglect : What have we learned?"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6(1). pp.97-115.
- Penhale, B.(1993) "The abuse of elderly people: Considerations for practi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3(2) : 95-112.
- Pillemer, K., & Lachs, M. S.(1995) "Abuse and neglect of elderly person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2(7) : 437-443.

- Pillemer, K., & Suitor, J. J.(1992) "Violence and violent feelings: what carses them among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7(4) : S165-S172.
- Pillemer, K., & Wolf, R. S.(1994) "What's new in elder abuse programming? : Four bright ideas." *The Gerontologist*, 34(1) : 126-129.
- Reulbach, D. M. & Tewksbury, J.(1994) "Collaboration between protective services and law enforcement : The Massachusetts model",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6(2), pp.9~21.
- Schimer, M. R. & Anetzberger, G. J.(1999) "Examining the gray zones in guardianship and involuntary protective services law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3/4), pp.19~38.
- Tatara, T.(1993)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scope of domestic elder abuse with the use of state aggregate data : Summaries of the key findings of a national survey of state APS and aging agencie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5(4), pp.35~57.
- (1995) "Elder Abuse", *Encyclopedia of Social Work*(19th), NASW Press, pp.834~841.
- (1999) "Elder abuse in USA and Japan : A background paper", <21C 고령화 사회의 정책과 쟁점>, 1999년 세계노인의 해 기념 부산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pp.65~82.
- Williamson, A.(1997) "Elder abuse reporting : the attitudes and views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UMI.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Wolf, R. S.(1986) "Elder abuse and family violence : testimony presented before the U.S. senate special committee on aging",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8(1), pp.81~96.

## IV. 노인학대관련 웹사이트

### 1. 한국

- 노인학대상담센터  
[www.15889222.net](http://www.15889222.net)
- 한국노인학대연구회  
[www.elderabuse.or.kr](http://www.elderabuse.or.kr)

### 2. 미국

- elder abuse hotline(24시간) 800-992-1660  
long term care ombudsman(시설내 학대) 800-334-9473  
[www.nyc.ny.us/htm/dtta/html](http://www.nyc.ny.us/htm/dtta/html)
- The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NCEA)  
[www.elderabusecenter.org](http://www.elderabusecenter.org)
- Elder Abuse Prevention (EAP)  
[www.oaktrees.org/elder/](http://www.oaktrees.org/elder/)
- Nation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NCPEA)  
[www.preventelderabuse.org](http://www.preventelderabuse.org)

### 3. 캐나다

- Canadian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CNPEA)  
[www.mun.ca/elderabuse/](http://www.mun.ca/elderabuse/)

### 4. 일본

- 일본노인학대예방센터  
[www.sset.gr.jp](http://www.sset.gr.jp)

### 5. 영국

- Action for Elder Abuse (노인학대를 위한 행동)  
[www.elderabuse.org.uk](http://www.elderabuse.org.uk)

### 6. 국제

-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  
<http://www.inpea.net>

## V. 노인학대상담센터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1	서울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02-523-1043
2	서울	한국노인의전화(서울)	02-303-0070
3	경기	까리따스유지재단(수원지부)	031-247-8374
4	경기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	031-573-6598
5	강원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033-535-7557
6	대전	까리따스유지재단(대전지부)	042-286-6859
7	충북	한국노인의전화(청주지회)	043-255-2144
8	전북	군산노인종합복지관	063-442-4227
9	전남	순천종합사회복지관	061-744-3792
10	대구	햇빛가정봉사원과건강센터	053-474-7065
11	부산	부산동구노인종합복지관	051-467-7887